연구총서 21-AB-01

www.kicj.re.kr

수형자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및 교정재범예측지표 개선방안 연구

Improving Security Treatment Level Classification Index and Correctional Recidivism Prediction Index

윤정숙·성유리·이태헌

KICJ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발간사

1955년 제1회 UN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회의에서는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을 통해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분류 및 처우 개별화'를 명시하고 교정시설내 분류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분류심사는 수용자의 수용시설을 지정하고 처우의 수준을 결정하여 올바른 수용생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됩니다.

분류심사에는 다양한 지표와 검사 도구들이 사용됩니다. 특히 개별 수용자의 경비처우급을 지정하기 위한 지표(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로 불리움)는 수용자의 위험수준에 따른 적절한 수용시설을 지정하여 수용시설 내에서의 적절한 관리와 처우를 통한 시설 적응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수용자의 행위나 행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수형기간 동안 재분류가 주기적으로 이뤄져야하며 무엇보다도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재범위험성이 충분히 감소되어 가석방에 적합한가를 평가하는 작업도 이뤄져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용자의 재범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추적하며, 미래의 재범가능성을 예측하는 재범예측지표(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교정재범예측지표: COREPI"로 불리움)는 적절한 처우계획 수립 및 가석방 심사시 주요한 자료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와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의 타당도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교정처우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전문가와의 공동연구, 관련 정책부처 TF와의 회의, 교정시설 분류과 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분류지표의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교정본부의 협조하에 분류지표의 재범예측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각 수형자의 분류지표 항목값 및 재입소값을 포함한 방대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과학적 방식으로 분석하고 결과에 대한 함의를 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분류지표의 재범 예측 여부와 지표 구성항목의 예측 안정성,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구성개념의 완성도 등을 탐구하는 작업을 통해, 분류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정

처우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검증된 이론을 바탕으로 항목들을 재구성 해야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본 연구의 핵심내용은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를 통해 핵심범죄유발요인을 평가하여 범죄자의 경비처우수준을 분리해내고, 교정재범예측지표를 통해 잠재적 범죄유발요인까지 모두 평가하여 변화량을 반영한 범죄자의 재범위험성 진단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표는 개발과 타당화 작업을 기본으로 하고, 현장에서의 적용과 문제점 등을 반영한 상세항목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지표 개발기간에 여유를 두고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본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실무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를 지원해준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TF 실무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론검토, 통계분석 등에서 전문적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해준 성유리 부연구위원, 이태헌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 고가영 조사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향후, 분류지표의 개선을 위한 후속 작업에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 정책을 지원할 것입니다. 보고서를 읽는 내·외부 전문가분들과 독자들께서도 저희 연구에 끊임없는 격려와 자문 및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선임연구위원 **윤 정 숙**

목 차

국문요약 ····· 1

제1장 윤정숙

서 론 ····· 9

제2장 윤정숙·성유리

연구배경 ····· 15

제1절 분류지표의 사용목적 및 현황 개관 ····· 17

1. 분류지표의 개발배경 및 사용목적 ····· 17
2. 분류지표의 사용현황 및 문제점 ····· 20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해외의 분류지표 ····· 27

1. 이론적 배경 ····· 27
2. 해외의 분류지표 ····· 29

제3장 이태헌·성유리

분류지표의 타당도 검증 ····· 43

제1절 통계적 검증을 통한 분류지표의 타당도 확인 ····· 45

1. 조사대상자 설정 및 데이터 구축 ····· 45
2. 분석 대상자 ····· 49
3. 경비처우 분류심사의 재범여부 예측력 확인 ····· 49
4. REPI 분류지표의 재범여부 예측력 확인 ····· 62
5. 경비처우 분류심사의 출소 후 재범까지 기간 예측력 확인 ····· 72

6. REPI 분류심사의 출소 후 재범까지 기간 예측력 확인 ····· 82
7. 결론 및 제언 ····· 91
제2절 실무적 판단을 통한 분류지표 검증 ····· 93
1. 조사개요 ····· 93
2. 분류심사 실무자 의견조사 ····· 93
3. 소결 ····· 110

제4장 윤정숙
분류지표 개선방안 ····· 111
제1절 주요결과 정리 ····· 113
1. 지표의 재범예측 타당도 ····· 113
2. 실무자 의견 ····· 117
제2절 분류지표 항목 개선방안 ····· 121
1. 위험성과 욕구(위험요인)의 평가 ····· 121
2. 경비처우지표와 교정재범예측지표에의 적용 ····· 128

참고문헌 ····· 133

Abstract ····· 139

부록 ····· 153
1.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신입심사) ····· 153
2.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재심사) ····· 154
3. 교정재범예측지표(신입심사) ····· 155
4. 교정재범예측지표(재심사) ····· 156

표 차례

[표 2-1] 경비처우급에 따른 수용시설과 판정기준 ····· 19
[표 2-2] 교정재범예측지표 등급의 의미와 판정기준 ····· 20
[표 2-3] 재범예측지표(REPI) 별 재복역률 ····· 22
[표 2-4] 경비처우급 재심사지표와 교정재범예측 재심사지표 구성요소 ····· 24
[표 2-5]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와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유사항목 ····· 25
[표 2-6] LSI-R 구성변수 ····· 30
[표 2-7] LS/CMI 구성 섹션에 대한 설명 ····· 33
[표 2-8] LS/CMI 평가항목 세부사항 ····· 34
[표 2-9] HCR-20 위험요인과 세부 하위항목 ····· 37
[표 2-10] PATTERN 위험성 점수 산출 ····· 40
[표 2-11] First Step Act 욕구(Needs) 평가 ····· 42
[표 3-1] 타당도 검증을 위한 추출 변수 ····· 47
[표 3-2] 타당도 검증을 위한 2차 추출 기준 ····· 47
[표 3-3] 범죄자 재범여부 ····· 49
[표 3-4] 경비처우 최종 등급의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 49
[표 3-5] 경비처우 신입심사 등급의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 51
[표 3-6] 경비처우 재심사 등급의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 52
[표 3-7] 경비처우 재심사 등급의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 53
[표 3-8] 경비처우 신입심사 총 점수의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 53
[표 3-9] 경비처우 재심사 총 점수의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 54
[표 3-10] 경비처우 신입심사 영역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모든 영역 투입 시) ····· 55
[표 3-11] 경비처우 신입심사 영역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각 영역 하나씩 투입 시) ····· 56
[표 3-12] 경비처우 신입심사 동적/정적 요인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모든 요인 투입 시) ····· 56
[표 3-13] 경비처우 신입심사 동적/정적 요인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각 요인 하나씩 투입 시) ····· 57
[표 3-14] 경비처우 신입심사 문항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모든 문항 투입 시) ····· 58
[표 3-15] 경비처우 신입심사 문항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모든 문항 투입 시) ····· 58
[표 3-16] 경비처우 신입심사 문항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각 문항 하나씩 투입 시) ····· 59
[표 3-17] 경비처우 재심사 하위항목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모든 문항 투입 시) ····· 60

[표 3-18] 경비처우 재심사 하위항목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모든 문항 투입 시) …… 61
[표 3-19] 경비처우 재심사 하위항목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각 문항 하나씩 투입 시) …… 61
[표 3-20] REPI 최종 등급의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 62
[표 3-21] REPI 신입심사 등급의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 63
[표 3-22] REPI 재심사 등급의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 64
[표 3-23] REPI 신입심사 총 점수의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 65
[표 3-24] REPI 재심사 총 점수의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 66
[표 3-25] REPI 신입심사 동적/정적 요인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모든 요인 투입 시) …… 67
[표 3-26] REPI 신입심사 동적/정적 요인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각 요인 하나씩 투입 시) …… 67
[표 3-27] REPI 신입심사 동적/정적 하위 요인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모든 요인 투입 시) …… 67
[표 3-28] REPI 신입심사 정적 하위 요인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각 요인 하나씩 투입 시) …… 68
[표 3-29] REPI 신입심사 문항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모든 문항 투입 시) …… 68
[표 3-30] REPI 신입심사 문항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모든 문항 투입 시) …… 69
[표 3-31] REPI 신입심사 문항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각 문항 하나씩 투입 시) …… 70
[표 3-32] REPI 재심사 하위항목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모든 문항 투입 시) …… 72
[표 3-33] REPI 재심사 하위항목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각 문항 하나씩 투입 시) …… 72
[표 3-34] 경비처우 최종 등급의 생존분석 …… 73
[표 3-35] 경비처우 신입심사 등급의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 74
[표 3-36] 경비처우 재심사 등급의 생존분석 …… 75
[표 3-37] 경비처우 재심사 등급의 생존분석 …… 76
[표 3-38] 경비처우 신입심사 총 점수의 생존분석 …… 77
[표 3-39] 경비처우 재심사 총 점수의 생존분석 …… 77
[표 3-40] 경비처우 신입심사 영역별 생존분석 (모든 영역 투입 시) …… 77
[표 3-41] 경비처우 신입심사 영역별 생존분석 (각 영역 하나씩 투입 시) …… 78
[표 3-42] 경비처우 신입심사 동적/정적 요인별 생존분석 (모든 요인 투입 시) …… 78
[표 3-43] 경비처우 신입심사 동적/정적 요인별 생존분석 (각 요인 하나씩 투입 시) …… 78
[표 3-44] 경비처우 신입심사 문항별 생존분석 (모든 문항 투입 시) …… 79
[표 3-45] 경비처우 신입심사 문항별 생존분석 (모든 문항 투입 시) …… 80
[표 3-47] 경비처우 재심사 하위항목별 생존분석 (모든 문항 투입 시) …… 81
[표 3-48] 경비처우 재심사 하위항목별 생존분석 (모든 문항 투입 시) …… 81
[표 3-49] 경비처우 재심사 하위항목별 생존분석 (각 문항 하나씩 투입 시) …… 82
[표 3-50] REPI 최종 등급의 생존분석 …… 82
[표 3-51] REPI 신입심사 등급의 생존분석 …… 83
[표 3-52] REPI 재심사 등급의 생존분석 …… 84

[표 3-53] REPI 신입심사 총 점수의 생존분석 ····· 85
[표 3-54] REPI 재심사 총 점수의 생존분석 ····· 86
[표 3-55] REPI 신입심사 동적/정적 요인별 생존분석 (모든 요인 투입 시) ····· 86
[표 3-56] REPI 신입심사 동적/정적 요인별 생존분석 (각 요인 하나씩 투입 시) ····· 86
[표 3-57] REPI 신입심사 동적/정적 하위 요인별 생존분석 (모든 요인 투입 시) ····· 87
[표 3-58] REPI 신입심사 동적/정적 하위 요인별 생존분석 (모든 요인 투입 시) ····· 87
[표 3-59] REPI 신입심사 정적 하위 요인별 생존분석 (각 요인 하나씩 투입 시) ····· 87
[표 3-60] REPI 신입심사 문항별 생존분석 (모든 문항 투입 시) ····· 88
[표 3-61] REPI 신입심사 문항별 생존분석 (모든 문항 투입 시) ····· 89
[표 3-62] REPI 신입심사 문항별 생존분석 (각 문항 하나씩 투입 시) ····· 90
[표 3-63] REPI 재심사 하위항목별 생존분석 (모든 문항 투입 시) ····· 91
[표 3-64] REPI 재심사 하위항목별 생존분석 (각 문항 하나씩 투입 시) ····· 91
[표 3-65] 경비처우등급의 문제점 ····· 94
[표 3-66] 교정재범예측지표의 문제점 ····· 97
[표 3-67] 경비처우등급의 타당화 검증 결과에 대한 의견 ····· 104
[표 3-68] 교정재범예측지표의 타당화 검증 결과에 대한 의견 ····· 108
[표 4-1] 분류지표에 사용될 수 있는 범죄유발요인 ····· 126
[표 4-2] 분류심사/검사에 사용될 수 있는 비범죄유발요인과 반응요인 ····· 127
[표 4-3] 분류지표 개선(안) ····· 129

그림 차례

[그림 3-1] 경비처우 최종 등급의 재범여부 예측력 ROC 그림 ····· 50
[그림 3-2] 경비처우 신입심사 등급의 재범여부 예측력 ROC 그림 ····· 51
[그림 3-3] 경비처우 재심사 등급의 재범여부 예측력 ROC 그림 ····· 52
[그림 3-4] 경비처우 신입심사 총 점수의 재범여부 예측력 ROC 그림 ····· 54
[그림 3-5] 경비처우 재심사 총 점수의 재범여부 예측력 ROC 그림 ····· 55
[그림 3-6] REPI 최종 등급의 재범여부 예측력 ROC 그림 ····· 62
[그림 3-7] REPI 신입심사 등급의 재범여부 예측력 ROC 그림 ····· 63
[그림 3-8] REPI 재심사 등급의 재범여부 예측력 ROC 그림 ····· 64
[그림 3-9] REPI 신입심사 총 점수의 재범여부 예측력 ROC 그림 ····· 65
[그림 3-10] REPI 재심사 총 점수의 재범여부 예측력 ROC 그림 ····· 66
[그림 3-11] 경비처우 최종 등급별 생존분석 그림 ····· 73
[그림 3-12] 경비처우 신입심사 등급별 생존분석 그림 ····· 74
[그림 3-13] 경비처우 재심사 등급별 생존분석 그림 ····· 75
[그림 3-14] 경비처우 재심사 등급별 생존분석 그림 ····· 76
[그림 3-15] REPI 최종 등급별 생존분석 그림 ····· 83
[그림 3-16] REPI 신입심사 최종 등급별 생존분석 그림 ····· 84
[그림 3-17] REPI 재심사 등급별 생존분석 그림 ····· 85

국문요약

분류심사는 수용자의 수용시설을 지정하고 처우의 수준을 결정하여 올바른 수용생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된다. 국내의 분류지표는 크게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와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로 구분할 수 있다.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는 2010년 5월 31일「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도주 등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수용설비 및 계호정도와 교육이나 수형생활과 같은 처우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는 전반적인 위험성이 높은 자를 격리하고, 재사회화가 용이할 것으로 예측되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자에겐 차별적인 처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김동현, 2017). 교정재범예측지표는 재수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검증된 요인으로 수형자의 위험정도를 변별하여 신입분류심사와 재심사, 가석방 신청 등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어(법무부 내부자료, 2011)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현행 분류지표인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와 교정재범예측지표의 타당도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먼저 현행 분류지표의 개발 배경 및 사용 목적, 개발 방식 및 항목 구성현황을 검토하였으며, 영미국가의 교정단계 분류지표를 검토하였다. 분류지표의 통계적인 타당도 검증을 위해 전체 점수나 영역별 점수의 재범 예측력과 각 항목의 재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확인하여 부적절한 문항을 도출해 냈으며, 전문가 자문과 관련 정책부처 TF와의 회의, 교정시설 분류과 직원과의 의견취합 등을 통해 수용등급의 결정이나 가석방 심사와 관련된 분류지표의 개선방향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류지표를 설명하는데 사용한 이론은 위험성과 위험요인을 범죄자 처우를 중심으로 정리한 이론인 위험성, 욕구, 반응성 모델(이하 RNR 모델)이다(Andrews, Bonta, 1998). 위험성(risk)은 입소한 수용자의 재범위험성 수준을 지칭하며, 위험요인(risk factors)은 재범과 관련 있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지칭한다.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는 위험요인들을 사용하여 재범위험 수준을 가늠하는 작업으로

국제적으로 타당한 도구를 이용하면 수용자의 재범위험 수준을 확인하여 특정 등급에 할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할당으로 해당 수용자의 관리·통제 수준과 처우프로그램의 강도(예: 프로그램의 기간)를 어느 수준으로 집행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위험성은 정적 위험요인과 동적 위험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행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정적 위험요인은 태도나 정서/인지와 관련되어 있는 동적 위험요인보다 재범에 대한 예측력이 높게 나타난다. 욕구(needs)는 범죄유발적 욕구와 비범죄유발적 욕구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하게 한다. 범죄유발적 욕구는 범죄자의 위험수준의 합산체이며 동적인 속성이지만 욕구의 변화가 재범가능성과 언제나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범죄유발요인이 합산되어 행동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이 범죄이고,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곧 위험성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위험요인의 합산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응성(Responsivity)은 처우프로그램을 집행하는 치료자 혹은 처우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수용자가 가지고 있는 영향 요소이다.

현행 분류지표는 대부분의 항목이 정량적이며 정적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형자의 위험정도의 변화를 평가하기 어렵고(Bonta, 1999), 이들을 면담하고 관찰, 평가하는 심리 평가자의 의견이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두 지표의 재심사는 대부분 소득점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정생활로 인한 변화를 측정하는 동적요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등의 문제가 있다. 이 밖에 두 지표의 재심사지표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 재심사지표에 남아있는 누진처우제도의 잔재, 수형자의 위험성보다는 행정성적 결과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운영된다는 문제, 분류심사를 위해 두 개의 지표(경비처우급 분류지표와 교정재범예측지표)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해당 지표의 사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시행 10년 차에 도래할 때까지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점이다.

이에 현행 분류지표의 통계적 타당도 검증을 위해 교정본부의 협조를 얻어 교정재범예측지표를 처음 실시하여 적용한 2012년에서 2021년 사이에 수형된 뒤 출소하고 2021년 7월 말일까지 재범하여 재입소하거나 재범하지 않은 출소자의 초기 입소 자료 및 재입소 자료를 추출하였다. 1차 추출기준에 부합하는 사례는 96,077명이었다. 이 중 2020년 교정통계연보에 근거하여 석방종류(형기종료, 가석방), 성별, 연령, 입소경력, 범죄유형, 형기를 기준으로 2차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추출한

표본은 9,929명의 수형자 정보를 포함하며, 이 중 재범자는 1,592명(16.0%)이었다.

현재의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와 교정재범예측지표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두 지표가 수형자의 위험(재범) 정도를 판정하는지 확인한 결과, 두 분류지표는 재범을 타당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든 항목을 동시 투입하여 변수간의 상관성을 통제하여 분석하고, 각 항목을 단독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교차타당도(cross-validation)가 검증되었다는 전제하에 두 분석의 결과를 조합하여 ① 변수간의 상관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재범을 유의하게 예측한 항목은 활용가능성이 높고, ② 변수간의 상관성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 재범을 정적 방향으로 예측하였으나, 상관성을 통제한 이후 예측력을 상실한 항목은 일정 정도 활용가능하나 평가방식을 재고하여야하며, ③ 단독투입 시에도 예측방향과 예측력에 문제가 있는 항목은 재범예측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므로 사용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하였다.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의 경우, 최종 등급을 기준으로 S3급이나 S4급이 S1보다 재범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4급은 S1급에 비해 재범 위험성(승산)이 22배 정도 높게 나타나 경비처우등급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처우 분류지표를 구성하는 16개 항목 중 변수 간의 상관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재범을 유의하게 예측한 항목은 범죄동기, 범죄심각성, 재범기간점수, 최초경찰입건연령점수, 교정시설총수용기간점수, 과거수용중징벌점수로 나타났으며 동적요인을 평가하는 위험성 및 개선도 평가와 도주 또는 위반 영역의 구성변수들은 재범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변수간의 상관성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 재범을 정적 방향으로 예측하였으나, 상관성을 통제한 이후 예측력을 상실한 항목은 미결태도점수, 범법행위건수, 초중범죄중범죄유무점수, REPI동적평가점수, 집행유예실효등점수였다. 각 항목을 단독 투입하였을 때 예측방향과 예측력에 문제가 있었던 항목은 흉기사용점수, 전체형기점수, 개선가능성점수, 도주자살시도점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심사지표의 경우, 현행 지표에 사용되는 문항 중 재범가능성점수(REPI) 문항만이 재범여부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의 교정처우성과점수, 형집행기간점수, 교정성적점수, 문제행동가능성점수, 징벌관련점수, 개별처우고려점수는 모두 재범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경비처우급 재심사지표는 각 항목의 구성개념이나 평가방식 등을 재고하고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작업이 필요하다.

교정재범예측지표도 최종등급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R1급에 비해 R2급은 3배, R3급은 8배, R4급은 20배, R5급은 40배 정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재범예측지표 총점은 신입심사 점수가 재심사 점수보다 예측력이 높았으며, 신입심사의 경우 1 표준편차 상승 시(총점이 6.368점 증가 시) 재범위험성이 2.44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재범예측지표를 구성하는 23개의 변수 중 변수 간의 상관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재범을 유의하게 예측한 변수는 성별, 죄명, 피해자관계, 본건및과거징벌, 동일유사죄명경력횟수, 최초형확정연령대, 이전범죄출소연령대, 학창시절처벌경험, 출소후재범환경, 비행성향, 포기성향점수로 나타났다. 변수 간의 상관성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 재범을 정적 방향으로 예측하였으나, 상관성을 통제한 이후 예측력을 상실하거나 예측방향에 문제가 있었던 변수는 이전범죄전체형기, 집행유예취소실효횟수, 정신병원치료경력, 공권력태도, 특정요인별재범가능성점수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각 항목을 단독 투입하였을 때 예측방향과 예측력에 문제가 있었던 변수는 범죄시정신상태, 재범기간, 동거횟수, 범죄시직업, 입소전경제상태, 입소전거주상태, 학력점수로 나타났다. 재심사지표의 경우, 경비처우급지표와 동일하게 변수 간 상관을 통제하자 경비처우점수만이 유의하게 재범을 예측하였다. 교정성적, 징벌관련, 벌금미납추가형은 단독투입 시에만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교정처우성과점수는 단독투입 시에도 유의하게 재범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추가적으로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와 교정재범예측지표가 재범기간도 예측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생존분석은 재범까지 걸린 시간을 고려하여 각 등급과 항목 및 변수가 재범소요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두 지표의 등급과 총점은 재범까지의 기간을 타당하게 예측하였다. 두 지표 모두 S1과 R1에 비해 나머지 등급은 시간이 지날수록 재범에 대한 누적 위험이 높아지는 것(더 빠르게 재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두 지표 모두 동적요인에 비해 정적요인이 재범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과거범죄관련사항이 가장 재범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재범예측지표의 경우에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가장 재범을 예측하지 못하여 성별을 제외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재범예측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통계적 타당성 검증 결과를 실무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교정본부 실무자 및 외부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분류지표의 실행 및 운영과정과 타당성 검증 결과에서 실무자가 느끼는 문제점과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였다. 먼저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의 사용과 운영과정에서 느끼는 문제점에 대해 실무자는 크게 과거 범죄력의 비중이 지나친 점, 동적요인의 내용타당도가 낮은 점, 획일화된 재심사지표를 사용하고 있는 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해석되는 점, 경비등급과 처우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타당도 검증 결과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초중범죄중범죄유무 항목은 본 조사 표본에 전체 형기가 10년 이상인 고득점자가 포함되지 않아 불안정한 통계결과가 산출되었을 가능성과 범죄유형에 따라 낮은 형기를 받지만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형자가 있어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해당 문항이 재범은 잘 예측하지 못할지라도 수형자의 처우에서는 유의한 항목이므로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개선가능성과 문제행동가능성 문항은 주관적 평가가 필수적인 부분이나 주관적 평가에 대한 직원의 두려움으로 분류지표 실행 이후에 계속적으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언급하였다.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의 동적요인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된 것이 아닌 시계열상 혼재된 평가방식으로 평가된 만큼, 측정도구의 오염으로 재범을 유의한 방향으로 예측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동적 요인을 신입심사 단계에서 평가하는 것이 불안정한 통계적 검증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적 요인은 재심사지표로 이동하고 신입심사에서는 정적 요인만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다만 변화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필요하므로 신입심사 시에도 동적요인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동적요인을 축소하여 수형자의 현재 위험성과 보안등급/구금의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하고, 재사회화 가능성이나 개인적인 변화 정도는 교정재범예측지표가 측정하도록 두 지표를 이원화하는 방법도 제안하였다. 도주 또는 위반 분류영역은 경비등급을 고려할 때 중요한 변수이나 해당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당 문항들을 다른 항목의 평가기준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집유실효등점수'의 경우에는 경비처우등급이 판정된 이후에도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하향등급조정이 이뤄지므로 문항 삭제도 고려할만 하다고 언급하였다.

교정재범예측지표에 대한 의견은 실무자 및 외부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취합한 사용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에서 교정재범예측지표의 개선안을 위해 소속기관의 실무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였다. 교정재범예측지표를 사용하고 운영하는 것에 앞서 언급한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와 동일한 문제점(개발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 과거 범죄력의 지나친 비중)과 그 외에 미래에 대한 무리한 예측, 인권침해 및 차별적 요소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재범예측력에 대한 실무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동거횟수, 범죄시 직업, 입소 전 경제상태, 입소 전 거주상태, 학력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이 각 문항을 하나씩 투입한 경우에도 재범을 예측하지 못한 검증결과는 입소자들이 자기보고로 응답한 내용으로 채점하기 때문에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 동거점수나 학력점수 기준 등에 변화한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내용타당도가 낮은 문항으로 인해 재범예측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 문항이 모든 문항 투입 시 재범을 부적으로 예측한 현상에 대해서는 재범률이 높은 특정 범죄성향을 과거 범죄 및 비행기록으로 평가하는 문항이므로, 예측력이 높은 과거범죄관련 문항으로 인해 특정요인별재범가능성 문항의 검증력이 불안정한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밖에 현재의 두 분류지표가 동적요인을 충분히 조사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 실무가 및 외부전문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사용하는 분류지표의 동적요인이 재범을 유의하게 예측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분류지표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동적요인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그 개념을 보다 타당하게 정립하고 평가 방식을 정밀하게 만들 필요성을 제기한다. 경비처우지표의 문제행동가능성이나 개선가능성, 교정심리검사의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 공권력에 대한 태도와 같이 불안정한 설명력을 보이는 항목들은 대체로 항목의 명칭 자체가 추상적이고 범위가 넓으며 무엇을 측정하고자 하는지 겉보기에도 잘 이해되지 않는 등, 안면타당도가 높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항목들은 과거의 분류지표에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 바,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인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먼저 RNR 이론을 한국의 분류지표에 적용하고자 한다. 정적 위험요인인 범죄경력이나 초범 연령, 학창시절 처벌경력 등은 변화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내면적, 심리적 요인인 동적 위험요인은 그 내용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교정처우프로그램의 목표 영역이 되기도 한다. 현행 분류지표에서 동적요인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항목들(출소후 재범환경, 공권력에 대한 태도,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 경비처우급의 문제행동가능성, 개선가능성, 재심사지표의 교정처우성과, 교정성적, 문제행동가능성) 중 상당수는 구성 개념 자체가 엄밀한 의미에서 동적요인으로 볼 수 없으며, 변화 가능한 범죄유발요인을 평가하기 보다는 변화가 가능하지 않은 위험요인이거나, 비범죄유발요인이거나 혹은 성취(achievement)만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적요인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동적요인의 재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진은 RNR이론과 통계적 타당도 검증 결과, 실무자 및 외부 전문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분류지표는 어떠한 목적에서 사용되든 완성된 1개의 통합지표에서 출발하되, 그 목적에 따라 평가영역을 축소 혹은 확대해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두 지표를 통합할 경우, 현행 지표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문제점인 두 지표의 중복 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 거의 모든 요인들이 동적인 속성을 갖는 것으로 질문을 구성한다면 신입심사지표와 재심사지표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없어 효율적이다. 각 검사 시 심사 구분표를 작성하여 신입심사, 재심사, 가석방심사, 출소평가 등 심사유형을 명시하고 연속적으로 지표값을 관리한다.

분류지표에서 사용되는 범죄유발요인은 Big 8 요인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핵심범죄유발요인(반사회적 인지, 반사회적 동료, 반사회적 행동 경력, 반사회적 성격 유형)과 잠재적 범죄유발요인(가족/결혼, 학교/직장, 여가활동, 약물 남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Andrews, Bonta, Wormith, 2004).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통합된 분류지표는 크게 핵심범죄유발요인, 잠재적 범죄유발요인(사회인구학적 특징 및 생활양식), 잠재적 범죄유발요인(심리적 태도)로 구성할 수 있다. 먼저 핵심 범죄유발요인은 정적요인인 과거 범죄력에 해당하는 범죄 횟수, 초범 연령, 범행 심각성 등을 측정하는 반사회적 행동경력과 함께 동적요인인 반사회적 인지(범죄에 대한 태도, 준법의식, 형량에 대한 태도 등), 반사회적 성격(적대감, 충동성, 공격성, 감정적 무딤, 사이코패시 성향 등), 반사회적 동료(사회적 고립, 범죄경력의 친구/지인 등)를 함께 평가한다. 수용자별로 경비처우수준(보안등급)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측정된 핵심 범죄유발요인을 기준으로 수용자의 수용 수준을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경비등급(보안등급)

과 처우등급을 분리해내고자 할 경우에는 경비등급(보안등급)은 핵심 범죄유발요인의 반사회적 행동경력으로 결정하고, 반사회적 인지, 반사회적 성격, 반사회적 동료를 처우등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교정재범예측지표의 경우, 핵심 범죄유발요인과 잠재적 범죄유발요인을 모두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여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제안해 본다. 가석방심사에 처우성과 등이 반영되어야하는 점을 고려할 때 동적요인들이 증가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영역은 경비처우급을 구분하는데 사용한 핵심유발요인을 동일하게 사용하며, 두 번째 영역은 사회인구학적 특징 및 생활양식으로 가족/결혼관계, 고용 및 학력, 여가시간, 알코올/마약문제/정신질환문제를 측정한다. 세 번째 영역은 심리적 태도와 관련이 있는 영역으로, 심리적 태도는 대체로 어떠한 범죄유형이든 범죄자의 행동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4대 영역(인지적 왜곡, 정서적 문제, 대인관계적 문제, 문제해결/자기관리 기술 부족)으로 구성하여 평가시점에 따른 상태가 반영되도록 문항을 구성하거나, 기존의 심리척도를 이용하는 방식을 구상해 볼 수 있겠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잠재적 범죄유발요인은 재범의 예측력이 정적요인 등으로 구성된 핵심 범죄유발요인보다 낮지만 범죄유발과 관련이 있는 영역이다. 종래의 지표에서는 주로 입소전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평가 시점에 따라 상태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개선된 지표에서는 질문을 새롭게 구성한다면 평가시점에 따라 변화된 상태를 새롭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핵심 범죄유발요인의 결과에 따라 범죄자의 경비처우수준을 분리하고(경비처우급 분류지표), 잠재적 범죄유발요인까지 모두 평가하여 변화량을 반영한 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진단에 활용(교정재범예측지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가장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질문의 구성, 평정의 방식과 점수체계, 등급산출을 위한 매트릭스, 등급조정의 방식 등은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분류지표의 사용과 관련한 모든 기술적 지원이나 상세사항 등을 적시한 사용 매뉴얼 역시 후속 연구를 통해 점차 완성해야 할 것이다.

서론

윤 정 숙

제1장

서 론

1955년 제1회 UN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회의에서는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을 통해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분류 및 처우 개별화'를 명시하고 교정시설내 분류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분류심사는 수용자의 수용시설을 지정하고 처우의 수준을 결정하여 올바른 수용생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된다.

분류심사에는 다양한 지표와 검사도구들이 사용된다. 특히 개별 수용자의 경비처우급을 지정하기 위한 지표는 수용자의 위험수준에 따른 적절한 수용시설을 지정할 수 있고 하급 일선기관에서는 시설내에서 사동이나 사방의 지정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정도에 지나친 불필요한 구금을 하지 않으면서도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용지정을 가능하게 한다(이윤호, 이수정, 공정식, 2000). 교정시설에서는 현재 "경비처우급 분류지표"가 이러한 목적으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는 수용자를 위험수준에 따라 분류하여 수용시설 내에서의 적절한 관리와 처우를 통한 시설 적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수용자의 행위나 행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수형기간 동안 재분류가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재범위험성이 충분히 감소되어 가석방에 적합한가를 평가하는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용자의 재범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추적하며, 미래의 재범가능성을 예측하는 재범예측지표는 적절한 처우계획 수립 및 가석방 심사시 주요한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가 이러한 목적으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교정재범예측지표는 출소 후 재범방지를 염두에 두고 개발된 지표라 할 수 있다.

교정시설 내에서 사용하는 대표적 분류지표(경비처우급 분류지표, 교정재범예측지표; 이하 분류지표로 명명)인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와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는 개발 목표는 다소 상이하지만, 본질적으로 상호연관적인 속성, 즉 수형자의 '위험 수준'을 측정하여 시설내 관리 및 가석방 심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때 '위험 수준'이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풀이될 수 있는데, 첫째로는 가까운 미래에 수형자가 가지는 폭력성의 수준으로 교정시설 내에서 폭력행위를 할 가능성, 도주나 자살 등 문제행위를 보일 가능성 등 전반적인 시설 내에서의 위험 수준을 칭한다. 둘째로는 보다 먼 미래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위험 수준으로, 수형자가 시설을 출소한 후 재범 가능성에 대한 위험 수준을 일컫는다. 두 위험 수준 모두 평가 시점에서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힘든 장·단기적 위험 수준을 가늠한다는 측면에서 결국, 위험 수준은 '미래의 재범 가능성'을 통칭한다고 할 것이다.

단기적 위험 수준은 장기적 위험 수준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통상, 시설내 폭력행위가 단기적 위험 수준을 잘 드러내지만, 결국 이러한 문제 행위들은 수형자가 내재적/외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수형자의 위험 수준이 감소되지 못했다는 의미를 함포하고 있다. 출소 시점에 감소되지 못한 위험요인들은 여전히 문제요인으로 작동하여 출소 후 재범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수형자의 시설 적응이 외견상 원활한 경우에도 출소 후 재범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수형자의 내재적 변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시설의 적응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단순 징벌이나 사고유무가 아닌, 수용자의 보다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입소 시 수형자의 분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는 '위험 수준'을 가늠하는데 주목적을, 가석방을 심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정재범예측지표는 '위험 수준의 변화'를 가늠하는데 주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시점이 어떠하던 미래의 위험 수준을 예측한다는 측면에서 두 개의 분류지표는 상호연관적이며, 이에 따라 분류지표가 측정하는 영역이 상당히 통합적이고 측정 방식이 과학적이어야 함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교정시설내 두 분류지표가 대부분 정적요인(변화하지 않는 요인, static factor)을 평가하거나 심리검사 상의 정량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수용자의 내면 심리나 이들을 면담 및 관찰하고 평가하는 검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는 본범 관련사항, 과거 범죄 관련사항, 위험성 및 개선도 평가 등 4개 영역 16개 항목을 점수화하여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신입수용자에 대한 분류지표와 재심사[1)]지표가 따로 존재하며 재심사에는 교정처우성과와 교정성적, 징벌관련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그러나, 신입수용자 지표의 대부분의 구성항목이 범죄사실 관련 정량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정신질환이나 심리적 문제, 폭력성 등 수용자의 내면 위험요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비의 단계 및 처우의 수준이 결정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된 지표가 수용자의 감시수준 및 개별적 처우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적절한 것인지 그 타당도를 검토하여 지표의 개선방향 및 개선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정재범 예측지표는 성별, 죄명, 유사 범죄경력, 이전범죄 전체형기, 교정심리검사 등 23개 문항을 점수화하여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신입수용자에 대한 지표와 재심사[2)]를 위한 지표가 따로 존재하며 재심사에는 경비처우급지표와 마찬가지로 교정처우성과와 교정성적, 징벌관련사항 등을 고려한다. 예측지표의 약 79%가 정량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재심사의 경우 정량지표 구성비율이 84%에 달하여 심리치료 등 재범방지 교육효과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석방 심사시 수용자의 재범가능성에 대한 실제적 판단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현행 분류지표의 타당도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분류지표의 타당도 확인은 전체점수나 영역별 점수의 재범예측도를 중심으로 하고[3)], 각 항목의 재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면서 부적절한 문항을 도출해 냄과 동시에, 이론적 논의 및 실무적 검토를 통해 추가되어야 할 영역 등을 제안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 자문과 관련 정책부처 TF와의 회의, 교정시설 분류과 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수용등급의 결정이나 가석방 심사와 관련된 분류지표의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1)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의 재심사는 각각 형기가 1/3. 1/2, 2/3, 5/6이 도과한 시점에 정기적으로 행해짐
2) 재심사 기간은 기본적으로 형기가 2/3가 도과한 시점에 행해지며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행해짐
3) 시설내의 폭력행위로 인한 징벌이력은 이미 지표내 구성 항목으로 산입되어 있어, '출소후 재범'을 타당도의 결과 변인으로 활용코자 함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현행 분류지표의 개발 배경 및 사용 목적, 개발 방식 및 항목 구성현황을 검토함과 동시에, 영미국가의 교정시설단계 분류지표를 검토하였다. 현행 분류지표의 통계적 검증을 위해 교정재범예측지표를 처음 실시하여 적용한 2012년도를 기점으로 하여 교정본부의 협조를 얻어 출소자의 분류지표 자료와 재입소 여부 등을 통계시스템에서 추출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통계적 검증과 더불어 분류심사과 직원 면담을 통한 운영방식의 문제점, 보완사항 등을 분석하면서 개선방향을 제시코자 하였다.

연구배경

윤정숙·성유리

제2장

연구배경

제1절 | 분류지표의 사용목적 및 현황 개관

1. 분류지표의 개발배경 및 사용목적

국내의 분류지표는 수형자의 경비 및 처우급을 판정하기 위한 분류심사와 수형자의 인성이나 지능, 적성 관련 특성을 측정하고 진단하는 분류검사[4]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장에서는 분류심사에 해당하는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와 '교정재범예측지표'의 개발배경과 현황 등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언급하였다.

가.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2000년대 초반까지의 분류심사는 "수형자로 하여금 스스로 개선하고 보다 빨리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분류처우 업무지침 [법무부예규 제516호('99. 6. 1)])" 실행되었으나, 범죄유형, 연령, 성별과 같은 기초적인 항목만을 고려하고 재소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가 아닌 일반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재소자를 평가 및 심사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이윤호, 이수정, 공정식, 2000). 또한 현재의 분류처우제도가 2008년도에 도입되기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누진처우제도를 사용하였다. 60년대부터 사용해온 누진제는 신규 입소한 모든 수형자를 4급으로 편입하고, 매달 교정에서의 생활태도 등을 평가하는 행정성적을 쌓아 책임점수를 소각해 3급으로 진급하는 체계

4) 분류검사에는 수용자의 재범위험성을 예측하기 위한 교정심리검사와 관리 수준을 정하기 위한 위험관리수준 평가(RM) 등이 있다.

로 운영되었다. 누진제도는 모든 수형자가 4급부터 시작하였으므로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가 4급 처우를 받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 12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수형자를 분류심사 결과에 상응하는 교정시설에 수용하고 개별적 처우를 받도록 '경비급 분류지표'와 '처우급 분류지표'를 개정 및 실행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현재의 분류지표가 개발되었다. 도주 등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경비급 분류지표는 수용설비와 계호정도를 결정하는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처우급 분류지표는 교육이나 수형생활과 같은 처우의 수준을 결정하는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두 분류지표 중 8개 항목(흉기사용, 재범기간, 범법행위건수, 최초 경찰입건 연령, 교정시설 총 수용기간, 과거수용 중 징벌횟수, 가족기능, T상담점수)이 중복되어 사용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두 지표를 단일화하여 사용하려는 방안이 마련되었고, 2010년 5월 31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경비급과 처우급 분류지표는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로 단일화되었다.

경비처우급 단일화 분류지표 시행 초기에는 개선여지가 비교적 낮은 수형자가 완화경비처우급이나 개방처우급을 판정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분류지표 점수를 비교적 엄격하게 산정하였다(법무부 내부자료, 2011). 이러한 점수산정은 일반경비처우급에 수용되는 수형자의 비율을 높였으며 재심사로 인한 경비처우급 상향 변경과 이송이 이뤄지는 비율을 낮추었다. 일반경비급으로 판정되는 수형자 비율의 증가는 수용시설별 수용인원 불균형으로 이어졌고, 특히 일반경비처우시설에 과밀화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법무부 내부자료, 2011). 엄격한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등급 산정은 개선정도가 높고 재사회화가 원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형자를 일반경비처우시설에 수형하게 만들고 가석방 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교정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분류지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법무부와 교정기관의 움직임이 있었다.

2011년 5월, 교정시설에의 적정한 수용 비율과 수형자의 위험성 및 개선정도 반영을 위해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점수 체계를 일부 개정하여 현재의 경비처우급 분류지표가 되었다. 현재의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와 재심사지표는 각각 부록 1과 2에 제시하였다. 분류지표 체계의 도입과 개정의 역사를 통해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는 다음으로 설명할 교정재범예측지표와 함께 전반적인 위험성이 높은 자를 격리하고, 재사회화가

용이할 것으로 예측되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자에겐 차별적인 처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김동현, 2017).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최소 17점, 최대 100점이다. 23점 이하일 경우 가장 높은 개방처우급(S1)을 판정받아 개방시설에 수형되며, 64점 이상일 경우 가장 낮은 중경비처우급(S4)을 판정받아 중경비시설에 수형된다(〈표 2-1〉 참고).

[표 2-1] 경비처우급에 따른 수용시설과 판정기준

경비처우급	수용 시설	판정기준
개방처우급(S1급)	개방시설	23점 이하
완화경비처우급(S2급)	완화경비시설	24～37점
일반경비처우급(S3급)	일반경비시설	38～63점
重경비처우급(S4급)	重경비시설	64점 이상

나. 교정재범예측지표

교정재범예측지표는 재수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검증된 요인으로 수형자의 위험 정도를 변별하여 신입분류심사와 재심사, 가석방 신청 등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법무부 내부자료, 2011).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사용 목적은 〈표 2-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2〉는 법무부 교정본부의 내부자료 중 일부로, 교정재범예측지표의 각 단계가 어떤 수용자를 변별하기 위한 것인지 설명한다. REPI 등급이 높을수록 재범위험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설명에서는 수형자의 등급에 따른 '사회적응능력'을 언급한다. 즉, 교정재범예측지표는 수형자의 출소 후 재사회화 될 가능성을 중요한 변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이 부족한 수형자에게 적절한 처우를 제공함으로써 재사회화 확률을 높이고 재범 가능성은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고 해석된다.

[표 2-2] 교정재범예측지표 등급의 의미와 판정기준

교정재범예측지표 등급	설명	판정기준
REPI-1	재수용 위험이 거의 없으며, 사회적응능력이 충분함	0~6점
REPI-2	재수용 위험이 없는 편으로, 사회적 처우를 통한 사회적응 능력 배양이 가능함	7~10점
REPI-3	재수용 위험성이 있으며, 사회적 지원,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사회적응능력 배양이 필요함	11~16점
REPI-4	재수용 위험성이 높으며, 시설내 생활적응 및 관련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함	17~21점
REPI-5	재수용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전문적인 치료나 문제행동 프로그램 참여가 요구됨	22점 이상

*출처: 법무부 내부자료(2011)

교정재범예측지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신입심사나 재심사 대상자에게 우선 적용하였으며, 같은 해 11월부터는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에게 적용하였다. 2012년 7월부터는 '12년 분류처우 업무지침 개정 이전에 수감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였고, 남은 수형기간이 3개월 미만인 수형자 등과 같이 분류심사에서 제외된 자나 질병 등으로 인해 심사가 유예된 자를 제외한 전 수형자에게 신입심사를 실시하여 2013년 3월 31일, 시행 1년 만에 전 수형자를 대상으로 교정재범예측심사를 완료하는 성과를 나타냈다(법무부 내부자료, 2021). 세부적인 지표 문항은 부록3과 같다.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재심사지표는 신입심사 시행 약 1년 후인 2013년 11월 5일에 그 기준이 시달되었다. 재심사지표 시행 전에는 신입심사 지표로 재심사를 실시하였다. 재심사지표의 세부적인 문항은 [부록 4]와 같다.

2. 분류지표의 사용현황 및 문제점

가. 분류지표의 사용현황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는 흉기사용, 범죄동기, 범죄심각성 등 본범 관련사항(6항목), 범법행위건수 등 과거 범죄 관련사항(5항목), CO-REPI 동적평가점수 등 위험성 및 개선도 평가(3항목), 도주 또는 위반(2항목) 총 4개 영역, 16개 항목을 점수화하여

S1(개방처우급), S2(완화경비처우급), S3(일반경비처우급), S4(중경비처우급)까지 4단계로 구분한다. 신입수형자는 한 달 이내에 신입심사를 하고, 형기가 1/3. 1/2, 2/3, 5/6이 도과한 시점에 재심사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해당 시점에 소득점수에 변화가 있는 경우 재심사가 이뤄진다. 재심사지표는 교정처우성과와 교정성적, 징벌관련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정재범예측지표는 수형자의 성별, 죄명, 재범기간, 동거횟수, 정신병원 치료경력, 특정 요인별 재범가능성 등 23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점수화하여 REPI-1(재범가능성 매우 낮음)에서 REPI-5(재범가능성 매우 높음)로 구분한다. 신입수용자에 대한 지표와 재심사를 위한 지표가 별도로 존재하며 재심사는 전체 형기의 2/3이 도과한 시점에 실시된다. 재심사 시에는 경비처우급지표와 마찬가지로 교정처우성과와 교정성적, 징벌관련사항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두 분류지표 모두 여죄나 추가 징벌사항, 선행, 공로 등의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정기재심사 시점이 아니더라도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부정기재심사라 한다(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2조).

수형자는 경비등급에 따라 보안·계호형태, 수용생활, 교도작업, 교육·교화, 사회적응, 의료, 시설 등에서 다른 처우 기준으로 수형생활을 하게 된다.「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시행 2018. 7. 3.)」 제 5조 및 별표 1. 경비등급별 수형자 처우기준에는 경비등급에 따른 처우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개방처우급을 받은 수형자는 개방시설에서 도서관과 자율학습실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있으며 취미나 특기활동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극과 문화공연 관람도 허가된다. 그러나 중경비처우급을 받은 수형자는 시설 내에 자율학습실이 없는 중경비시설에 수형되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고 교화방송만 시청 가능하다. 취미나 특기활동, 연극 등 공연관람도 필요시 제한적으로 허가받아 할 수 있다.

사회적 처우는 일반귀휴, 사회견학, 봉사활동, 가족만남의 날, 가족만남의 집, 외부종교 행사 참여, 외부연극, 문화공연 관람 등으로 구분되어있고 처우 등급에 따라 다른 처우를 허가받는다. 개방처우급과 완화경비처우급은 모든 사회적 처우를 허가받지만 일반경비처우급은 특히 필요할 경우 부분적으로 허가된다. 반면 중경비처우급은 모든 처우를 허가받지 못한다.

현재의 분류지표는 수형자의 재범위험성을 비교적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3〉은 2018년도에 출소한 수형자 중 2년 이내에 재범하여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재입소한 수형자의 비율이다(법무부 내부자료, 2021). 재범하여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자는 본 산출식에서 제외하였다.

[표 2-3] 재범예측지표(REPI) 별 재복역률

재범예측지표	매우낮음 (REPI-1)	낮음 (REPI-2)	보통 (REPI-3)	높음 (REPI-4)	매우높음 (REPI-5)
재복역률	1.3%	4.6%	12.2%	27.8%	43.9%

〈표 2-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재범위험도가 매우 높았던 수형자는 REPI 1~4등급을 받는 출소자에 비해 출소 후 2년 이내에 재복역한 비율이 43.9%로 가장 높았다. 반면, 재범위험성이 보통인자의 재복역률은 12.2%였고 낮은 수형자의 재복역률은 4.6%, 매우 낮은 수형자의 재복역률은 1.3%에 불과했다. 2020년 기준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하고 출소한 자 중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교정시설에 재복역한 비율이 25.2%(법무부, 2021)인 점을 감안하면, 교정재범예측지표가 수형자의 재범위험성을 유의하게 변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교정재범예측지표의 타당도는 높은 편이나, 지표를 구성하는 항목의 대부분이 정량지표이고 지표가 개발된 지 약 10년이 지난만큼 최신의 범죄동향이나 범죄자의 특성을 반영한 정밀한 변별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나. 문제점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16항목과 교정재범예측지표 23문항 대부분은 범죄사실과 관련한 정량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는 개선가능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약 94%)이 정량적 요소이며, 16항목 중 CO-REPI 동적평가점수, 문제행동가능성, 개선가능성 항목만이 동적 요인(약 19%)이다. 교정재범예측지표도 출소 후 재범환경, 공권력에 대한 태도,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 교정심리검사 비행성향, 교정심리검사 포기성향 5문항을 제외한 약 79%가 정적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정량적이거나 정적요인만으로 구성된 지표는 수형자의 위험정도의 변화를 평가하기 어렵고

(Bonta, 1999), 이들을 면담하고 관찰, 평가하는 심리 평가자의 의견이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5] 또한 정적요인으로 구성된 분류지표는 수형자의 개선의지나 노력여부를 내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자칫 수형자의 수형의지를 꺾을 수도 있다(박혜림 2020).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와 교정재범예측지표 재심사의 경우에도 정량지표 구성비율이 84%에 달하여 신입심사에서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더욱이 재심사 시에는 교정생활에 대한 평가(처우급 요소)와 함께 수형자가 가지고 있는 재범위험성(경비급 요소)도 판단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항목이 소득점수로 되어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김동현, 2017). 경비처우급의 경우, 재심사지표 7항목 중 5항목이 교정처우 성과, 교정성적과 같은 소득점수이며, 다른 2개의 항목도 REPI 평가등급과 개별처우 고려요소[6]로 구성되어있다. 소득점수도 교정기간 동안 취득한 학위, 자격증 등이 있다거나 도주나 자살을 하지 않고, 징벌이 없으면 상향점수를 받는 구조이다. 즉,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임한 태도, 심리검사로 인한 인지변화, 반성 및 직업훈련 참여도 등 재사회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리 및 태도변화를 측정하는 항목이 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정에서 수행중인 재범방지 교육효과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수형자의 가석방 심사를 위해 재심사지표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체제가 완전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득점수만으로 구성된 재심사지표의 위험성은 일명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진 이춘재가 처제 살인사건으로 복역 중일 당시 S1급이었다는 사례로 설명할 수 있다. 재심사가 소득점수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실제 수형자의 변화되지 않는 기질과 성향으로 인한 재범위험성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수형생활에서의 태도변화로 교화 정도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싸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로 알려진 반사회성 성격장애자는 자신의 모습을 꾸미고 속이는 능력이 있으므로(최혁재,

---

5) 여기에서 평가자의 의견은 개인의 직관이나 경험을 의미하지 않으며, 구조화된 동적요인으로 수형자의 위험성을 평가한 평가자의 의견을 의미한다. 동적요인으로만 구성된 브로셋 폭력성 검사(Broset Violence Checklist)와 위험성평가도구인 HCR-20 등을 활용하여 간호사가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위험행동(자해, 타인에게 상해 등)을 예측한 연구에서 HCR-20 'C' 척도의 예측력(AUC)은 0.73이었고, 브로셋 폭력 검사의 예측력(AUC)은 0.83으로 매우 높았다(Ogloff & Daffern, 2006).

6) 정신·신체질환 및 장애가 있거나 여성, 외국인, 노인과 같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혹은 교정교화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낮은 점수를 받는다. 재심사 점수가 낮을수록 개선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2000) 교도관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7] 문제는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가진 자는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특징이 있고 유의하게 재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Martin, Zabala, Del-Monte, Graziani, Aizpurua, Barry, & Ricarte, 2019; Shepherd, Campbell, & Ogloff, 2018). 따라서 수형자의 내면 심리를 평가하는 항목이 분류심사와 재심사 항목에 부재한 점은 재범 위험성을 평가한다는 분류지표의 목적과 상충될 수 있다.

두 지표의 재심사지표는 거의 동일한 소득점수로 구성되어 있어(〈표 2-4〉 참고) 두 개의 검사를 각각 재심사하는 것의 의미를 해석하기 어려우며, 소득점수로 계산한 REPI 점수를 경비처우급 재심사 점수에 반영하는 것은 소득점수의 이중 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표 2-4] 경비처우급 재심사지표와 교정재범예측 재심사지표 구성요소

평가항목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교정재범예측지표
재범가능성(REPI등급)	○	
경비처우급		○
교정처우성과	○	○
형집행기간	○	○
교정성적	○	○
문제행동가능성	○	
징벌관련사항	○	○
개별처우고려요소	○	
미납 벌금 여부(또는 추가형)		○

소득점수 기준으로 경비처우급이 조정되는 현 체제에는 누진처우제도의 잔재도 문제로 지적된다. 제도 개정 당시, 제도의 안정화와 일정기간 질서유지를 위해 과거 누진처우제도 시 사용하였던 소득점수 채점기준의 수점수(10%), 우점수(30%) 비율을 폐지하지 않고 사용하였는데, 이 점수 비율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5조). 소득점수의 채점기준) 문제는 소득점수(소행점수와 작업점수)가 수

7) 이춘재는 교도관을 보조하는 '반장'을 맡을 정도로 모범수였으며 교도소 내에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다. *출처: '흉악범 vs 모범수' 두 얼굴… 무기 복역하며 출소뒤 주소지 물색 [웹사이트]. (2019년 9월 20일)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0/97489216/1

혹은 우에 포함되는 수형자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쉽게 진급을 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 소득점수가 높으면 쉽게 진급하게 되는 구조는 앞서 언급한, 재심사지표의 대부분이 소득점수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와도 맞물린다. 정리하면, 분류심사는 수형자의 위험성 정도와 그 변화를 측정해야 하지만 소득점수로 구성된 재심사지표와 누진처우제도의 잔재는 수형자의 위험성보다는 행정성적 결과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운영된다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분류심사를 위해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와 교정재범예측지표, 두 개의 지표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일반적으로 여러 검사도구와 많은 문항을 사용할수록 정보의 양은 많아지게 되고, 많은 정보는 검사대상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평가하고 분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 문항은 응답의 질을 하락시키고, 검사자의 업무 피로도를 높인다. 실제로 설문지의 길이가 길수록 응답의 정확성과 성실성이 유의하게 낮아진다는 실험결과도 있다(김권현, 유동주, 김형준, 김청택, 2015). 더욱이 현재의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16문항 중 6문항과 교정재범예측지표 23문항 중 6문항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측정하고 있어 반복측정으로 인한 피로도가 예상된다. 두 지표에서 비슷한 내용을 측정하는 문항을 〈표 2-5〉에 제시하였다.

[표 2-5]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와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유사항목

평가 내용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교정재범예측지표
형확정 후 태도	미결시 태도	공권력에 대한 태도
재범기간	재범기간	재범기간
과거 범법행위	범법행위건수	본건 및 과거 징벌건수
최초 입건 연령	최초 경찰 입건 연령	최초 형확정 연령대
교정시설 총 수용기간	교정기간 총 수용기간	이전범죄 전체 형기
위반	보호관찰위반, 집행유예 실효, 가석방취소·실효 등	집행유예 취소/실효횟수

또한 교정재범예측지표에서 동적요인을 평가하는 항목(출소 후 재범환경, 공권력에 대한 태도,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 교정심리검사 비행성향, 교정심리검사 포기성향)의 합이 경비처우급 신입심사 항목에 포함되며(CO-REPI 동적평가점수), 경비처우급 재심사지표에는 교정재범예측지표 등급이 평가 항목에 포함되고, 교정재범예측지표

재심사지표에는 경비처우급 재심사 당시 등급이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이처럼 두 개의 지표 값이 서로의 등급 산점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심사 지표를 포함한 두 지표를 하나의 지표로 통합하여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지표를 통합하고 동적 요인을 강화한 도구로 개정하여 사용한다면 교정체계에서도 검사를 실시하는 시간과 노력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교정재범예측지표는 수형자의 재범을 매우 유의하게 예측한다. 그러나 현재의 신입심사 지표는 전반적인 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비교적 높게 측정할 수 있지만, 학력이 높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화이트칼라 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은 누락할 가능성이 있다.[8] 따라서 범죄유형에 따른 재범위험성을 평가하여 현재의 지표가 다양한 범죄유형에 타당한 지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표의 사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시행 10년차에 도래할 때까지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점이다. 모든 검사도구는 도구 개발 후 해당 검사도구가 실제로 측정하려는 것을 적합하게 측정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며, 대상자의 유형이나 여러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측정하려는 것을 측정하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한다. 검사도구는 시행 초기에는 검사 대상 집단을 유의하게 선별하고 변별할 수 있다가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검사 문항이 노후되어 차후에는 타당성이 떨어지는 도구로 변화하기도 한다. 따라서 교정재범예측지표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현재의 분류지표가 효과적으로 수형자의 재범위험성과 재사회화 가능성을 변별하는 도구인지 그 타당도를 검증해야 할 것이다.

앞서 제시한 문제점 외에도 경비등급에 맞는 수용자가 수용되지 않고 혼합되어 수용되어 있다는 문제(유병철, 2017), 수용시설이 유사한 문제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문제(김선태, 2016) 등이 남아있으나 본 연구는 분류지표의 타당성에 집중하므로 분류심사 지표와 관련한 문제점만을 제시하였다.

---

8) 천주교인권위원회 진정서 (2021.05.07.) 차별적인 교정재범예측지표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http://www.cathrights.or.kr/bbs/view.html?idxno=22840

제2절 | 이론적 배경 및 해외의 분류지표

1. 이론적 배경

위험성과 위험요인을 범죄자 처우를 중심으로 정리한 이론은 위험성, 욕구, 반응성 모델(이하 RNR 모델)이다(Andrews & Bonta, 1998). 캐나다의 심리학자인 Andrews와 Bonta가 정립한 이 이론은 현재 캐나다, 미국, 영국 등의 교정시설에서 범죄자의 분류 및 처우를 위한 기본 원칙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위험성(risk)은 입소한 수용자의 재범위험성 수준을 지칭하며, 위험요인(risk factors)은 재범과 관련 있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지칭한다. 위험요인은 정적 위험요인(static risk factors)과 동적 위험요인(dynamic risk factors)으로 나뉜다.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는 위험요인들을 사용하여 재범위험 수준을 가늠하는 작업으로 국제적으로 타당한 도구를 이용하면 수용자의 재범위험 수준을 확인하여 특정 등급에 할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할당이 필요한 이유는 해당 수용자의 관리·통제 수준과 처우프로그램의 강도(예: 프로그램의 기간)를 어느 수준으로 집행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대개 재범위험성이 높은 경우부터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나누어 관리·통제나 처우의 수준을 차별적으로 집행하게 된다. 고위험군은 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으므로 가장 강도 높은 관리와 처우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며, 중위험군은 그 다음에, 저위험군은 가장 낮은 수준의 강도로 관리 및 처우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 재범위험성을 할당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도구들은 대개 범죄경력, 나이, 피해자 특성과 같은 정적 위험요인(static risk factors)들로 구성된다(예: Static-99, Hanson & Thornton, 2000; Static-2002, Hanson & Thornton, 2003; Risk Matrix 2000, Thornton, Mann, Webster, Blud, Travers, Friendship, & Erikson, 2003).

정적 위험요인과 달리 동적 위험요인은 재범과 관련이 있지만 변화 가능한 요인으로 주로 심리사회적 요인들로 구성되며 범죄유발요인(criminogenic factors)라고도 불리운다. 범죄경력과 같은 정적 위험요인은 재범과 관련이 있지만 재범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해 심리사회적 요인들은 개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요인으로 범죄를 유발하는 직접적 요인이다. 범죄유발요인은 처우의 관점에서 보면

범죄자의 욕구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범죄유발욕구(criminogenic needs)라고도 불린다. 범죄유발욕구는 대개 처우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는 요인들로 가령, 범죄에 대한 태도, 약물남용, 대인관계, 정신질환정도 등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항목들이기에 교화프로그램의 목표 영역이 되기도 한다. 한편, 많은 처우프로그램들은 범죄유발욕구이외에도 비범죄유발 욕구(noncriminogenic need)를 다루기도 한다. 비범죄유발욕구는 재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처우프로그램의 효과를 진작시키기 위해 다루는 요인들로 고용이나, 건강상태, 자존감 수준 등이 해당된다.

RNR 원칙의 주창자인 Andrews와 Bonta는 욕구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많은 범죄자들, 특히 고위험군 범죄자들은 다양한 니즈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살 집과 할 일이 필요하며, 마약도 끊을 필요가 있다. 어떤 이들은 자존감이 낮고 만성적 두통에 시달리며 치아에 구멍이 나있다. 이것들이 모두 니즈이다. 니즈 원칙은 범죄유발적 욕구와 비범죄유발적 욕구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하게 한다. 범죄유발적 욕구는 범죄자의 위험 수준의 합산체이다.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동적 속성이며 변화가 이뤄진다면 재범가능성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 비범죄유발적 욕구 또한 동적이며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재범 가능성과 연관되어 있지는 않다 (Hollin, 2002).

성범죄자의 범죄유발 욕구를 예로 들자면, 성적 일탈성에 대한 만족, 스트레스에 대한 반사회적 대처, 지루함과 자극 추구경향에서 오는 일탈행위 등을 들 수 있다. 범죄유발 욕구는 분류심사의 단계에서도 평가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처우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보다 상세히 평가할 수 있다.

반응성(Responsivity)은 처우프로그램을 집행하는 치료자 혹은 처우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수용자가 가지고 있는 영향 요소이다. 오늘날 범죄자 처우에서 고려되는 반응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참여자의 변화에 대한 동기로 성공적 처우를 위해서는 개인이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 즉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Beech & Fisher, 2002; Garland & Dougher, 1991; Tierney & McCabe, 2002). 심리치료, 직업훈련, 학과교육 등 많은 교정프로그램들이 개인의 참여 동기가 높을 때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 대개 성공적인 심리치료는 사회학습과 인지이론을 적용한 인지행동적 치료로 시행될 때 높은 효과성을 보장한다. 그러나, 인지행동치료가 불가능한 저기능 범죄자(예: 지능이 낮거나 지적 장애가 있는 수용자, 만성 정신질환 수용자 등)는 그들의 특성에 기반을 둔 별도의 행동치료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범죄자의 언어나 인종적 이슈들을 고려한다거나, 성(gender)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 혹은 범죄자의 장점을 활용해서 처우의 틀을 만드는 것이 반응성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치료자가 대상자와 만들어내는 집단 내에서의 응집력, 치료과정 등도 반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RNR원칙을 적용하여 분류지표를 구성해 놓으면 1) 수용자의 정적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재범위험성을 할당, 구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2) 처우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범죄유발적 욕구들을 분별해내는 것이 가능하며 3) 범죄자의 반응 요인들을 결합하여 적절한 처우프로그램에 할당하는 것이 가능하다. 변화가 불가능한 정적 위험요인과 달리, 범죄유발적 욕구나 범죄자의 반응요인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재범 위험성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요인이 재사회화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하는 영역이며 사례 관리의 주요 영역이기도 하다. 재범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범죄유발적 욕구이나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반응요인들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론에 기반하여 개발된 분류지표는 면담, 조사, 이관된 기록 등 다양한 출처를 통해 파악한 정보를 분류심사관의 자의적 방식이 아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결합하여 분류심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니게 된다.

2. 해외의 분류지표

가. LS/CMI(Level of Service/Case Management Inventory; Andrews, Bonta, Wormith, 2004)

캐나다와 미국의 교정시설에서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 분류심사도구로는 Level of Service Inventory-R(LSI-R, Andrews & Bonta, 2003)가 있다. LSI-R은 분류심사관이 수용자의 구금 수준 및 교도소의 적정 보안수준을 결정하는 분류과정에서 면담방식에

의해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서종한, 조병철, 김희송, 김경일, 2018). LSI-R은 10개의 하위범주로 구성되어 있고 총 54개의 문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각 질문은 0에서 3의 범주형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변수를 보면, 범죄기록, 교육 및 직업, 재정상태, 가족/결혼관계, 거주환경, 여가 및 오락, 동료/친구관계, 음주 및 약물, 정서 및 인성, 태도 및 지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LSI-R의 개발자인 Andrews & Bonta는 범죄자의 관리 및 처우를 보다 포괄적, 연속적 시각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정하여 LS/CMI를 출시하였다. LS/CMI는 LSI-R보다 상세히 위험 및 욕구 요인을 조사하여 사례관리나 처우의 계획, 그리고 서비스 전달의 질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문가 판단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제 4세대 재범위험성평가도구로 분류된다(Andrews 외, 2004).

[표 2-6] LSI-R 구성변수

위험성 및 욕구변수 (위험성 점수)	문항번호	항목	항목점수
1. 범죄기록 (10)	1~3	이전범죄기록	3
	4	현재범행	1
	5	16세 이전의 전과기록	1
	6~10	구속 및 교정사고기록	5
2. 교육 및 직업 (10)	11	현 고용상태	1
	12~14	직장생활에서의 문제점	3
	15~17	학교생활	3
	18~20	업무수행, 동료, 상사관계	3
3. 재정상태 (2)	21~22	재정적인 문제 및 생활보장제도 의존정도	2
4. 가족/결혼관계 (4)	23	현 결혼상태에 대한 불만족	1
	24~25	가족 및 친척들의 지원여부	2
	26	가까운 친척중에 범죄자 유무	1
5. 거주환경 (3)	27	거주환경 만족여부	1
	28	거주의 유동성(잦은 이사)	1
	29	우범지역여부	1
6. 여가 및 오락 (2)	30~31	여가활동 참여 및 시간활용	2
7. 동료/친구관계 (5)	32	사회적 고립정도	1
	33~36	친구 및 지인의 범죄와 관련정도	4
8. 음주 및 약물 (9)	37~38	과거의 약물 및 음주 경력	2
	39~40	현재 약물 및 음주 문제	2
	41~45	상황적 문제점	5

위험성 및 욕구변수 (위험성 점수)	문항번호	항목	항목점수
9. 정서 및 인성 (5)	46~47	과거의 정신과 치료경력	2
	48~49	정신적 문제점 진단	2
	50	심리학적인 평가지표	1
10. 태도 및 지향 (4)	51~52	죄책감 및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	2
	53~54	양형 및 교정제도에 대한 만족정도	2
LSI-R 총점			54

출처: LSI-R을 이용한 성별·범죄유형별 재범유발요인, 이민식·김혜선(2009)

Andrews 외의 개발자들은 범죄자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범죄자의 재범요인이 대체로 "Big 8"요인으로 정리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 중 "Big 4"는 반사회적 인지, 반사회적 동료, 반사회적 행동 경력, 반사회적 성격 유형으로 정리될 수 있으며 이 4가지 요인이 재범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설명한다(Gendreau, Little, & Goggin, 1996, Andrews, Bonta, Wormith, 2004에서 재인용). 나머지 4가지 요인은 가족/결혼, 학교/직장, 여가활동, 약물 남용으로 이 영역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들을 유의해야한다고 주장한다(Andrews 외, 2004). LS/CMI의 일반적 위험/욕구 요인(General Risk/Need Factors)은 바로 이러한 Big 8의 영역들을 평가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LS/CMI는 10개의 세부영역, 54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던 LSI-R를 섹션 1의 일반적 위험/욕구 요인(General Risk/Need Factors)에 통합하여 놓았으며[9], 추가적인 섹션으로 일반적 위험/욕구요인과 구별되는 구체적 위험/욕구 요인, 수용상의 요인, 기타 수용자 이슈, 반응요인 등을 구성하여 총 11개의 영역으로 전개해 놓았다. 아래 섹션 중, 제 1섹션은 대체로 RNR원칙의 첫 번째 원리인 위험성 원칙에 기반하며, 제 2섹션과 제 3섹션은 두 번째 원리인 욕구원칙을, 제 4섹션과 5섹션은 세 번째 원리인 반응성 원칙에 기반했다고 볼 수 있다.

1) 일반적 위험/욕구 요인
2) 구체적 위험/욕구 요인
3) 교도소 경험-수용상의 요인

9) 2개의 항목만 삭제

4) 기타 수용자 이슈(사회적, 건강상, 정신건강상 이슈)
5) 반응 요인으로 특별히 고려해야할 사항들
6) 위험성/욕구 평가 결과 요약 및 조정
7) 위험성/욕구 프로파일
8) 프로그램/배치 결정
9) 사례 관리 계획
10) 수용상의 변화상 기록
11) 종료 보고서

첫 번째 섹션인 일반적 위험/욕구 요인은 범죄유발요인인 Big 8, 즉 반사회적 인지, 반사회적 동료, 반사회적 행동 경력, 반사회적 성격 유형, 가족/결혼, 학교/직장, 여가 활동, 약물 남용의 8가지 영역을 조사하도록 구성해 놓았다. 이 영역은 LSI-R과 같이 항목점수(예/아니오, 1~3 등)로 평가되며 전체 점수를 산출하여 재범위험성/처우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 놓았다. 가령, 이 영역의 합산 점수가 30점~43점일 때 재범위험성/처우 수준이 '매우 높음(very high)'으로 할당이 되며, 20~29점일 때 '높음(high)', 11~19점일 때 '중간(medium)', 5~10점일 때 '낮음', 0~4점일 때 '매우 낮음(very low)'으로 할당이 된다. 섹션 7의 위험/욕구 요인 프로파일에서는 섹션 1의 일반적 위험/욕구요인에 해당하는 Big 8 영역들의 점수 및 전체점수를 표를 이용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놓았으며, 각 영역들의 점수가 5가지 위험 수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두 번째 섹션인 구체적 위험/욕구요인은 Big 8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잠재적으로 재범유발적 요소가 있는 문제들이나 수용자의 구체적 가해 행위 이력을 묻는 질문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가해 행위 이력에서는 성폭력, 폭행, 상해, 스토킹, 방화, 절도 등 다양한 범죄 유형 이력의 존부를 평가하게 하고 있다. 세 번째 섹션인 수용상의 요인은 과거 수용시 경비처우등급이나 현재 수용 유형, 출소의 장벽이 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항목을 구성해 놓았다. 섹션 4의 기타 수용자 이슈에서는 수용자의 사회적, 건강상, 정신건강과 관련한 이슈들의 존부를 평가하는 영역으로 사회적 이슈에서는 가령 금전문제나 노숙문제, 거주의 문제, 이민이나 자녀양육의 문제 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건강상의 이슈에서는 신체장애나 질병을, 정신 건강

부분에서는 우울감, 자살시도 등 정신 건강상의 이슈들의 존부를 평가하도록 항목을 구성해 놓았다. 평가항목의 마지막 섹션인 섹션 5에서는 수용자의 동기, 범죄에 대한 부인/최소화, 문화적, 인종적 이슈, 지능문제, 정신 장애,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장애 등 수용처우시 고려해야할 반응적 요인 11개의 존부를 평가하도록 구성해 놓고 있다. 섹션 6부터 섹션 8은 평가된 요소들을 기반으로 정보를 요약하고 배치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섹션 9부터 섹션 11은 배치 결정을 기반으로 사례관리의 계획을 세우고 수용자의 변화상을 기록하는 전반적 사례관리 과정을 기록화하고 있다.

[표 2-7] LS/CMI 구성 섹션에 대한 설명

섹션	설명	비고
1) 일반적 위험/욕구요인	범죄자의 재범유발요인 Big 8으로 이뤄짐	• LSI-R의 대부분 항목들이 포함 • 위험성 원칙
2) 구체적 위험/욕구요인	재범유발적 잠재성이 있는 개인적 문제(예: 성차별적 태도나 인종차별적 태도)와 범죄자의 구체적 가해 행위 이력을 묻는 질문으로 이뤄짐(예: 성폭행, 신체적 폭행, 기타 반사회적 행동)	욕구 원칙
3) 교도소 경험-수용상의 요인	1)과 2)번 영역 이외에도 수용시설의 분류과 직원이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파악한 요인들로 가령, 범죄자의 수용경력, 출소에 대한 잠재적 장애(예: 범죄자의 범죄행위가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	욕구 원칙
4) 기타 수용자 이슈	분류와 사례관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부가적 정보들	반응성 원칙
5) 반응 요인으로 특별히 고려해야할 사항들	수용자에게 가장 적절한 관리 및 처우 방식(예: 동기수준, 언어, 인종이슈, 성별이슈 등)	반응성 원칙
6) 위험/욕구 요인 평가 결과 요약 및 조정	위험성/욕구 점수를 포함, 조정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재심사시 특히 중요
7) 위험/욕구 요인 프로파일	위험성/욕구 점수에 대한 그래픽적 표현	
8) 프로그램/배치 결정	프로그램 배치, 출소 관련한 권고사항 등	
9) 사례 관리 계획	범죄유발적 욕구와 비범죄유발적 욕구에 대한 요약, 관리시 특별히 고려해야할 반응 요인 등	
10) 수용상의 변화상 기록	사례 관리 전략을 이행한 결과, 수용자의 상황에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측정	
11) 종료 보고서	범죄자가 수용 혹은 지역사회 감독으로 돌아갈지에 유용한 정보 요약	

각 섹션 중, 평가항목들이 배치된 섹션들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8] LS/CMI 평가항목 세부사항

섹션 구분	설명
1. 일반적 위험/욕구 요인	1. 범죄 경력 1)범죄의 횟수(전과경력 및 수용시설 내 징벌, 집행유예 실효) 2)범죄의 조기 시작 3)범행의 심각성 세 가지로 구성
	2. 가족/결혼관계: 가족과 결혼 관계는 각각의 상황에 대한 만족수준에 대한 수형자의 평가 및 범죄이력이 있는 가족여부 등을 질문
	3. 고용 및 학력: 1)직업 유무 2)직업의 안정성 3)중등 및 고등교육 이수 4)퇴학/정학 등의 이력 5)직업과 학교생활에서 얼마나 친사회적 활동을 했는지 등을 평가
	4. 친구관계: 1)사회적 고립 2)친구나 잘 아는 사람이 범죄경력이 있거나 범죄활동에 연루되어있는지 여부 등을 평가
	5. 알코올/마약 문제: 1)알코올/마약문제 여부 2)잦은 복용으로 가족이나 직장,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병원이나 상담소를 찾거나 입원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평가
	6. 여가시간: 입소전 여가시간에 고정적인 취미생활이나 운동, 봉사활동 등을 하였는지 여부(예: 종교활동, 운동, 동호회 등) 등을 평가
	7. 범죄에 대한 태도: 1)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태도 2)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인식 3)자신의 형량에 대한 인식 4)교도관이나 치료에 대한 협조수준 등을 평가
	8. 반사회적 양상: 적대감, 분노, 공격성 과다, 공격행동 가능성, 충동조절이나 자기관리의 문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무관심하거나,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성향, 겉으로 매력적이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과 규칙을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성향, 비합리적인 성향, 기타 반사회적 패턴을 평가
2. 구체적 위험/욕구 요인	1)준수(compliance) 문제, 2)사이코패스 진단, 3)기타 성격장애 진단, 4) 제 3자로부터 위협, 5)문제해결/자기관리 기술 부족, 6)분노관리능력 부족, 7)협박적/통제적 성향 여부, 8)부적절한 성활동, 9)사회적 스킬 부족, 10)연령대에 맞지 않는 친구, 11)인종주의자/성차별자 행동 12)저성취 등을 평가
	1)성범죄의 경우 특이점들(예: 피해자 연령이나 성별, 친족 등), 2)일반폭력범죄의 특이점들, 3)기타 다른 반사회적 행동양식들을 평가
3. 기타 수용자 문제	1)금전문제, 2)거주문제(노숙 등), 3)건강문제, 4)학습문제, 5)우울증, 6)자살시도, 7)낮은 자존감, 8)정신질환 진단, 9)가정폭력 피해, 10)성폭력 피해, 11)폭력피해, 12)왕따 피해, 13)신체장애, 14)이민문제, 15)자녀양육문제 등을 평가
4. 반응요인 특별고려사항	1)낮은 동기, 2)부인/최소화, 3)대인관계 불안, 4)여성/젠더관련 이슈, 5)문화적이슈(다문화), 6)인종이슈, 7)낮은 지능, 8)정신질환, 9)의사소통장애, 10)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시 등을 평가
5. 수용요인 (등급조정)	1)과거수용경력, 2)현재수용상황, 3)출소/가석방(사회복귀)에의 장벽 등을 평가

LS/CMI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살펴보면, 먼저 신뢰도에서 섹션 1에 해당하는 일반적 위험/욕구 요인들의 항목들은 전체적으로 LSI-R보다 더 높은 내적 일관도를 보인다. 내적 일관도 지수인 Cronbach's alpha를 보면 전체 점수의 알파는 대체로 .80의 높은 수치로 보고되고 있다(Andrews & Bonta, 1995; Girard, 1999, Rowe, 1999). 기타 6개월 미만의 간격을 두고 실시한 평가자간 신뢰도에서도 상관관계 .88의 높은 지수를 보여주었다(Andrews 외, 2004).

LS/CMI의 타당도는 척도의 재범예측력으로 보고되고 있다. LS/CMI의 섹션 1점수 및 세부영역들의 점수와 출소(보호관찰 종료) 후 재범율의 상관관계를 추적한 연구를 보면[10], 섹션 1의 전체 점수는 .39정도의 상관지수를, 각 영역은 .11~.40사이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상관지수를 보여주고 있다(Andrews 외, 2004). 섹션 2에서도 전체점수는 .22의 상관지수를 보이고 있으며, 최조 재범위험 수준과는 .37, 최종 재범위험 수준과는 .38의 상관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범죄자의 강점과는 -.23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상관지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LS/CMI상의 강점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재범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섹션 3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섹션 4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거나 매우 미미한 수준의 상관지수를 나타내었다. 섹션 5역시 .10이하의 미미한 상관지수를 보여주었다(Girard, 1999; Girard & Wormith, 2004).

나. HCR-20(Historical-Clinical-Risk Management-20;Douglas, Hart, Webster, Belfrage, 2013)

범죄자의 분류지표로 해외에서 활용하는 또 다른 도구로 HCR-20이 있다. HCR-20 위험성 평가는 국외에서 가석방심사, 교정내 처우분류, 치료감호소, 보호관찰, 우범자 관리, 사법기관의 폭력위험성평가 등에서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도구이다(서종한 등, 2018). HCR-20은 보험계리적 도구는 아니며 구조화된 전문가 판단 모델을 바탕으로 제작된 제 4세대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라고 할 수 있다. 보험계리적 도구는 보험 계리적 기법을 사용한 도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때 보험계리적 기법이란 쉽게 말해 납부

10) 연구대상은 캐나다 교도소에 수용되었거나 보호관찰을 받은 적이 있는 성인 남성이다.

해야할 보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보험 가입자의 알려진 요인인 사고 경력이나 질병 경력, 나이, 성별 등을 토대로 위험 등급 등을 산출하여 보험 금액을 정하는 방법이다(윤정숙 & Knight, 2013).

'보험 계리적' 기법을 따르는 재범 위험성 평가 역시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산출하기 위하여 실증적 연구를 통해 재범과 관련이 있다고 증명된 요인인 나이, 전과 경력, 피해자 성별 및 유형 등을 고려한다(Harris & Hanson, 2010, 윤정숙 & Knight, 2013에서 재인용). 보통 연구자들은 재범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여러 요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예: 종단 연구, 상관 연구)하여 특정 항목이 재범과 연관이 있음을 입증한다. 특정 요인이 재범과 연관이 있다는 결과물들이 다양한 연구자들에게서 반복적으로 입증될 때는 연구자 간 합의에 이르게 된다. 이를 구조적 방식이라 하는데 다양한 연구를 통해 연구자들 간에 최소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미이다(Eher, Matthes, Schilling, Haubner-MacLean, & Rettenberger, 2011, 윤정숙 & Knight, 2013에서 재인용). 이러한 구조적 방식은 평가자의 면담이나 관찰에 의존하는 1, 2세대 도구보다 위험성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더욱 정확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Hanson & Morton-Bourgon, 2009, 윤정숙 & Knight, 2013), 앞 세대의 도구들과 구별하여 제 3세대 도구라고 불린다.

보험계리적 도구가 아닌 전문가의 구조적 판단에 기반한 도구는 가장 최근에 등장한 도구들로 제 4세대 도구라고 불린다. 이들 도구는 보험계리적 기법이 아니라 평가자가 각종 기록이나 관찰, 면담, 심리검사 등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통해 최소한의 항목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며, 따라서 보험계리적 도구보다 평가자의 재량이 부여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1~2세대의 도구가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했던 것과 달리 4세대 도구는 비자의적, 구조적 판단을 하도록 질문을 구성해 놓았기 때문에 평가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을 축소해 놓은 것이 차이라 할 수 있다. 구조적 판단을 정확하게 해내기 위해서는 평가자가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질문이나 면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평가자의 전문적 역량이 매우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표 2-9] HCR-20 위험요인과 세부 하위항목

이력 척도 (문제이력)	하위항목
H1. 폭력	a. 아동기(12세 이하) b. 청소년기(13-17세) c. 성인기(18세 이상)
H2. 기타 반사회적 행동	a. 아동기(12세 이하) b. 청소년기(13-17세) c. 성인기(18세 이상)
H3. 대인관계	a. 이성적 b. 비이성적
H4. 고용	-
H5. 물질사용	-
H6. 주요 정신 장애	a. 정신병적 장애 b. 주요 기분장애 c. 기타 주요 정신장애
H7. 성격 장애	a. 반사회적, 사이코패스, 비사회적 b. 기타
H8. 외상 경험	a. 피해경험/외상 b. 기타
H9. 폭력적 태도	-
H10. 치료 혹은 관리감독 반응	-
임상 척도 (최근문제)	**하위항목**
C1. 통찰력	a. 정신장애 b. 폭력 위험성 c. 치료 필요성
C2. 폭력 사고 혹은 의도	-
C3. 주요 정신장애 증상	a. 정신병적 장애 b. 주요 기분장애 c. 기타 주요 정신장애
C4. 불안정성	a. 정서적 기능 b. 행동적 기능 c. 인지적 기능
C5. 치료 혹은 관리감독 반응	a. 순응도 b. 반응도
위험 관리 척도 (미래문제)	**하위항목**
R1. 전문서비스와 계획	-
R2. 거주 환경	-
R3. 개인적 지지	-
R4. 치료 혹은 관리감독 반응	a. 순응도 b. 반응도
R5. 스트레스 혹은 대처	-

출처: 전문가판단모델(SPJ) 기반 폭력위험성평가(HCR-20) 버전3 타당화 연구, 서종한 등(2018)

HCR-20은 대인폭력(interpersonal violence)을 평가하는 도구로 개발되어 있다. 저자들은 폭력을 신체적(물리적) 혹은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HCR-20은 범죄자의 이력, 임상적 문제, 위험관리 영역 등 3개 영역의 20개 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이력(H)영역은 범죄자의 폭력 및 기타 반사회적 행동의 이력, 대인관계 이력, 주요 정신장애 혹은 성격 장애 이력 등 전반적인 문제 전력을 평가하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상(C)영역은 주요 정신장애 증상이나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기능정도, 치료 혹은 관리 감독에 대한 반응정도를 측정하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험관리(R)영역은 전문적 서비스와 계획, 거주환경, 개인적지지, 치료 혹은 관리감독 반응, 스트레스 혹은 대처 등 미래문제를 측정하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HCR-20은 7단계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며, 1단계 관련정보 탐색, 2단계 위험요인 존재유무 코딩, 3단계 위험요인의 관련성 코딩, 4단계 위험성 사례개념화, 5단계 위험성 시나리오구성, 6단계 위험성 시나리오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7단계 최종의견이다(서종한 등, 2018).

HCR-20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조사한 연구를 보면, Belfrage와 Douglas(2012)의 연구에서 평가자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는 영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70 이상의 양호 혹은 우수한 수준을 보였으며 전체 점수는 .9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동시타당도(concurrent validity)를 조사한 연구를 보면, HCR-20는 PCL-R과 .60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PCL-R의 요인 1(정서/대인관계)영역은 HCR-20과 상관관계가 없고, 요인 2(충동성/반사회성)영역이 .60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PCL-R의 각 요인을 두 개의 요인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4 단면(facet)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HCR-20는 단면 1(대인관계)과의 상관지수는 약하거나 관련이 없으며, 단면 2(정서)는 단면 1보다는 좀 더 상관지수가 높고(.16 -.39), 단면 3은 보다 높은 상관지수(.47 -.66), 단면 4는 가장 높은 상관지수를 보인다(.62 이상)(Blanchard & Douglas, 2011; Smith & Edens, 2013, Douglas 외(2013)에서 재인용).

예측타당도(predictive validity)에서는 재범률을 추적 조사하여 ROC분석을 실시했

을 때, HCR-20의 재범예측력이 AUC 기준 1년 추적시 .77, 2년 추적시 .75, 3년 추적시 .67로 보고되어 대체로 양호하게 재범을 예측해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de Vries Robbé & de Vogel(2010), Douglas 외(2013)에서 재인용). Doyle, Shaw, Coid(2013)가 수행한 연구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연령과 성별을 통제한 후에도 HCR-20의 전체점수가 높을수록 출소자의 6개월, 12개월 후 재범률이 높아짐을 보고하고 있다(Douglas 외(2013)에서 재인용).

HCR-20은 특히 평가자가 폭력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례를 개념화하여 향후 가능한 위험 시나리오를 탐색하는 등(서종한 등, 2018) 위험관리(risk management)에 적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다. Pattern Risk Assessment & BOP's Needs Assessment(Federal Bureau of Prisons[11], 2021)

미국은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자의 위험성과 욕구에 기반한 분류 및 처우프로그램을 집행할 것을 내용으로 한 First Step Act에 서명하면서 연방교도소 내의 모든 수용자에게 위험성과 욕구를 상세히 평가하여 처우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First Step Act의 기본 방침에 따라 새로운 위험성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PATTERN (the Prisoner Assessment Tool Targeting Estimated Risk and Needs) 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수용자가 수용기간 동안 변화하는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여 정기적 재평가시 그들의 위험 점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남성 수용자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PATTERN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다.

---

11) 미국 연방교도소(BOP) 홈페이지 참조, https://www.bop.gov/inmates/fsa/pattern.jsp. 검색일 2021.10.1일자

[표 2-10] PATTERN 위험성 점수 산출

위험성항목	항목	일반 점수	폭력성 점수
1. 현재 나이	60세 이상	0	0
	51~60	7	4
	41~50	14	8
	30~40	21	12
	26~29	28	16
	26세 미만	35	20
2. 성범죄 경력(Adam Walsh 아동보호법[1]전과 포함)	없음	0	0
	있음	1	0
3. (본 범죄의)폭력범죄 여부	해당	0	0
	비해당	5	5
4. 범죄전력점수	0~1점	0	0
	2~3점	8	4
	4~6점	16	8
	7~9점	24	12
	10~12점	32	16
	12점 이상	40	20
5. 도주전력	없음	0	0
	10년 이내 경미한 정도	2	1
	5~10년 이내 경미한 정도	4	2
	5년 이내 경미한 정도 혹은 전체 기간 중 심각한 정도	6	3
6. 폭력전력	없음	0	0
	10년 이내 경미한 정도	1	1
	15년 이내 심각한 정도	2	2
	5~10년 이내 경미한 정도	3	3
	10~15년 이내 심각한 정도	4	4
	5년 이내 경미한 정도	5	5
	5~10년 이내 심각한 정도	6	6
	5년 이내 심각한 정도	7	7
7. 학력	학위과정 미등록	0	0
	검정고시 과정 등록	-2	-1
	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 졸업	-4	-2
8. 약물 프로그램(Drug Abuse Program) 수료	DAP 미수료	0	0
	NRDAP 수료[2]	-3	-1
	RDAP 수료[3]	-6	-2
	해당없음	-9	-3
9. 교정내 위반사항(120개월 이내)	0건	0	0
	1건	1	1
	2건	2	2
	3건 이상	3	3
10. 교정내 중범죄 위반사항 (120개월 이내)	0건	0	0
	1건	2	2
	2건	4	4
	3건 이상	6	6

위험성항목	항목	일반 점수	폭력성 점수
11. 마지막 사건 보고후 경과된 시간	12개월 이상 혹은 없음	0	0
	7~12개월 이내	2	1
	3~6개월 이내	4	2
	3개월 이내	6	3
12. 마지막 중죄 사건보고 이후 경과된 시간	12개월 이상 혹은 없음	0	0
	7~12개월 이내	1	1
	3~6개월 이내	2	2
	3개월 이내	3	3
13. 피해보상 거부 의사	아니다	0	0
	그렇다	1	1
14. 프로그램 수료	0개	0	0
	1개	−2	−1
	2~3개	−4	−2
	4~9개	−6	−3
	10개 이상	−8	−4
15. 직업훈련과정 이수	없음	0	0
	1개	−1	−1
	2개 이상	−2	−2

주: 1) Adam Walsh 아동 보호 및 안전 연방법(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2006)에 의함
2) Non-Residential Drug Abuse Program
3) Residential Drug Abuse Program
출처: 미국 연방교도소 홈페이지(https://www.bop.gov/inmates/fsa/docs/male_pattern_form.pdf)

한편, First Step Act에 기반한 욕구 평가는 12개의 욕구 영역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대개 욕구 평가는 심리척도나 교육 척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처우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부서여야 하기 때문에 평가담당부서가 분류심사과가 아닌 심리서비스과에서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 범죄자의 과거력에 대한 정보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경우는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판결전 조사서를 이용하여 평가하며, 기타 심리적 혹은 교육적 평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는데, 사용되는 도구들은 다음과 같다.

[표 2-11] First Step Act 욕구(Needs) 평가

욕구 영역	설명	척도	평가담당 부서	개입목표
분노/적대감	친사회적 생활에 벗어난 규칙을 위반하는 반사회적 성격이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에 기여	Brief anger aggression questionnaire	심리 서비스과	• 문제해결기술 함양 • 분노조절관리
반사회적 동료	범죄행위에 관련된 동료와 위험한 상호작용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 필요	Measures of criminal Attitudes and Associates	심리 서비스과	• 반사회적 동료와의 관계 약화와 친사회적 자원 접촉 강화
인지	반사회적 인지는 범죄를 지지하는 체계로 이어져 분노와 반항 수반	Measures of criminal Attitudes and Associates	심리 서비스과	• 반사회적 인지 완화 및 위험한 사고와 감정 인식 교육
난독증	범죄행위의 위험요소	BOP 자체 2단계 심사과정	교육과	• 읽고 쓰기 능력 향상으로 희망 촉진
교육	낮은 수준의 학교생활 관여와 만족도는 범죄행위 참여의 위험요소	Test of Adult Basic Education, Comprehensive Adult Student Assessment System	교육과	• 학습능력향상 • 성과보상 및 인센티브 강화
가정/양육	가정환경과 범죄생활양식의 유사성으로 가족 구성원의 체포상황은 범죄행위 및 부정적 발달결과의 주위험요인 가능성	Fanily Assessment Device	심리 서비스과	• 가족간 갈등감소 및 긍정적 관계 구축유지
재정/빈곤	빈곤과 범죄 사이의 직접적 상관성	스크리닝 질문	일선 관리자	• 재정독립 기회제공
의료지원	신체적 건강과 빈곤의 전반적인 성공과 밀접한 관계로 재범위험성 지표 가능성	영양섭취력 신체검사	건강 서비스과	• 신체건강 문제 인식 및 예방 • 건강유지 동기부여
정신건강	심각한 정신질환은 친사회적 관계와 삶의 안정을 방해하여 반사회적 성격으로 기울기 쉽고 간접적으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	Psychology Service Inmate Questionnaire	심리 서비스과	• 정신건강 문제 인식 • 재발위험 감소 전략 수립
취미/레저/운동	친사회적 활동에 대한 낮은 참여와 만족도의 범죄유발 가능성	만성적 치료 관리	건강 서비스과	• 생산적이고 친사회적인 자유시간 사용법 건강관리 참여 촉진
물질남용	불법물질 사용과 범죄의 상관관계	약물교육	일선 관리자	• 물질사용 감소 • 친사회적 대안 강화
트라우마	부정적인 아동기 경험과 사회적/신체적 건강과의 부정적 상관관계	Adverse Childhood Experience Scale	심리 서비스과	• 안전하고 협력적인 의료제공으로 개인의 강점과 회복력 구축
작업	낮은 수준의 업무 참여와 만족도는 범죄행위 참여의 위험요소	스크리닝 질문	교육과	• 구직 및 직업기술훈련

출처: 미국 연방교도소 홈페이지(https://www.bop.gov/inmates/fsa/docs/male_pattern_form.pdf)

분류지표의 타당도 검증

이태헌·성유리

제3장

분류지표의 타당도 검증

제1절 | 통계적 검증을 통한 분류지표의 타당도 확인

1. 조사대상자 설정 및 데이터 구축

현재의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와 교정재범예측지표가 수형자의 위험(재범) 정도를 판정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지표로 심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수형자 중 출소한 뒤 재범하여 재수형된 수형자의 특징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출소 후 재범자와 비재범자를 대상으로 분류지표의 타당도를 확인할 예정이다.

가. 1차 추출

타당도 검증을 위해 교정재범예측지표 신입점수가 있고 2012년부터 2021년 4월말 사이에 형을 확정하여 수형한 후 2021년 7월말까지 출소한 내국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본은 수형하여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와 교정재범예측지표 신입심사 점수를 모두 가지고 있고 형기종료나 가석방으로 출소한 자이다. 출소자가 추후 재입소 한 경우 재입소 자료를 포함하여 자료를 추출하였다. 외국인과 소년범은 일반수용소에 수용하지 않으므로 본 표본 집단에서 제외하였다.

구체적인 추출변수는 〈표 3-1〉에 제시하였다. 추출사항은 크게 ① 출소자의 기본사항, ②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신입심사와 ③ 경비처우급 재심사 지표, ④ 교정재범예측지표 신입심사, ⑤ 교정재범예측지표 재심사 지표, ⑥ 재입소 기본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추출변수는 다음과 같다. ① 출소자의 기본사항에 포함된

‘수용횟수’는 본 조사 데이터에서 2012년에서 2021년 사이에 처음 수형되었을 때(이하 ‘본범’)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횟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범이 첫 범죄인 수형자의 수용횟수는 0회이다. 수형된 이후 여죄가 밝혀져 추가 형이 발생한 경우에도 현재 수형에 이르게 한 본범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수용된 횟수만을 산정하며, 여죄를 별도의 수용 횟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최초기결입소일’은 형 진행 중 본범으로 인해 입소하게 된 날짜이며, ‘형확정일’은 본범의 형이 확정된 날짜이다. 여죄가 있는 경우에도 여죄 이전에 재판에 회부된 본범의 형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출소일’은 형기종료나 가석방으로 출소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여죄가 있는 경우에는 별건출소일을 출소일로 코딩한다. ‘대표죄명’은 수형자가 형을 확정하게 된 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하며, 여러 범죄가 경합되어 있는 수형자의 범죄유형 구분을 위해 죄명을 대표죄명으로 재코딩하였다. 대표죄명 산출은 서울교정청의 협조 하에 진행하였다. 분류지표 신입심사는 형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되므로(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장 제4조) 대부분의 수형자의 신입심사 점수는 본범을 기준으로 판정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만약 여죄가 있으며 여죄가 본범의 대표죄명보다 더 중한 경우에도 본범의 형을 대표죄명으로 지정한다. 총 형기(개월)’는 경합범과 여죄 등으로 인한 모든 형기의 합을 의미하며 개월로 산출하였다.

③ 경비처우급 재심사는 수형자의 소득점수에 변화가 나타났을 때 실시되므로 일부 수형자만 그 점수를 가지고 있다. 소득점수가 상향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경비처우급 재심사 점수를 가지고 있는 수형자의 대부분은 재심사 시 지표 점수가 상향조정된다. 따라서 본 점수의 해석에 주의하여야한다. ⑤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재심사 지표값도 모든 수형자가 그 값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교정재범예측지표 재심사지표는 2016년 7월 6일(분류처우 업무지침 개정에 따른 REPI 재심사지표 시행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전체 형기의 2/3을 살았거나, 이미 출소한자는 재심사지표 점수가 부재하다.

재입소 기본사항으로 재입소 기결입소일, 재입소 형확정일, 재입소 대표죄명과 재입소 총 형기(개월)를 추출한다. 출소한 뒤 2021년 7월 말일까지 재범하여 재입소한 기록이 없는 수형자는 해당 변수 값이 부재하다.

[표 3-1] 타당도 검증을 위한 추출 변수

추출사항	세부 추출 변인
① 출소자 기본사항	출소자의 개인식별번호, 수용기관, 수용번호, 수용횟수, 출생년도, 형확정시 나이, 성별, 최초기결입소일, 형확정일, 출소일, 대표죄명, 출소사요, 대표죄명, 총 형기
②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사항	경비처우급 총 점수,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각 항목 점수
③ 경비처우급 재심사 지표 사항	형기 5/6 시점 정기재심사 시 경비처우급 총 점수, 재심사시 재심사 지표 각 항목점수
④ 교정재범예측지표 신입심사	교정재범예측지표(REPI 등급) 총 점수, 교정재범예측지표 신입심사 각 항목점수
⑤ 교정재범예측지표 재심사	형기 2/3 시점 교정재범예측지표 재심사 총 점수 및 각 지표항목 점수
⑥ 재입소 일반사항[12]	재입소 기결입소일, 재입소 형확정일, 재입소 대표죄명, 재입소 총 형기(개월)

나. 2차 추출

법무부의 도움을 받아 1차 표본 추출기준에 부합하는 사례를 추출하였다. 내용에 오류가 있는 수형자 정보를 삭제한 전체 모집단의 수는 96,077명이었다. 이 후 출소일 기준으로 특정년도 출소자가 과대표집되지 않도록 표본을 2차 추출하였다. 모든 2차 추출은 재입소 비율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였으며, 2차 추출은 표 7에 제시한 분류항목의 각 최종 산출비율을 기준으로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추출한 표본은 9,929명의 수형자 정보를 포함하였다.

[표 3-2] 타당도 검증을 위한 2차 추출 기준

분류	대상	근거 비율(%) (추출 근거: 2020년 교정통계연보)	최종 산출 비율(%)	비고
석방	형기종료자	38.1/(38.1+15.3)=71.3	72.6	
	가석방자	15.3/(38.1+15.3)=28.7	27.4	
성별	남성	93.3	91.0	
	여성	6.7	9.0	

12) 입소일과 형 확정일 사이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집행할 형기가 짧아 형확정일로 부터 집행할 형기가 6개월미만인 자는 분류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조). 따라서 재입소한 자 중 일부는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점수와 교정재범예측지표 점수가 부재하다.

분류	대상	근거 비율(%) (추출 근거: 2020년 교정통계연보)	최종 산출 비율(%)	비고
연령	20대 미만+20대 이상	0.8+15.6=16.4	17.6	
	30세 이상	18.7	21.6	
	40세 이상	24.3	27.3	
	50세 이상	25.7	24.3	
	60세 이상	14.9	9.3	
입소경력	무경력자	55.8	46.6	
	1회	18.0	21.0	
	2회	8.1	9.8	
	3회	4.8	6.0	
	4회 이상	13.3	16.6	
범죄유형	절도	9.4	13.6	
	폭력행위 등 처벌법	6.7	6.6	
	사기·횡령	24	27.1	
	성폭력	16.3	20.7	
	마약류	4.6	8.1	
	과실범	7.1	0.3	
	강도	5.2	4.9	
	살인	9.1	3.0	
	기타	17.7	15.8	
형기	1년 미만	(0.2(금고)+12.7)/(100-6.1)=13.7	18.1	6.1은 20년 이상 (2.1)+무기 (3.8)+사형 (0.2)의 합임
	1년 이상	40.4/(100-6.1)=43.0	48.5	
	3년 이상	18.5/(100-6.1)=19.7	21.6	
	5년 이상	14.1/(100-6.1)=15.0	11.7	
	10년 이상	8/(100-6.1)=8.5	0.1	

범죄유형 중 폭력행위 등 처벌법에는 폭력행위, 폭행관련, 손괴관련, 협박관련, 체포/감금, 약취/유인, 상해관련, 공갈관련, 아동학대관련 죄명이 포함되며, 사기·횡령에는 사기, 횡령, 위조, 배임, 장물, 경제범죄, 공무원범죄(뇌물수수 등)가 포함된다. 마약류에는 마약범죄와 환각물질흡입이 포함되며, 살인은 살인관련범죄와 방화관련범죄가 포함된다. 기타 범죄유형에는 교통범죄, 성매매알선, 병역관련범죄, 식품위생범죄, 공안범죄(간첩 등), 공안관련범죄(근로기준법위반) 등이 포함된다.

2. 분석 대상자

분석 대상은 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였던 9,929명이며, 이 중 재범자는 1,592명(16.0%)이다.

[표 3-3] 범죄자 재범여부

(빈도단위: 명, 비율단위: %)

	재범 없음	재범 있음	총
빈도(비율)	8,337(84.0)	1,592(16.0)	9,929(100.0)

3. 경비처우 분류심사의 재범여부 예측력 확인

가. 경비처우 최종 등급의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경비처우 '최종 등급'은 신입심사와 재심사 등급 중 가장 최근에 부여된 등급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한 변수이다. 즉, 재심사 등급 정보가 있는 범죄자의 경우 재심사 등급이 최종 등급이 되며, 재심사 등급 정보가 없는 경우 신입심사 등급이 최종 등급이 된다.[13)]

[표 3-4] 경비처우 최종 등급의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준거 집단: 경비처우 S1급)

변수	회귀 계수의 의미	회귀계수	승산비	z	p
(절편)	S1급의 재범 위험성 평가	-3.343	0.035	-15.768	〈 0.001
S2급	S1급과 S2급의 위험성 비교	0.327	1.387	1.397	= 0.162
S3급	S1급과 S3급의 위험성 비교	1.930	6.888	9.006	〈 0.001
S4급	S1급과 S4급의 위험성 비교	3.104	22.293	13.237	〈 0.001

N = 9,929, AUC = 0.654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경비처우 최종등급의 재범 예측력을 분석하였다. 준거 집단을 S1급으로 설정하고 예측 분석을 실시한 결과, S1급과 S2급 간 재범위험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S1급과 S4급, S1급과 S3급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3-4〉 참고).

13) 신입 심사 등급과 재심사 등급을 각각 분석한 결과도 실시하였고 본 섹션 이후에 제시되었다.

표에서 절편 계수는 준거집단인 S1급의 재범위험성을 보여주는 지수이며 exp(-3.343)=0.035는 S1급의 재범 승산[14]으로 이 값은 재범 확률이 재범하지 않을 확률에 비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각 비교 집단의 계수는 준거 집단 대비 비교 집단의 승산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S3급의 승산비(exp(1.930)=6.888)는 S3급의 재범 승산과 S1급의 재범 승산 간 비율이다.[15] 즉 S3급의 재범 승산이 S1급의 재범 승산의 6.888배라는 것을 가리킨다.

〈그림 3-1〉은 로지스틱 모형의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이다. 이는 분류 모형의 예측지표인 1-특이도(specificity)와 민감도(sensitivity)의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으로 모형의 예측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즉, ROC 곡선 아래 면적을 AUC(area under the curve)라 하는데, AUC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예측 성능이 높은 모형으로 간주된다(Swets, 1988). 예측력이 전혀 없을 때 AUC=0.5의 값을 가지므로, 본 분석 결과인 0.654의 값은 예측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0.9 이상의 값을 가질 때 높은 수준의 예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이 결과는 중간 혹은 낮은 정도의 예측력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1] 경비처우 최종 등급의 재범여부 예측력 ROC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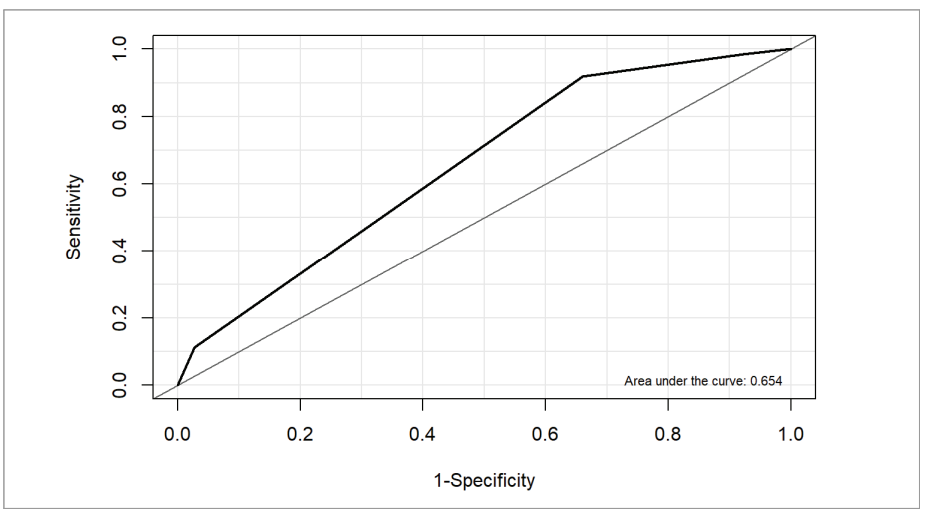

14) $승산 = \frac{재범확률}{1-재범확률} = \frac{재범확률}{재범하지않을확률}$

15) $승산비 = \frac{S3급의\ 재범확률/(1-재범확률)}{S1급의\ 재범확률/(1-재범확률)}$

나. 경비처우 신입심사 등급의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표 3-5〉는 경비처우 신입심사 등급을 사용하여 재범여부를 예측한 것이다. 신입심사에서 S1급으로 평가된 범죄자는 없었기 때문에 준거 집단으로 S2급을 사용하였다. 회귀 계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등급이 높을수록 재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3-5] 경비처우 신입심사 등급의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준거 집단: 경비처우 S2급)

변수	회귀 계수의 의미	회귀계수	승산비	z	p
(절편)	S2급의 재범 위험성 평가	-3.191	0.041	-28.674	〈 0.001
S3급	S2급과 S3급의 위험성 비교	1.670	5.313	14.476	〈 0.001
S4급	S2급과 S4급의 위험성 비교	2.888	17.956	19.657	〈 0.001

N = 9,929, AUC = 0.626

[그림 3-2] 경비처우 신입심사 등급의 재범여부 예측력 ROC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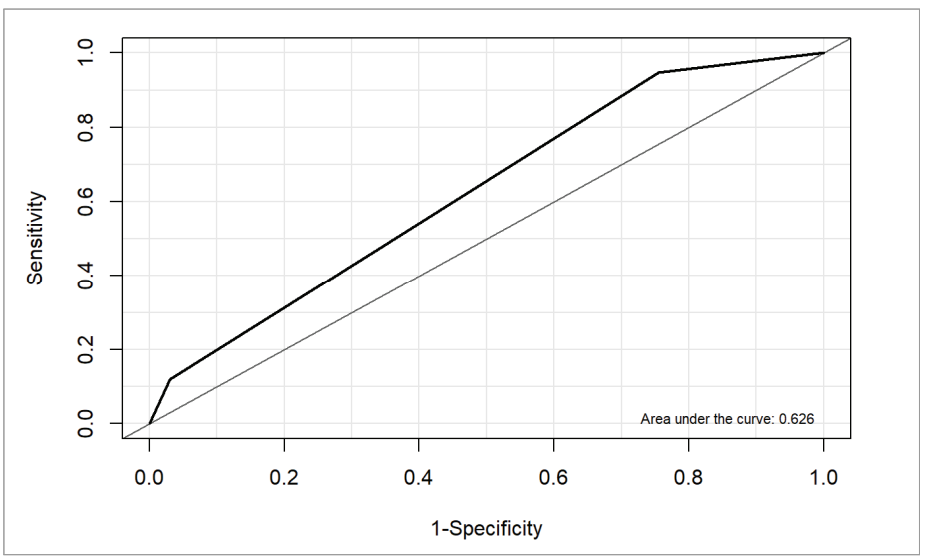

다. 경비처우 재심사 등급의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표 3-6〉과 〈그림 3-3〉은 경비처우 재심사 등급(n=1,173명)을 사용하여 재범여부를 예측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S1급과 S2, S1급과 S3급 간 재범 가능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S1급과 S4급 간 재범 위험성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재심사 S4급의 자료 수가 매우 적은(n = 10)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표 3-6] 경비처우 재심사 등급의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준거 집단: 경비처우 S1급)

변수	회귀 계수의 의미	회귀계수	승산비	z	p
(절편)	S1급의 재범 위험성 평가	-3.343	0.035	-15.757	〈 0.001
S2급	S1급과 S2급의 위험성 비교	0.725	2.065	2.492	〈 0.05
S3급	S1급과 S3급의 위험성 비교	0.992	2.696	2.325	〈 0.05
S4급	S1급과 S4급의 위험성 비교	-13.223	0.000	-0.017	= 0.986

N = 1,173, AUC = 0.605

[그림 3-3] 경비처우 재심사 등급의 재범여부 예측력 ROC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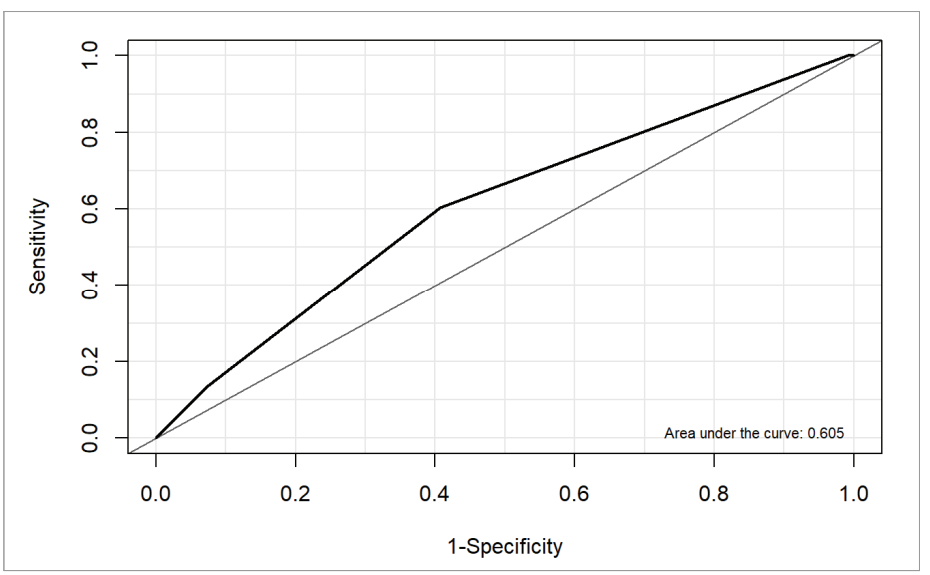

[표 3-7] 경비처우 재심사 등급의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준거 집단: 경비처우 S1급)

변수	회귀계수 의미	회귀계수	승산비	z	p
(절편)	S1급의 재범 위험성 평가	-3.343	0.035	-15.757	〈 0.001
S2급	S1급과 S2급의 위험성 비교	0.725	2.065	2.492	〈 0.05
S3급	S1급과 S3급의 위험성 비교	0.992	2.696	2.325	〈 0.05

N = 1,163, AUC = 0.602
참고: 〈표 3-7〉은 S4급의 자료(n=10)를 제외한 후 분석한 결과이다.

라. 경비처우 신입심사 총 점수의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본 분석에서는 경비처우 신입심사 총점으로 재범 여부를 예측하였다. 신입심사 총점은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이 되도록 표준화하여 분석에 투입하였으며 그 결과가 〈표 3-8〉과 〈그림 3-4〉에 제시되어있다. 회귀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승산비 2.247는 총점이 1 표준 편차 증가할 때[16] 재범 위험성(승산)이 2.24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경비처우 신입심사 총 점수의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승산비	z	p
(절편)		-1.870	0.154	-58.341	〈 0.001
총점	9.070	0.810	2.247	29.229	〈 0.001

N = 9,929, AUC = 0.740

16) 이는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로 표준화한 점수, 즉 표준 점수가 1단위 증가한다는 것으로, 원점수가 표준 편차만큼 값이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총점의 표준편차는 9.070이므로(〈표 3-8〉의 두 번째 열 참조) 총점이 1 표준 편차 증가한다는 것은 1 * 9.070 = 9.070만큼 증가할 때, 승산비가 2.247이라는 의미이다. 이후에 분석에서 제시된 표준화된 변수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4] 경비처우 신입심사 총 점수의 재범여부 예측력 ROC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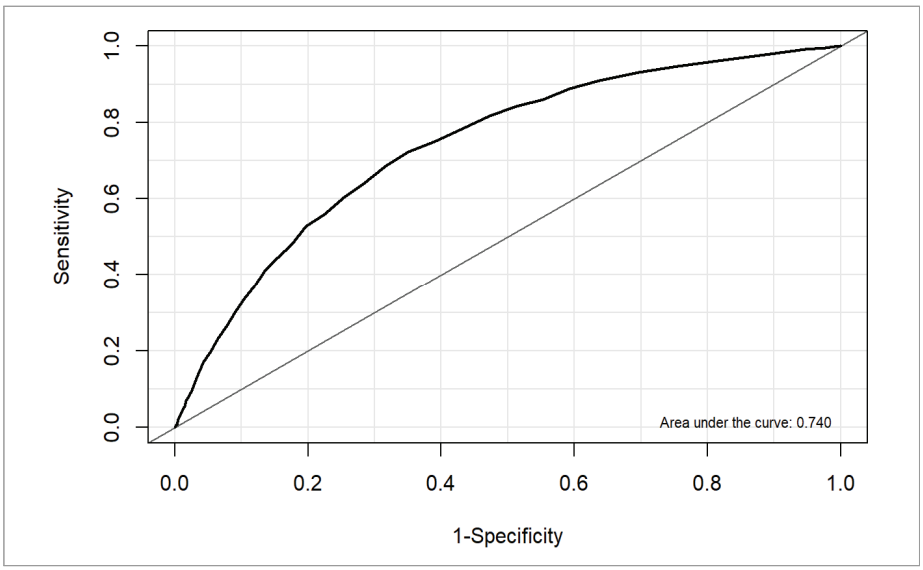

마. 경비처우 재심사 총 점수의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표 3-9〉와 〈그림 3-5〉는 재심사 총점(n=1,173)을 사용하여 재범여부를 예측하였다. 그 결과 회귀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승산비는 1.556으로, 이는 재심사 총점이 1 표준편차 증가할 때 재범 승산이 1.556배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3-9] 경비처우 재심사 총 점수의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변수	표준 편차	회귀계수	승산비	z	p
(절편)		-3.055	0.047	-21.067	〈 0.001
총 점수	2.357	0.442	1.556	4.034	〈 0.001

N = 1,173, AUC = 0.668

[그림 3-5] 경비처우 재심사 총 점수의 재범여부 예측력 ROC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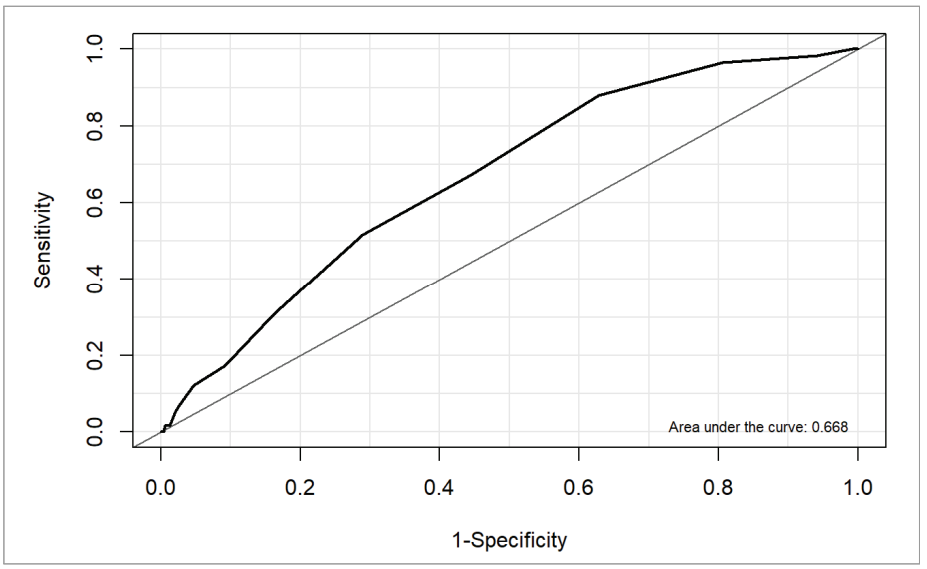

바. 경비처우 신입심사 영역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경비처우 신입심사를 구성하는 '본 범죄 관련사항', '과거 범죄 관련사항', '위험성 및 개선도 평가', '도주 또는 위반' 영역 점수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투입하여 재범여부를 예측한 결과 〈표 3-10〉에 제시하였다. 모든 영역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위험성 및 개선도 평가'는 음의 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해당 영역점수가 높을수록 재범 위험성을 낮게 예측하는 결과이다.

[표 3-10] 경비처우 신입심사 영역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모든 영역 투입 시)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승산비	z	p
(절편)		−1.912	0.148	−57.567	〈 0.001
본 범죄 관련사항	3.213	0.245	1.277	7.965	〈 0.001
과거 범죄 관련사항	6.691	0.715	2.043	22.705	〈 0.001
위험성 및 개선도 평가	1.191	−0.166	0.847	−5.755	〈 0.001
도주 또는 위반	0.869	0.055	1.056	2.208	〈 0.05

N = 9,929, AUC = 0.751

〈표 3-11〉은 각 영역을 개별적으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모든 변수가 유의한 예측력을 보였으나 '위험성 및 개선도 평가'는 본 분석에서도 음의 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3-11] 경비처우 신입심사 영역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각 영역 하나씩 투입 시)

모형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승산비	z	p
1	(절편)		−1.751	0.174	−59.576	〈 0.001
	본 범죄 관련사항	3.213	0.535	1.707	20.930	〈 0.001
2	(절편)		−1.879	0.153	−58.122	〈 0.001
	과거 범죄 관련사항	6.691	0.822	2.275	29.551	〈 0.001
3	(절편)		−1.658	0.190	−60.492	〈 0.001
	위험성 및 개선도 평가	1.191	−0.087	0.917	−3.103	〈 0.01
4	(절편)		−1.669	0.188	−60.402	〈 0.001
	도주 또는 위반	0.869	0.193	1.213	8.326	〈 0.001

N = 9,929

사. 경비처우 신입심사 동적/정적 요인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경비처우 신입심사 점수는 동적 요인과 정적 요인으로 구성된다. 동적 요인은 '위험성 및 개선도 평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적 요인은 나머지 세 영역으로 이루어 진다. 〈표 3-12〉는 동적/정적 요인을 모두 투입한 분석 결과이며, 〈표 3-13〉은 각 요인을 하나씩 투입한 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 동적 요인과 정적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력을 보였다. 그러나 동적 요인은 음의 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3-12] 경비처우 신입심사 동적/정적 요인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모든 요인 투입 시)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승산비	z	p
(절편)		−1.911	0.148	−57.568	〈 0.001
동적 요인	1.191	−0.174	0.841	−6.058	〈 0.001
정적 요인	8.950	0.874	2.396	30.214	〈 0.001

N = 9,929, AUC = 0.750

[표 3-13] 경비처우 신입심사 동적/정적 요인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각 요인 하나씩 투입 시)

모형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승산비	z	p
1	(절편)		-1.658	0.190	-60.492	〈 0.001
	동적 요인	1.191	-0.087	0.917	-3.103	〈 0.01
2	(절편)		-1.891	0.151	-58.017	〈 0.001
	정적 요인	8.950	0.848	2.336	29.982	〈 0.001

N = 9,929

바. 와 사.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정적 요인 및 정적 요인과 관련한 세 영역 점수는 높을수록 재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위험성 및 개선도 평가'라는 동적 요인 점수는 높은 값을 가질수록 재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결과와 배치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해당 점수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을 가능성을 문제의 원인으로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동적 요인 점수를 얻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동적 요인 점수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지 못하였고, 이는 본 분석에서 음의 회귀 계수라는 형태로 발현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후 동적 요인 검사 점수가 수집되는 과정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검사 점수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할 방안을 모색하여 동적 요인의 재범 예측력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아. 경비처우 신입심사 문항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표 3-14〉는 경비처우 신입심사를 구성하는 16개 문항을 모두 투입한 분석 결과이다. 16개 문항 중 8개 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문항만을 투입하여 재분석한 결과는 〈표 3-15〉에 제시하였다. 두 분석에서 6개의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재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초중범죄중범죄유무점수', '개선가능성점수' 문항의 계수는 음수로 추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재범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표 3-14] 경비처우 신입심사 문항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모든 문항 투입 시)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승산비	z	p
(절편)		-1.974	0.139	-56.130	〈 0.001
흉기사용점수	0.511	-0.032	0.968	-1.041	= 0.298
범죄동기점수	0.244	0.083	1.086	2.173	〈 0.05
범죄심각성점수	1.915	0.203	1.225	4.333	〈 0.001
전체형기점수	1.558	-0.026	0.975	-0.598	= 0.550
미결태도점수	2.044	0.024	1.024	0.810	= 0.418
재범기간점수	1.623	0.261	1.298	7.235	〈 0.001
범법행위건수점수	3.503	0.067	1.069	1.651	= 0.099
최초경찰입건연령점수	1.103	0.207	1.230	7.008	〈 0.001
교정시설총수용기간점수	2.347	0.351	1.420	9.057	〈 0.001
과거수용중징벌점수	1.258	0.153	1.165	5.294	〈 0.001
초중범죄중범죄유무점수	0.846	-0.115	0.891	-4.100	〈 0.001
COREPI동적평가점수	0.723	0.031	1.031	1.009	= 0.313
문제행동가능성점수	0.704	-0.057	0.945	-1.728	= 0.084
개선가능성점수	1.010	-0.331	0.718	-7.167	〈 0.001
도주자살시도점수	0.373	0.026	1.026	0.966	= 0.334
집유실효등점수	0.781	0.019	1.019	0.749	= 0.454

N = 9,929, AUC = 0.772

[표 3-15] 경비처우 신입심사 문항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모든 문항 투입 시)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승산비	z	p
(절편)		-1.970	0.139	-56.239	〈 0.001
범죄동기점수	0.244	0.086	1.089	2.281	〈 0.050
범죄심각성점수	1.915	0.230	1.259	6.817	〈 0.001
재범기간점수	1.623	0.272	1.312	7.646	〈 0.001
최초경찰입건연령점수	1.103	0.216	1.241	7.437	〈 0.001
교정시설총수용기간점수	2.347	0.363	1.437	9.775	〈 0.001
과거수용중징벌점수	1.258	0.155	1.167	5.624	〈 0.001
초중범죄중범죄유무점수	0.846	-0.119	0.888	-4.269	〈 0.001
개선가능성점수	1.010	-0.344	0.709	-8.011	〈 0.001

N = 9,929, AUC = 0.771

아래 〈표 3-16〉은 16개 문항을 하나씩 투입한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흉기사용점수', '도주자살시도점수'를 제외하고 14개 문항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

되었다. 유의하였던 문항 중 '전체형기점수'문항과 '개선가능성'문항의 회귀계수는 음수로 추정되었다. 위 분석 결과 음의 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 '전체형기점수', '초중범죄중범죄유무점수', '개선가능성점수' 등의 문항 점수 역시 앞선 논의했던 것처럼, 낮은 신뢰도, 타당도의 문제를 지니고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문제가 확인된다면 문제점의 개선을 통해 재범 예측력 향상을 꿰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16] 경비처우 신입심사 문항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각 문항 하나씩 투입 시)

모형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승산비	z	p
1	(절편)		-1.656	0.191	-60.533	〈 0.001
	흉기사용점수	0.511	-0.023	0.977	-0.814	= 0.416
2	(절편)		-1.661	0.190	-60.407	〈 0.001
	범죄동기점수	0.244	0.124	1.132	3.566	〈 0.001
3	(절편)		-1.678	0.187	-60.117	〈 0.001
	범죄심각성점수	1.915	0.259	1.296	8.706	〈 0.001
4	(절편)		-1.657	0.191	-60.506	〈 0.001
	전체형기점수	1.558	-0.070	0.932	-2.504	〈 0.050
5	(절편)		-1.663	0.189	-60.441	〈 0.001
	미결태도점수	2.044	0.148	1.160	6.100	〈 0.001
6	(절편)		-1.823	0.162	-58.410	〈 0.001
	재범기간점수	1.623	0.696	2.006	25.924	〈 0.001
7	(절편)		-1.795	0.166	-58.144	〈 0.001
	범법행위건수점수	3.503	0.646	1.908	21.189	〈 0.001
8	(절편)		-1.725	0.178	-59.774	〈 0.001
	최초경찰입건 연령점수	1.103	0.451	1.570	17.940	〈 0.001
9	(절편)		-1.826	0.161	-58.999	〈 0.001
	교정시설총 수용기간점수	2.347	0.708	2.030	29.374	〈 0.001
10	(절편)		-1.750	0.174	-59.706	〈 0.001
	과거수용중 징벌점수	1.258	0.520	1.683	23.324	〈 0.001
11	(절편)		-1.676	0.187	-60.342	〈 0.001
	초중범죄중 범죄유무점수	0.846	0.242	1.274	10.696	〈 0.001
12	(절편)		-1.695	0.184	-60.117	〈 0.001
	COREPI 동적평가점수	0.723	0.338	1.403	14.063	〈 0.001

모형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승산비	z	p
13	(절편)		-1.682	0.186	-60.236	〈 0.001
	문제행동 가능성점수	0.704	0.276	1.318	11.310	〈 0.001
14	(절편)		-1.858	0.156	-56.009	〈 0.001
	개선가능성점수	1.010	-0.828	0.437	-20.772	〈 0.001
15	(절편)		-1.656	0.191	-60.526	〈 0.001
	도주자살시도점수	0.373	0.047	1.048	1.957	= 0.050
16	(절편)		-1.669	0.188	-60.402	〈 0.001
	집유실효등점수	0.781	0.193	1.213	8.344	〈 0.001

N = 9,929

자. 경비처우 재심사 하위항목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경비처우 재심사에서 사용된 7개 하위항목 점수를 투입한 분석 결과는 〈표 3-17〉에 제시하였다. 7개 항목 중 '재범가능점수'와 '문제행동가능점수'만 유의한 예측력을 보였다. 단, '문제행동가능점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재범확률이 더 낮을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으며, 이는 '재범가능점수'와 '문제행동가능점수'만으로 재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표 3-18〉 참고).

[표 3-17] 경비처우 재심사 하위항목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모든 문항 투입 시)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승산비	z	p
(절편)		-3.551	0.029	-1.304	= 0.192
재범가능점수(REPI점수)	1.173	1.130	3.094	7.011	〈 0.001
교정처우성과점수	0.539	-0.056	0.945	-0.394	= 0.694
형집행기간점수	0.065	-0.727	0.483	-0.018	= 0.986
교정성적점수	0.908	0.135	1.144	0.911	= 0.362
문제행동가능점수	0.901	-0.330	0.719	-2.298	〈 0.05
징벌관련점수	0.457	0.102	1.108	0.984	= 0.325
개별처우고려점수	0.767	-0.072	0.930	-0.47	= 0.638

N = 1,173, AUC = 0.787

[표 3-18] 경비처우 재심사 하위항목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모든 문항 투입 시)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승산비	z	p
(절편)		-3.491	0.030	-17.519	〈 0.001
재범가능점수(REPI점수)	1.173	1.139	3.123	7.108	〈 0.001
문제행동가능점수	0.901	-0.294	0.745	-2.139	〈 0.05

N = 1,173, AUC = 0.782

재심사 하위항목을 하나씩 투입한 분석 결과는 〈표 3-19〉에 제시하였다. 이 중 유일하게 '재범가능점수' 항목이 유의한 재범 예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가능점수'는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음의 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3-19] 경비처우 재심사 하위항목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각 문항 하나씩 투입 시)

모형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승산비	z	p
1	(절편)		-3.451	0.032	-17.675	〈 0.001
	재범가능점수(REPI)	1.173	1.059	2.884	6.852	〈 0.001
2	(절편)		-2.956	0.052	-21.947	〈 0.001
	교정처우성과점수	0.539	0.025	1.026	0.185	= 0.853
3	(절편)		-3.005	0.050	-1.082	= 0.279
	형집행기간점수	0.065	-0.822	0.439	-0.019	= 0.985
4	(절편)		-2.965	0.052	-21.840	〈 0.001
	교정성적점수	0.908	0.138	1.148	1.057	= 0.291
5	(절편)		-2.957	0.052	-21.940	〈 0.001
	문제행동가능섬수	0.901	-0.043	0.958	-0.310	= 0.756
5	(절편)		-2.966	0.052	-21.865	〈 0.001
	징벌관련점수	0.457	0.130	1.139	1.409	= 0.159
6	(절편)		-2.959	0.052	-21.910	〈 0.001
	개별처우고려점수	0.767	-0.081	0.922	-0.552	= 0.581

N = 1,173

4. REPI 분류지표의 재범여부 예측력 확인

가. REPI 최종 등급의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경비처우와 마찬가지로 REPI 최종 등급 또한 신입심사 등급과 재심사 등급 중 가장 최신 등급을 사용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재심사 등급 정보가 있는 경우 최종등급은 재심사 등급과 동일하며 재심사 등급 정보가 없는 경우 최종등급은 신입심사 등급과 동일하다.

[표 3-20] REPI 최종 등급의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준거 집단: REPI 1급)

변수	회귀 계수의 의미	회귀계수	승산비	z	p
(절편)	1급의 재범 위험성 평가	-4.070	0.017	-16.641	〈 0.001
2급	1급과 2급의 위험성 비교	1.124	3.078	4.306	〈 0.001
3급	1급과 3급의 위험성 비교	2.082	8.017	8.305	〈 0.001
4급	1급과 4급의 위험성 비교	3.013	20.356	12.024	〈 0.001
5급	1급과 5급의 위험성 비교	3.692	40.134	14.768	〈 0.001

N = 9,929, AUC = 0.756

REPI 1급을 준거집단으로 재범여부를 예측한 결과, REPI 등급이 높아질수록 재범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UC는 0.756으로서 중간 정도의 예측력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6] REPI 최종 등급의 재범여부 예측력 ROC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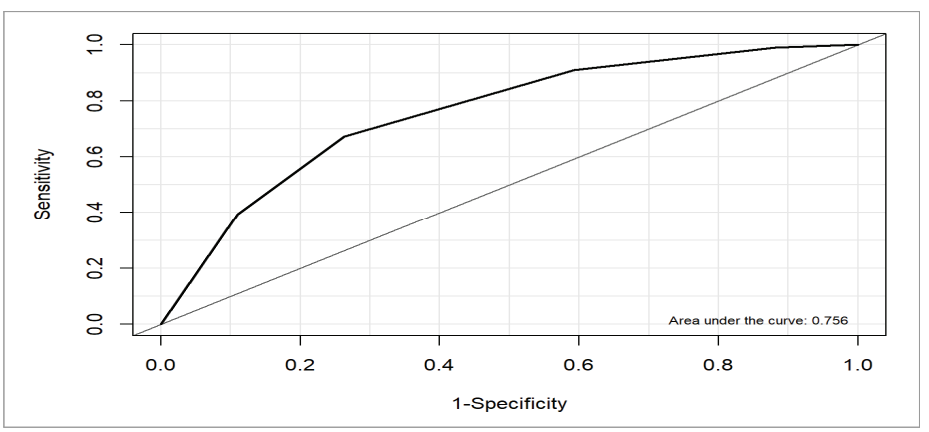

나. REPI 신입심사 등급의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REPI 신입심사 등급을 사용하여 재범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신입심사 등급이 높을수록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3-21] REPI 신입심사 등급의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준거 집단: REPI 1급)

변수	회귀 계수의 의미	회귀계수	승산비	z	p
(절편)	1급의 재범 위험성 평가	-3.839	0.022	-13.694	〈 0.001
2급	1급과 2급의 위험성 비교	0.916	2.499	3.099	〈 0.01
3급	1급과 3급의 위험성 비교	1.730	5.640	6.058	〈 0.001
4급	1급과 4급의 위험성 비교	2.693	14.783	9.434	〈 0.001
5급	1급과 5급의 위험성 비교	3.402	30.010	11.939	〈 0.001

N = 9,929, AUC = 0.740

[그림 3-7] REPI 신입심사 등급의 재범여부 예측력 ROC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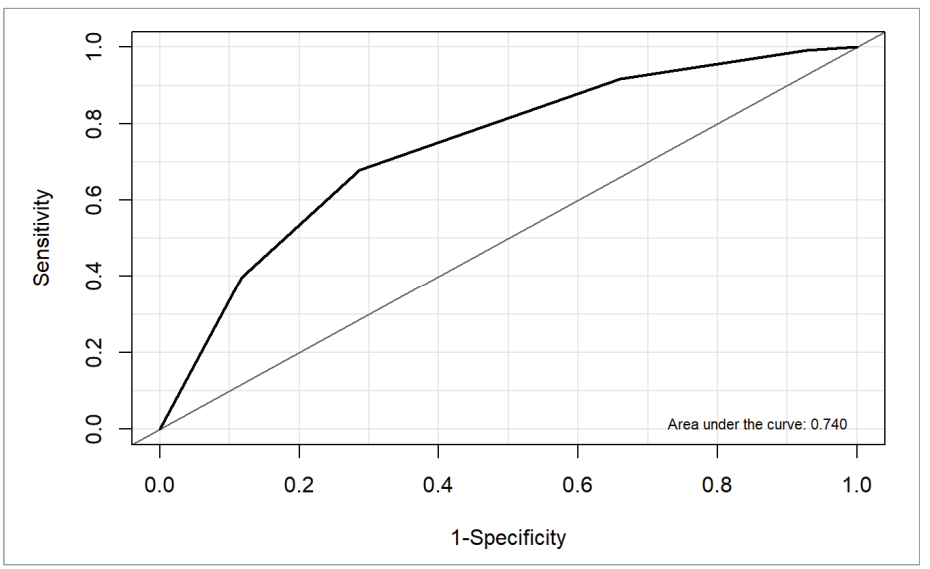

다. REPI 재심사 등급의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REPI 재심사 등급으로 재범 여부를 예측한 결과(n=1,911), 준거집단인 1급과 2급 간 재범위험성에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3급 이상부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3-22] REPI 재심사 등급의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준거 집단: REPI 1급)

변수	회귀 계수의 의미	회귀계수	승산비	z	p
(절편)	1급의 재범 위험성 평가	-4.764	0.009	-9.489	〈 0.001
2급	1급과 2급의 위험성 비교	0.947	2.579	1.647	= 0.099
3급	1급과 3급의 위험성 비교	1.382	3.984	2.421	〈 0.05
4급	1급과 4급의 위험성 비교	2.606	13.549	4.798	〈 0.001
5급	1급과 5급의 위험성 비교	3.002	20.125	5.453	〈 0.001

N = 1,911, AUC = 0.753

[그림 3-8] REPI 재심사 등급의 재범여부 예측력 ROC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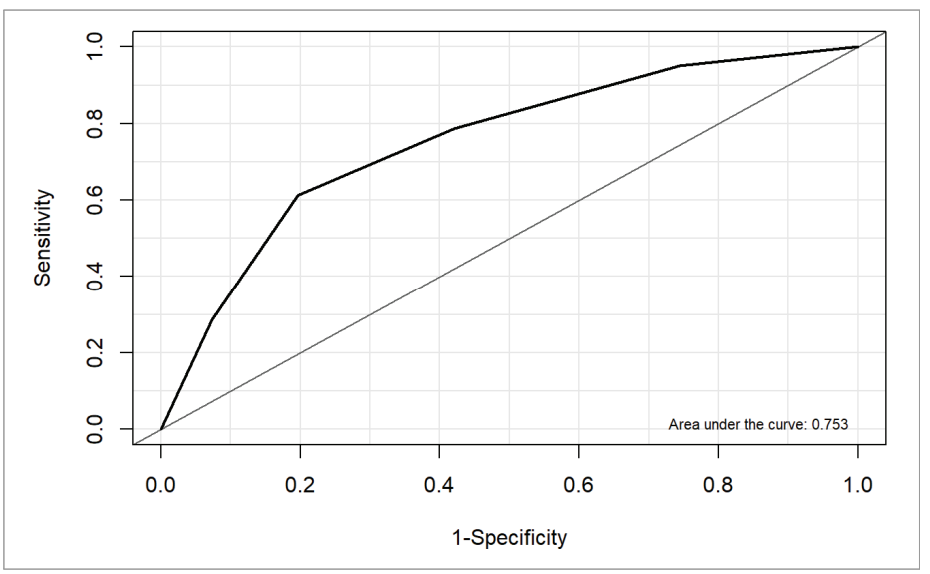

라. REPI 신입심사 총 점수의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표 3-23〉은 REPI 신입심사 총점을 사용하여 재범여부를 예측한 결과이다. 총점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표준화 절차를 거쳐 분석에 투입되었다. 분석 결과, 총점이 1 표준편차 증가할 때, 즉, 총점이 6.368점 증가할 때, 재범 승산은 2.44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 REPI 신입심사 총 점수의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승산비	z	p
(절편)		-1.915	0.147	-57.850	〈 0.001
총 점수	6.368	0.895	2.447	31.145	〈 0.001

N = 9,929, AUC = 0.754

[그림 3-9] REPI 신입심사 총 점수의 재범여부 예측력 ROC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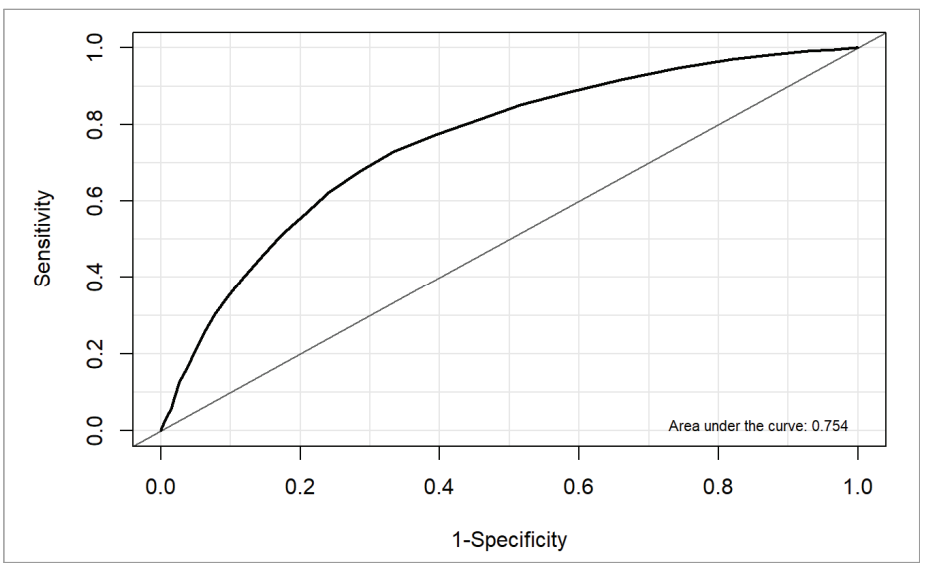

마. REPI 재심사 총 점수의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REPI 재심사 총점으로 재범여부를 예측한 결과(n=1,911), 재심사 총점이 1 표준편차 증가할 때, 즉 2.678점 증가할 때, 재범 승산은 1.43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REPI 재심사 총 점수의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승산비	z	p
(절편)		-3.197	0.041	-26.487	〈 0.001
총 점수	2.678	0.362	1.437	3.637	〈 0.001

N = 1,911, AUC = 0.610

[그림 3-10] REPI 재심사 총 점수의 재범여부 예측력 ROC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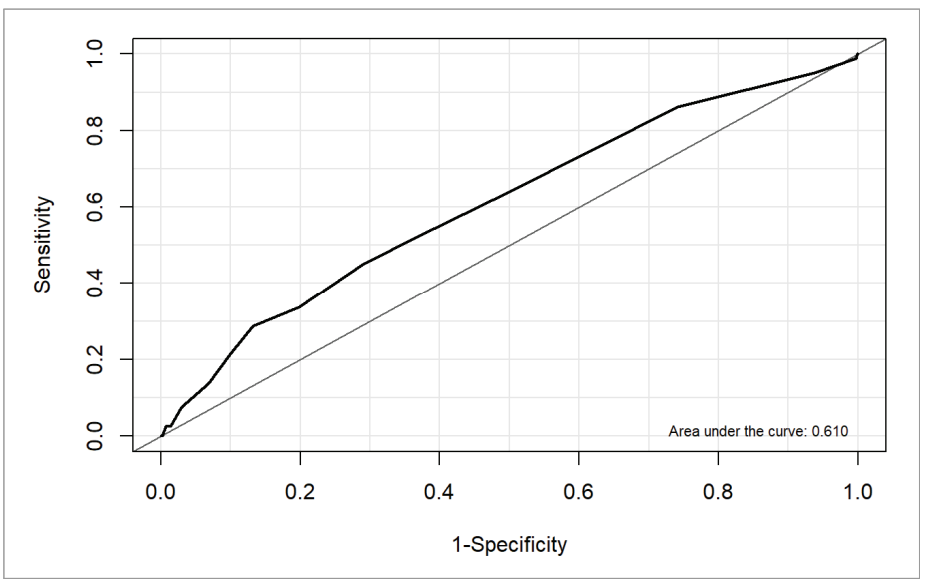

바. REPI 신입심사 동적/정적 요인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신입심사를 구성하는 동적/정적 요인을 함께 투입한 분석 결과는 〈표 3-25〉에, 개별적으로 투입한 분석 결과는 〈표 3-26〉에 제시하였다. 모든 결과에서 동적, 정적 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재범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5] REPI 신입심사 동적/정적 요인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모든 요인 투입 시)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승산비	z	p
(절편)		-1.925	0.146	-57.880	〈 0.001
동적 요인	3.085	0.119	1.127	3.364	〈 0.001
정적 요인	4.088	0.837	2.310	24.873	〈 0.001

N = 9,929, AUC = 0.768

[표 3-26] REPI 신입심사 동적/정적 요인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각 요인 하나씩 투입 시)

모형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승산비	z	p
1	(절편)		-1.786	0.168	-58.794	〈 0.001
	동적 요인	3.085	0.628	1.874	21.869	〈 0.001
2	(절편)		-1.921	0.147	-57.966	〈 0.001
	정적 요인	4.088	0.902	2.465	32.425	〈 0.001

N = 9,929

REPI 정적 요인의 4가지 하위요인('사회인구학적 요인', '본범관련사항', '과거범죄관련사항', '도주 또는 위반')을 모두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3-27〉에, 하위요인을 개별적으로 투입한 분석 결과는 〈표 3-28〉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계수가 양수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3-27] REPI 신입심사 동적/정적 하위 요인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모든 요인 투입 시)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승산비	z	p
(절편)			-1.924	0.146	-57.77	〈 0.001
동적 요인: 위험성평가		3.085	0.120	1.127	3.368	〈 0.001
정적 요인	사회인구학적 요인	0.479	0.068	1.070	2.192	〈 0.05
	본범관련사항	1.076	0.232	1.261	7.243	〈 0.001
	과거범죄관련사항	3.303	0.699	2.011	22.141	〈 0.001
	도주 또는 위반	0.495	0.054	1.055	1.964	〈 0.05

N = 9,929, AUC = 0.768

[표 3-28] REPI 신입심사 정적 하위 요인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각 요인 하나씩 투입 시)

모형	변수	표준 편차	회귀계수	승산비	z	p
1	(절편)		-1.676	0.187	-60.217	〈 0.001
	사회인구학적 요인	0.479	0.250	1.284	8.685	〈 0.001
2	(절편)		-1.728	0.178	-59.565	〈 0.001
	본범관련사항	1.076	0.464	1.590	17.213	〈 0.001
3	(절편)		-1.885	0.152	-58.416	〈 0.001
	과거범죄관련사항	3.303	0.833	2.301	31.875	〈 0.001
4	(절편)		-1.694	0.184	-60.101	〈 0.001
	도주 또는 위반	0.495	0.331	1.393	13.576	〈 0.001

N = 9,929

사. REPI 신입심사 문항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REPI 신입심사를 구성하는 23개 문항 모두를 사용하여 재범여부를 예측한 결과 14개 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29〉 참고). 해당 14개 문항만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2개 문항[17]이 유의하지 않았고, 두 문항을 제외하고 다시 12 문항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3-30〉에 제시하였다. 두 분석 결과에서 '특정요인별 재범 가능성점수' 문항의 계수가 음수로 추정되었다. 이 문항에 대한 점수 역시, 수집 과정,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3-29] REPI 신입심사 문항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모든 문항 투입 시)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승산비	z	p
(절편)		-2.596	0.075	-0.366	= 0.714
성별점수	0.286	0.160	1.174	3.811	〈 0.001
죄명점수	0.770	0.234	1.264	7.368	〈 0.001
피해자관계점수	0.497	0.268	1.307	7.889	〈 0.001
범죄시정신상태점수	0.431	-0.049	0.953	-1.474	= 0.141
본건및과거징벌점수	0.862	0.140	1.150	4.792	〈 0.001
이전범죄전체형기점수	0.930	0.082	1.085	2.179	〈 0.05
동일유사죄명 경력횟수점수	0.825	0.350	1.419	8.772	〈 0.001
최초형확정연령대점수	0.728	0.098	1.103	2.567	〈 0.05

17) '이전범죄전체형기', '집행유예취소실효횟수'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승산비	z	p
재범기간점수	0.062	−0.043	0.958	−0.001	= 0.999
이전범죄출소연령대점수	0.968	0.160	1.173	4.351	〈 0.001
집행유예 취소실효횟수점수	0.495	0.077	1.081	2.697	〈 0.01
동거횟수점수	0.028	−0.376	0.686	−0.012	= 0.991
학창시절처벌경험점수	0.432	0.072	1.075	2.169	〈 0.05
범죄시직업점수	0.276	3.087	21.917	0.073	= 0.942
입소전경제상태점수	0.056	−0.692	0.500	−0.023	= 0.981
입소전거주상태점수	0.043	−0.538	0.584	−0.015	= 0.988
정신병원치료경력점수	0.304	0.022	1.022	0.754	= 0.451
학력점수	0.096	−1.332	0.264	−0.039	= 0.969
출소후재범환경점수	0.739	0.131	1.139	3.753	〈 0.001
공권력태도점수	0.925	−0.055	0.946	−1.575	= 0.115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점수	1.040	−0.145	0.865	−3.911	〈 0.001
비행성향점수	1.194	0.164	1.179	4.415	〈 0.001
포기성향점수	1.103	0.099	1.104	3.006	〈 0.01

N = 9,929, AUC = 0.786

[표 3-30] REPI 신입심사 문항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모든 문항 투입 시)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승산비	z	p
(절편)		−1.997	0.136	−56.700	〈 0.001
성별점수	0.286	0.159	1.172	3.802	〈 0.001
죄명점수	0.770	0.230	1.258	7.348	〈 0.001
피해자관계점수	0.497	0.275	1.316	8.177	〈 0.001
본건및과거징벌점수	0.862	0.147	1.159	5.495	〈 0.001
동일유사죄명 경력횟수점수	0.825	0.403	1.496	10.790	〈 0.001
최초형확정연령대점수	0.728	0.129	1.137	3.589	〈 0.001
이전범죄출소연령대점수	0.968	0.183	1.201	5.528	〈 0.001
학창시절처벌경험점수	0.432	0.070	1.072	2.107	〈 0.050
출소후재범환경점수	0.739	0.134	1.144	3.901	〈 0.001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점수	1.040	−0.164	0.849	−4.721	〈 0.001
비행성향점수	1.194	0.173	1.189	4.675	〈 0.001
포기성향점수	1.103	0.103	1.108	3.151	〈 0.010

N = 9,929, AUC = 0.779

신입심사 문항 23개를 개별적으로 투입한 분석 결과는 〈표 3-31〉에 제시하였다. 앞선 분석에서 유의하였던 14개 문항(〈표 3-29〉 참고)과 함께 '정신병원치료경력점수', '공권력태도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3-31] REPI 신입심사 문항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각 문항 하나씩 투입 시)

모형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승산비	z	p
1	(절편)		-1.672	0.188	-60.081	〈 0.001
	성별점수	0.286	0.229	1.257	6.422	〈 0.001
2	(절편)		-1.704	0.182	-59.933	〈 0.001
	죄명점수	0.770	0.373	1.452	14.840	〈 0.001
3	(절편)		-1.730	0.177	-59.133	〈 0.001
	피해자관계점수	0.497	0.471	1.601	15.504	〈 0.001
4	(절편)		-1.656	0.191	-60.531	〈 0.001
	범죄시정신상태점수	0.431	-0.031	0.970	-1.108	= 0.268
5	(절편)		-1.737	0.176	-59.848	〈 0.001
	본건및과거 징벌점수	0.862	0.486	1.626	21.744	〈 0.001
6	(절편)		-1.789	0.167	-59.344	〈 0.001
	이전범죄 전체형기점수	0.930	0.624	1.866	26.717	〈 0.001
7	(절편)		-1.881	0.153	-57.759	〈 0.001
	동일유사죄명 경력횟수점수	0.825	0.808	2.242	29.641	〈 0.001
8	(절편)		-1.743	0.175	-59.407	〈 0.001
	최초형확정 연령대점수	0.728	0.506	1.658	19.227	〈 0.001
9	(절편)		-1.688	0.185	-3.857	〈 0.001
	재범기간점수	0.062	-0.762	0.467	-0.080	= 0.937
10	(절편)		-1.750	0.174	-59.565	〈 0.001
	이전범죄 출소연령대점수	0.968	0.522	1.686	21.743	〈 0.001
11	(절편)		-1.694	0.184	-60.101	〈 0.001
	집행유예 취소실효횟수점수	0.495	0.331	1.393	13.576	〈 0.001
12	(절편)		-1.661	0.190	-20.885	〈 0.001
	동거횟수점수	0.028	-0.294	0.745	-0.084	= 0.933
13	(절편)		-1.704	0.182	-59.925	〈 0.001
	학창시절	0.432	0.374	1.453	15.009	〈 0.001

모형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승산비	z	p
	처벌경험점수					
14	(절편)		-2.105	0.122	-0.316	= 0.752
	범죄시직업점수	0.276	3.319	27.621	0.071	= 0.943
15	(절편)		-1.692	0.184	-3.414	〈 0.001
	입소전경제상태점수	0.056	-0.721	0.487	-0.081	= 0.935
16	(절편)		-1.668	0.189	-9.734	〈 0.001
	입소전거주상태점수	0.043	-0.469	0.626	-0.079	= 0.937
17	(절편)		-1.659	0.190	-60.490	〈 0.001
	정신병원 치료경력점수	0.304	0.098	1.104	3.901	〈 0.001
18	(절편)		-1.775	0.170	-1.255	= 0.209
	학력점수	0.096	-1.341	0.262	-0.092	= 0.927
19	(절편)		-1.751	0.174	-58.992	〈 0.001
	출소후 재범환경점수	0.739	0.544	1.723	17.818	〈 0.001
20	(절편)		-1.677	0.187	-60.153	〈 0.001
	공권력태도점수	0.925	0.250	1.284	8.544	〈 0.001
21	(절편)		-1.666	0.189	-60.356	〈 0.001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점수	1.040	0.178	1.195	6.420	〈 0.001
22	(절편)		-1.728	0.178	-59.538	〈 0.001
	비행성향점수	1.194	0.458	1.581	17.288	〈 0.001
23	(절편)		-1.734	0.177	-59.500	〈 0.001
	포기성향점수	1.103	0.476	1.610	18.098	〈 0.001

N = 9,929

아. REPI 재심사 하위항목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표 3-32〉는 재심사 시 사용된 6개 하위항목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단, '형집행기간점수'의 경우 변동성이 없어[18] 분석결과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결과 '경비처우점수'항목이 유의한 예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해당 변수의 값은 자료 전체에서 기록되지 않았거나 혹은 모두 2점이었다.

[표 3-32] REPI 재심사 하위항목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모든 문항 투입 시)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승산비	z	p
(절편)		-3.228	0.040	-26.049	〈 0.001
경비처우점수	0.574	0.372	1.450	2.839	〈 0.001
교정처우성과점수	0.690	0.055	1.057	0.438	= 0.662
교정성적점수	1.221	0.063	1.065	0.509	= 0.611
징벌관련점수	1.062	-0.002	0.998	-0.020	= 0.984
벌금미납추가형점수	0.665	0.116	1.123	1.267	= 0.205

N = 1,911, AUC = 0.646

〈표 3-33〉은 재심사 하위항목을 개별적으로 투입하여 실시한 분석 결과이다. 하위항목 중 4개 항목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3] REPI 재심사 하위항목별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각 문항 하나씩 투입 시)

모형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승산비	z	p
1	(절편)		-3.217	0.040	-26.163	〈 0.001
	경비처우점수	0.574	0.424	1.527	4.002	〈 0.001
2	(절편)		-3.139	0.043	-27.245	〈 0.001
	교정처우성과점수	0.690	0.142	1.152	1.173	= 0.241
3	(절편)		-3.159	0.042	-26.957	〈 0.001
	교정성적점수	1.221	0.243	1.275	2.259	〈 0.05
4	(절편)		-3.157	0.043	-27.027	〈 0.001
	징벌관련점수	1.062	0.228	1.256	2.370	〈 0.05
5	(절편)		-3.149	0.043	-27.165	〈 0.001
	벌금미납 추가형점수	0.665	0.185	1.203	2.093	〈 0.05

N = 1,911

5. 경비처우 분류심사의 출소 후 재범까지 기간 예측력 확인

재범 예측 분석을 위해 추가적으로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생존분석에서는 재범 여부뿐만 아니라 재범까지 걸린 시간(재범 기간)까지 고려한다(Kleinbaum & Klein, 2012). 본 분석에서의 재범 기간은 출소일 부터 재입소일까지 걸린 기간을 가리키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 출소일로부터 자료 수집 종료일(2021-07-31)까지 기간을

산출하여 생존 분석에 투입하였다. 구체적으로 Cox 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Cox, 1972; 1975)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가. 경비처우 최종 등급의 생존분석

앞선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경비 처우 최종 등급을 사용하여 생존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3-34〉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S1급과 S2급의 재범위험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S1급과 S3급, S1급과 S4급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비는 exp(회귀계수)로 계산되며, 이는 S3급은 S1급보다 약 3.487배 재범위험성이 높으며 S4급은 약 9.125배 높음을 뜻한다. 분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그림 3-11〉에 S1급~S4급의 누적위험함수(좌)와 생존함수(우)를 제시하였다.

[표 3-34] 경비처우 최종 등급의 생존분석

(준거 집단: 경비처우 S1급)

변수	분석 변수 의미	회귀계수	위험비	z	p
S2급	S1급의 S2급의 위험성 비교	-0.227	0.797	-0.984	= 0.325
S3급	S1급과 S3급의 위험성 비교	1.249	3.487	5.924	〈 0.001
S4급	S1급과 S4급의 위험성 비교	2.211	9.125	9.963	〈 0.001

N = 9,929

[그림 3-11] 경비처우 최종 등급별 생존분석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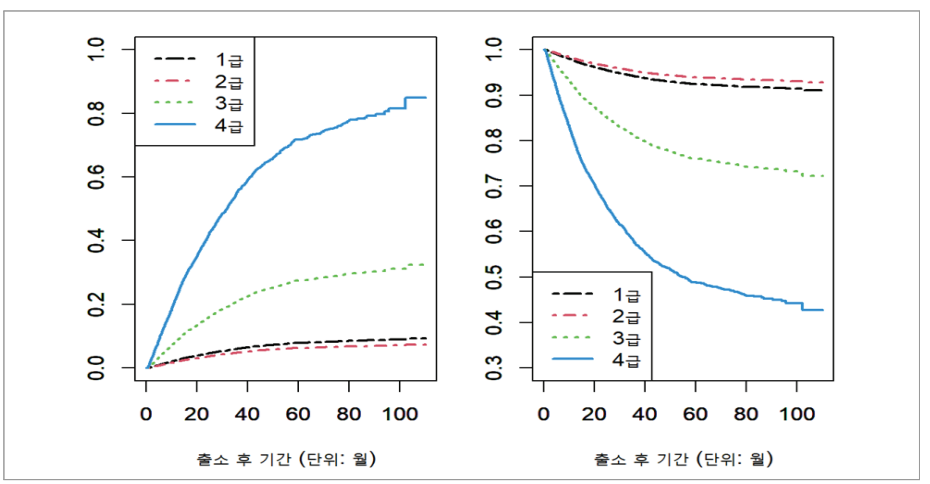

(좌) 경비처우 최종 등급별 누적위험함수(cumulative hazard function)
(우) 경비처우 최종 등급별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

나. 경비처우 신입심사 등급의 생존분석

경비처우 신입심사 등급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신입심사에서는 S1급으로 평가된 범죄자는 없었기 때문에, S2급을 준거 집단으로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는 〈표 3-35〉에 제시하였다. 〈그림 3-12〉는 누적위험함수(좌)와 생존함수(우)이다.

[표 3-35] 경비처우 신입심사 등급의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

(준거 집단: 경비처우 S2급)

변수	회귀 계수의 의미	회귀계수	위험비	z	p
S3급	S2급과 S3급의 위험성 비교	1.630	5.102	14.479	〈 0.001
S4급	S2급과 S4급의 위험성 비교	2.633	13.909	20.066	〈 0.001

N = 9,929

[그림 3-12] 경비처우 신입심사 등급별 생존분석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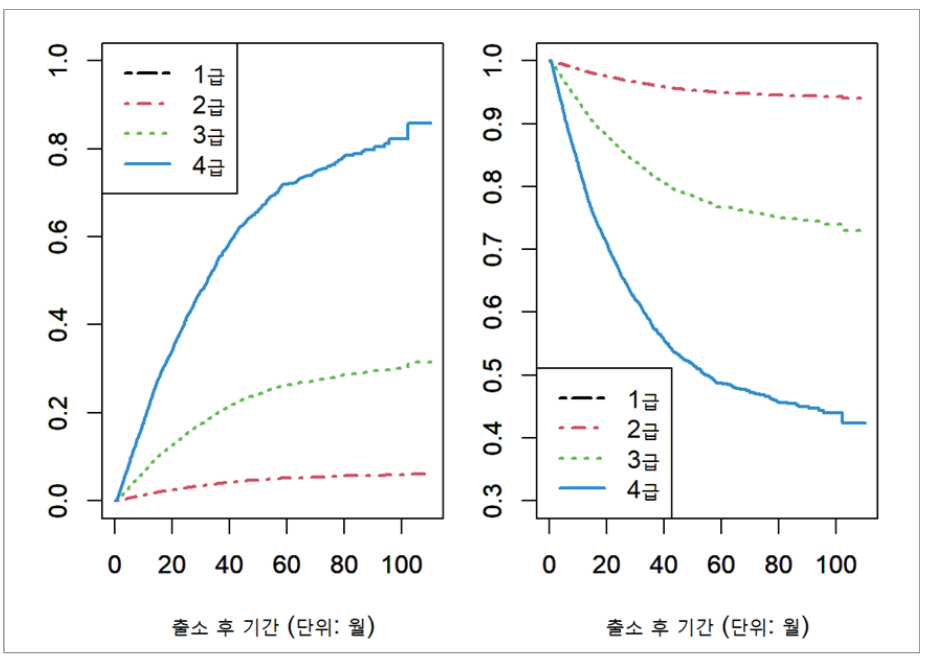

(좌) 경비처우 신입심사 등급별 누적위험함수(cumulative hazard function)
(우) 경비처우 신입심사 등급별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

다. 경비처우 재심사 등급의 생존분석

〈표 3-36〉은 재심사 등급으로 생존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앞선 로지스틱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S4급의 생존분석 계수가 음수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S4급의 자료 수(n = 10)를 감안하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그림 3-13〉은 누적위험함수(좌)와 생존함수(우)이다. 〈표 3-37〉과 〈그림 3-14〉는 자료 수가 적은 S4급을 자료에서 제하고 분석한 결과이다.

[표 3-36] 경비처우 재심사 등급의 생존분석

(준거 집단: 경비처우 S1급)

변수	분석 변수 의미	회귀계수	위험비	z	p
S2급	S1급의 S2급의 위험성 비교	0.658	1.930	2.317	〈 0.05
S3급	S1급과 S3급의 위험성 비교	0.956	2.602	2.329	〈 0.05
S4급	S1급과 S4급의 위험성 비교	-14.720	0.000	-0.005	= 0.996

N = 1,173

[그림 3-13] 경비처우 재심사 등급별 생존분석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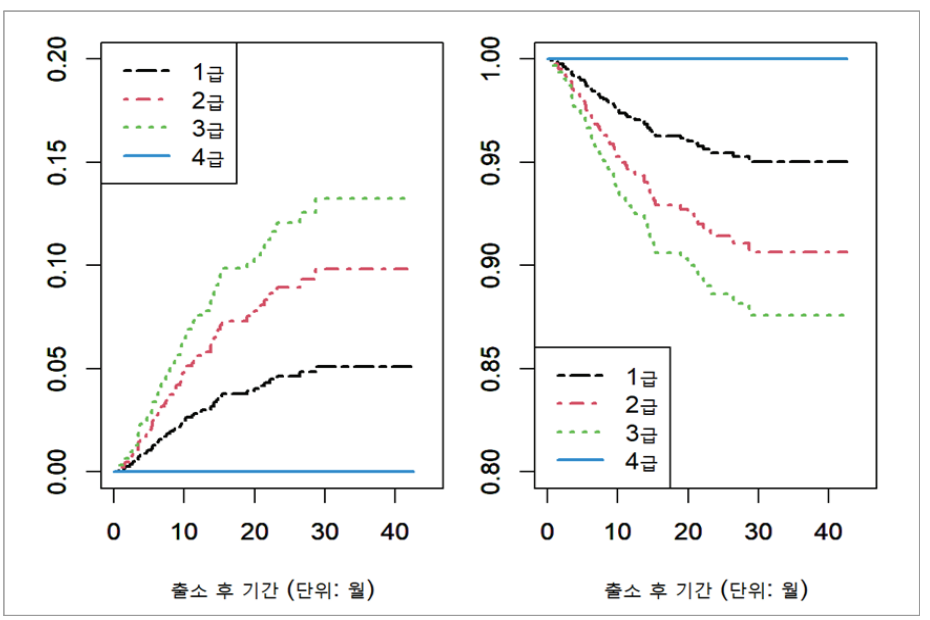

(좌) 경비처우 재심사 등급별 누적위험함수(cumulative hazard function)
(우) 경비처우 재심사 등급별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

[표 3-37] 경비처우 재심사 등급의 생존분석

(준거 집단: 경비처우 S1급)

변수	분석 변수 의미	회귀계수	위험비	z	p
S2급	S1급의 S2급의 위험성 비교	0.658	1.930	2.317	〈 0.05
S3급	S1급과 S3급의 위험성 비교	0.956	2.602	2.329	〈 0.05

N = 1,163

[그림 3-14] 경비처우 재심사 등급별 생존분석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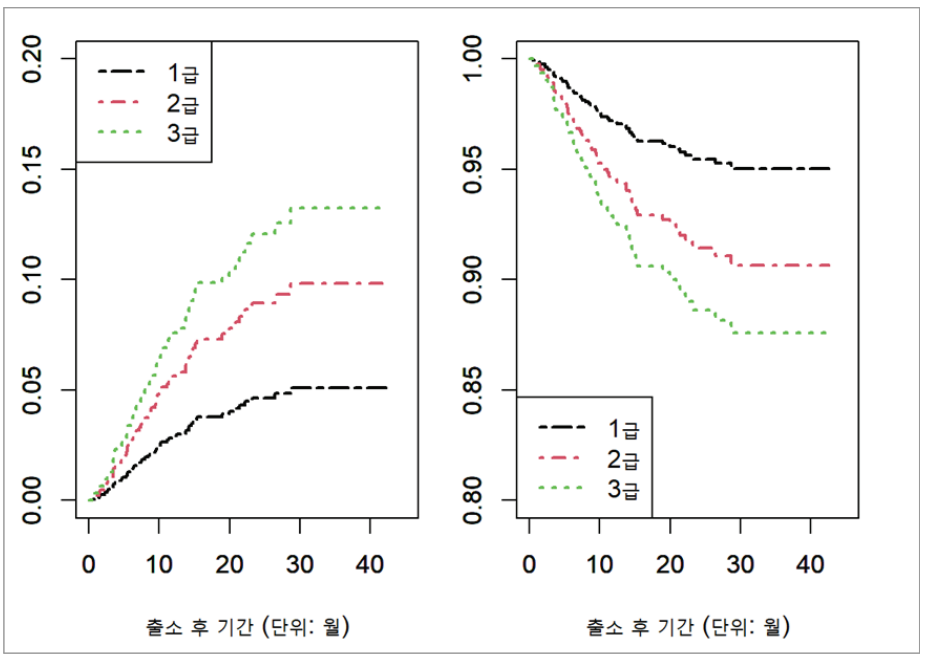

(좌) 경비처우 재심사 등급별 누적위험함수(cumulative hazard function)
(우) 경비처우 재심사 등급별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

라. 경비처우 신입심사 총 점수의 생존분석

〈표 3-38〉은 경비처우 신입심사 총점을 표준화하고 이를 사용하여 생존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신입 심사 총점이 1 표준편차, 즉 9.07점 증가할수록 재범위험성은 1.943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8] 경비처우 신입심사 총 점수의 생존분석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위험비	z	p
총 점수	9.070	0.664	1.943	30.581	〈 0.001

N = 9,929

마. 경비처우 재심사 총 점수의 생존분석

재심사 총점을 사용하여 생존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3-39〉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총점이 1 표준편차 증가할수록 재범위험성은 1.537배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9] 경비처우 재심사 총 점수의 생존분석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위험비	z	p
총 점수	2.357	0.430	1.537	4.453	〈 0.001

N = 1,173

바. 경비처우 신입심사 영역별 생존분석

경비처우 신입심사를 구성하는 4개 영역을 모두 투입하여 생존 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 영역점수의 회귀계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위험성 및 개선도 평가' 영역은 점수가 높을수록 재범위험성이 감소한다는 예측 결과가 나타났다. 각 영역을 개별적으로 투입한 생존 분석 결과는 〈표 3-41〉에 제시하였다.

[표 3-40] 경비처우 신입심사 영역별 생존분석 (모든 영역 투입 시)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위험비	z	p
본 범죄 관련사항	3.213	0.195	1.215	7.601	〈 0.001
과거 범죄 관련사항	6.691	0.592	1.808	22.647	〈 0.001
위험성 및 개선도 평가	1.191	-0.069	0.933	-2.782	〈 0.010
도주 또는 위반	0.869	0.052	1.053	2.571	〈 0.050

N = 9,929

[표 3-41] 경비처우 신입심사 영역별 생존분석 (각 영역 하나씩 투입 시)

모형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위험비	z	p
1	본 범죄 관련사항	3.213	0.441	1.554	21.058	〈 0.001
2	과거 범죄 관련사항	6.691	0.677	1.967	29.870	〈 0.001
3	위험성 및 개선도 평가	1.191	0.068	1.071	2.621	〈 0.010
4	도주 또는 위반	0.869	0.175	1.192	8.986	〈 0.001

N = 9,929

사. 경비처우 신입심사 동적/정적 요인별 생존분석

경비처우 신입심사의 동적/정적 요인점수를 모두 투입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표 3-42〉에, 개별적으로 투입한 결과는 〈표 3-43〉에 제시하였다. 〈표 3-42〉에서 볼 수 있듯이 동적 요인 점수는 회귀 계수가 음수로 추정되었다.

[표 3-42] 경비처우 신입심사 동적/정적 요인별 생존분석 (모든 요인 투입 시)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위험비	z	p
동적 요인	1.191	-0.078	0.925	-3.158	〈 0.010
정적 요인	8.950	0.720	2.054	30.236	〈 0.001

N = 9,929

[표 3-43] 경비처우 신입심사 동적/정적 요인별 생존분석 (각 요인 하나씩 투입 시)

모형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위험비	z	p
1	동적 요인	1.191	0.068	1.071	2.621	〈 0.010
2	정적 요인	8.950	0.699	2.012	30.758	〈 0.001

N = 9,929

바. 와 사.를 종합하면, 앞선 로지스틱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위험성 및 개선도 평가'라는 '동적 요인' 점수는 수집 절차와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 경비처우 신입심사 문항별 생존분석

신입심사를 구성하는 문항 16개를 모두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11개 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표 3-44〉 참고), 해당 11개 문항으로 생존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45〉에 제시하였다. 〈표 3-46〉은 신입심사 구성 문항을 개별적으로 투입하여 분석한 것이다. '흉기사용점수', '전체형기점수'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하였다. 〈표 3-44〉와 〈표 3-45〉에서 '초중범죄중범죄유무점수', '개선가능성점수'의 계수는 음수로 추정된 바, 두 문항에 해당하는 점수가 수집되는 과정,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3-44] 경비처우 신입심사 문항별 생존분석 (모든 문항 투입 시)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위험비	z	p
흉기사용점수	0.511	-0.025	0.976	-0.924	= 0.356
범죄동기점수	0.244	0.090	1.094	2.635	〈 0.010
범죄심각성점수	1.915	0.159	1.173	3.855	〈 0.001
전체형기점수	1.558	0.109	1.116	3.024	〈 0.010
미결태도점수	2.044	0.020	1.020	0.844	= 0.399
재범기간점수	1.623	0.215	1.239	6.840	〈 0.001
범법행위건수점수	3.503	0.112	1.119	3.076	〈 0.010
최초경찰입건연령점수	1.103	0.153	1.165	6.257	〈 0.001
교정시설총수용기간점수	2.347	0.260	1.296	8.242	〈 0.001
과거수용중징벌점수	1.258	0.121	1.129	5.143	〈 0.001
초중범죄중범죄유무점수	0.846	-0.081	0.922	-3.614	〈 0.001
COREPI동적평가점수	0.723	0.050	1.051	2.022	〈 0.050
문제행동가능성점수	0.704	-0.025	0.976	-0.921	= 0.357
개선가능성점수	1.010	-0.231	0.793	-5.216	〈 0.001
도주자살시도점수	0.373	0.015	1.015	0.712	= 0.476
집유실효등점수	0.781	0.032	1.033	1.604	= 0.109

N = 9,929

[표 3-45] 경비처우 신입심사 문항별 생존분석 (모든 문항 투입 시)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위험비	z	p
범죄동기점수	0.244	0.096	1.101	2.833	〈 0.010
범죄심각성점수	1.915	0.159	1.172	3.895	〈 0.001
전체형기점수	1.558	0.104	1.110	2.897	〈 0.010
재범기간점수	1.623	0.216	1.242	6.910	〈 0.001
범법행위건수점수	3.503	0.113	1.120	3.114	〈 0.010
최초경찰입건연령점수	1.103	0.154	1.166	6.300	〈 0.001
교정시설총수용기간점수	2.347	0.261	1.298	8.350	〈 0.001
과거수용중징벌점수	1.258	0.120	1.128	5.283	〈 0.001
초중범죄중범죄유무점수	0.846	-0.083	0.920	-3.706	〈 0.001
COREPI동적평가점수	0.723	0.050	1.052	2.118	〈 0.050
개선가능성점수	1.010	-0.227	0.797	-5.247	〈 0.001

N = 9,929

[표 3-46] 경비처우 신입심사 문항별 생존분석 (각 문항 하나씩 투입 시)

모형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위험비	z	p
1	흉기사용점수	0.511	-0.005	0.995	-0.210	= 0.834
2	범죄동기점수	0.244	0.123	1.131	3.736	〈 0.001
3	범죄심각성점수	1.915	0.133	1.142	4.744	〈 0.001
4	전체형기점수	1.558	0.051	1.053	1.956	= 0.050
5	미결태도점수	2.044	0.151	1.163	7.027	〈 0.001
6	재범기간점수	1.623	0.563	1.756	23.600	〈 0.001
7	범법행위건수점수	3.503	0.572	1.772	20.425	〈 0.001
8	최초경찰입건 연령점수	1.103	0.391	1.479	18.464	〈 0.001
9	교정시설총 수용기간점수	2.347	0.574	1.776	29.115	〈 0.001
10	과거수용중 징벌점수	1.258	0.433	1.542	23.688	〈 0.001
11	초중범죄중 범죄유무점수	0.846	0.209	1.232	11.053	〈 0.001
12	COREPI 동적평가점수	0.723	0.327	1.387	16.057	〈 0.001
13	문제행동 가능성점수	0.704	0.273	1.313	13.044	〈 0.001
14	개선가능성점수	1.010	-0.750	0.473	-19.064	〈 0.001
15	도주자살시도점수	0.373	0.042	1.043	2.034	〈 0.050
16	집유실효등점수	0.781	0.176	1.192	9.007	〈 0.001

N = 9,929

자. 경비처우 재심사 하위항목별 생존분석

〈표 3-47〉은 경비처우 재심사 하위항목을 생존분석에 모두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이 때 '재범가능점수', '문제행동가능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문제행동가능점수'는 음의 계수로 추정되었다. 두 항목을 사용하여 재분석한 결과는 〈표 3-48〉에 제시하였다.

[표 3-47] 경비처우 재심사 하위항목별 생존분석 (모든 문항 투입 시)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승산비	z	p
재범가능점수	1.173	1.063	2.895	7.036	〈 0.001
교정처우성과점수	0.539	-0.045	0.956	-0.322	= 0.748
형집행기간점수	0.065	-0.663	0.515	-0.003	= 0.998
교정성적점수	0.908	0.111	1.118	0.794	= 0.427
문제행동가능점수	0.901	-0.274	0.760	-2.021	〈 0.05
징벌관련점수	0.457	0.127	1.135	1.324	= 0.185
개별처우고려점수	0.767	-0.110	0.896	-0.747	= 0.455

N = 1,173

[표 3-48] 경비처우 재심사 하위항목별 생존분석 (모든 문항 투입 시)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승산비	z	p
재범가능점수	1.173	1.069	2.912	7.122	〈 0.001
문제행동가능점수	0.901	-0.229	0.795	-1.782	= 0.075

N = 1,173

〈표 3-49〉는 재심사 하위항목을 개별적으로 투입한 결과이며, '재범가능점수'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9] 경비처우 재심사 하위항목별 생존분석 (각 문항 하나씩 투입 시)

모형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위험비	z	p
1	재범가능점수	1.173	1.009	2.742	6.909	〈 0.001
2	교정처우성과점수	0.539	0.055	1.057	0.406	= 0.684
3	형집행기간점수	0.065	-0.717	0.488	-0.004	= 0.997
4	교정성적점수	0.908	0.139	1.149	1.079	= 0.281
5	문제행동가능점수	0.901	0.001	1.001	0.007	= 0.994
6	징벌관련점수	0.457	0.143	1.154	1.656	= 0.098
7	개별처우고려점수	0.767	-0.074	0.928	-0.492	= 0.623

N = 1,173

6. REPI 분류심사의 출소 후 재범까지 기간 예측력 확인

가. REPI 최종 등급의 생존분석

REPI 최종등급을 사용하여 생존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3-50〉에 제시하였다. RPEI 등급이 높을수록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5〉는 누적위험함수와 생존함수를 나타낸다.

[표 3-50] REPI 최종 등급의 생존분석

(준거 집단: REPI 1급)

변수	분석 변수 의미	회귀계수	위험비	z	p
2급	1급과 2급의 위험성 비교	1.029	2.797	3.981	〈 0.001
3급	1급과 3급의 위험성 비교	1.918	6.807	7.735	〈 0.001
4급	1급과 4급의 위험성 비교	2.728	15.307	11.042	〈 0.001
5급	1급과 5급의 위험성 비교	3.266	26.198	13.285	〈 0.001

N = 9,929

[그림 3-15] REPI 최종 등급별 생존분석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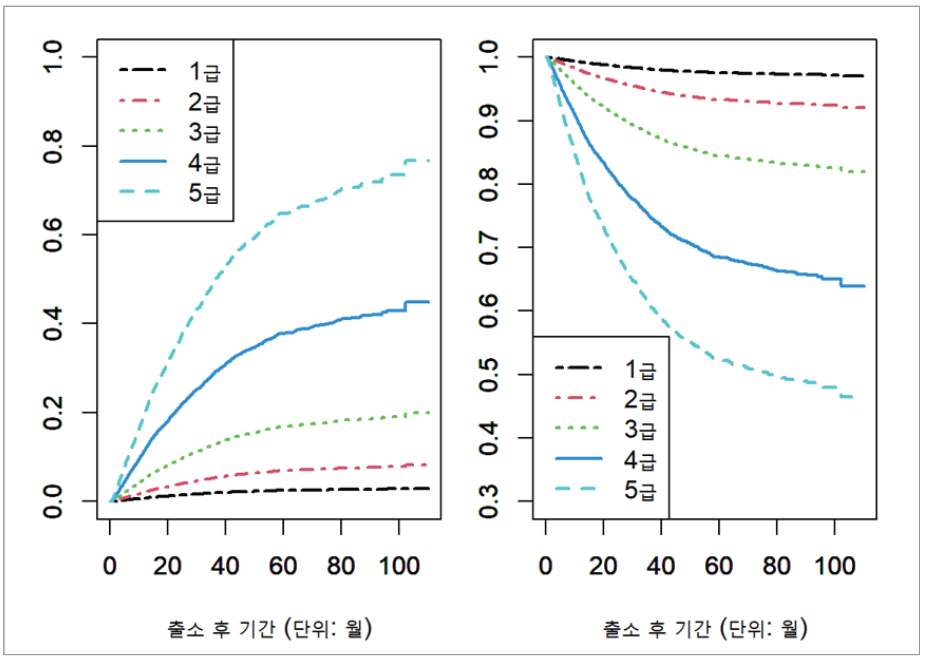

(좌) 경비처우 등급별 누적위험함수(cumulative hazard function)
(우) 경비처우 등급별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

나. REPI 신입심사 등급의 생존분석

신입심사 등급으로 생존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3-51〉에 제시하였다. 신입심사 역시 등급이 높아질수록 재범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6〉는 누적위험함수와 생존함수를 나타낸다.

[표 3-51] REPI 신입심사 등급의 생존분석

(준거 집단: REPI 1급)

변수	분석 변수 의미	회귀계수	위험비	z	p
2급	1급과 2급의 위험성 비교	1.041	2.833	3.566	〈 0.001
3급	1급과 3급의 위험성 비교	1.895	6.652	6.717	〈 0.001
4급	1급과 4급의 위험성 비교	2.725	15.261	9.685	〈 0.001
5급	1급과 5급의 위험성 비교	3.287	26.755	11.728	〈 0.001

N = 9,929

[그림 3-16] REPI 신입심사 최종 등급별 생존분석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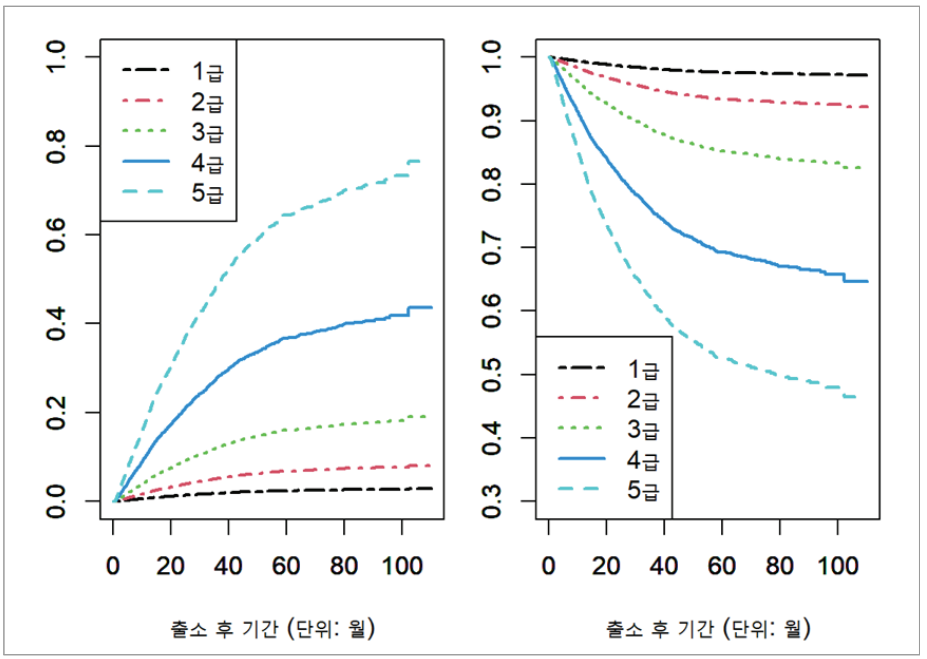

(좌) 경비처우 등급별 누적위험함수(cumulative hazard function)
(우) 경비처우 등급별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

다. REPI 재심사 등급의 생존분석

재심사 등급으로 생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52〉에 제시하였다. REPI 재심사 1급과 2급은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3급 이상의 REPI 재심 등급은 1급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 3-17〉은 누적위험함수와 생존함수를 나타낸다.

[표 3-52] REPI 재심사 등급의 생존분석

(준거 집단: REPI 1급)

변수	분석 변수 의미	회귀계수	위험비	z	p
2급	1급과 2급의 위험성 비교	0.964	2.623	1.686	= 0.092
3급	1급과 3급의 위험성 비교	1.410	4.095	2.486	〈 0.05
4급	1급과 4급의 위험성 비교	2.539	12.667	4.726	〈 0.001
5급	1급과 5급의 위험성 비교	2.962	19.343	5.467	〈 0.001

N = 1,911

[그림 3-17] REPI 재심사 등급별 생존분석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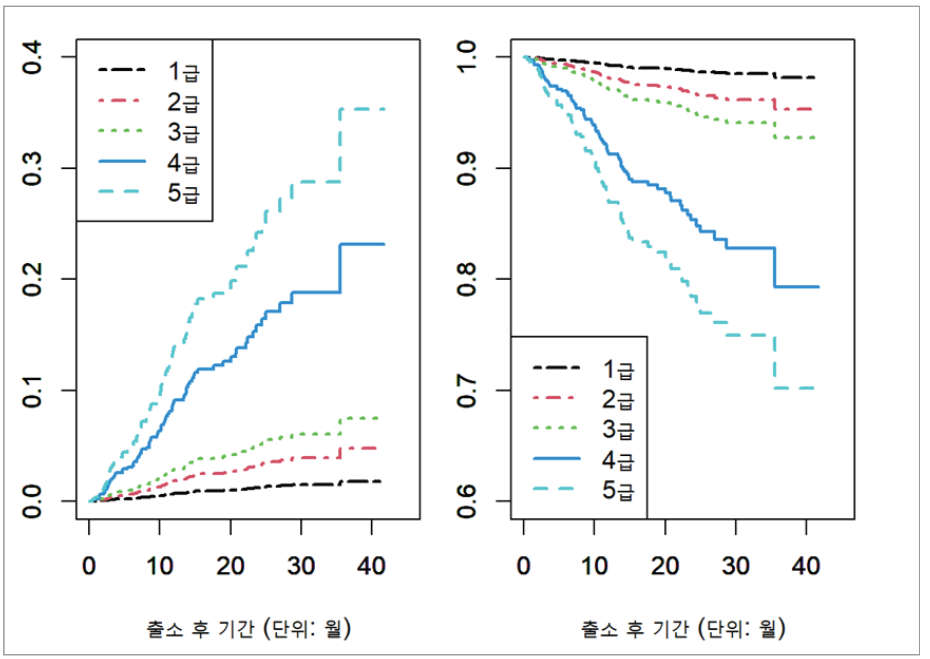

(좌) 경비처우 등급별 누적위험함수(cumulative hazard function)
(우) 경비처우 등급별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

라. REPI 신입심사 총 점수의 생존분석

REPI 신입심사 총점을 표준화하여 생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점이 1 표준편차 증가할수록 재범위험성은 2.123배씩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3-53] REPI 신입심사 총 점수의 생존분석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위험비	z	p
총 점수	6.368	0.753	2.123	33.392	〈 0.001

N = 9,929

마. REPI 재심사 총 점수의 생존분석

REPI 재심사 총점을 표준화하여 생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점이 1 표준편차 증가할수록 재범위험성은 1.419배씩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3-54] REPI 재심사 총 점수의 생존분석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위험비	z	p
총 점수	2.678	0.350	1.419	3.597	〈 0.001

N = 1,911

바. REPI 신입심사 동적/정적 요인별 생존분석

신입심사 동적/정적 요인점수를 모두 사용하여 생존분석에 투입한 결과는 〈표 3-55〉에, 각 요인을 개별적으로 투입한 결과는 〈표 3-56〉에 제시하였다.

[표 3-55] REPI 신입심사 동적/정적 요인별 생존분석 (모든 요인 투입 시)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위험비	z	p
동적 요인	3.085	0.128	1.136	4.170	〈 0.001
정적 요인	4.088	0.676	1.966	24.708	〈 0.001

N = 9,929

[표 3-56] REPI 신입심사 동적/정적 요인별 생존분석 (각 요인 하나씩 투입 시)

모형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위험비	z	p
1	동적 요인	3.085	0.574	1.775	23.315	〈 0.001
2	정적 요인	4.088	0.746	2.109	34.689	〈 0.001

N = 9,929

정적요인을 구성하는 4가지 하위요인과 동적요인을 모두 투입하면 정적 요인 중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3-57〉 참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하위요인만으로 재분석한 결과는 〈표 3-58〉에 제시하였다. 정적요인의 하위요인을 개별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3-59〉에 제시하였다.

[표 3-57] REPI 신입심사 동적/정적 하위 요인별 생존분석 (모든 요인 투입 시)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위험비	z	p
동적 요인: 위험성평가		3.085	0.126	1.134	4.091	〈 0.001
정적 요인	사회인구학적 요인	0.479	0.006	1.006	0.191	= 0.849
	본범관련사항	1.076	0.282	1.326	9.857	〈 0.001
	과거범죄관련사항	3.303	0.532	1.703	20.46	〈 0.001
	도주 또는 위반	0.495	0.052	1.053	2.354	〈 0.050

N = 9,929

[표 3-58] REPI 신입심사 동적/정적 하위 요인별 생존분석 (모든 요인 투입 시)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위험비	z	p
동적 요인: 위험성평가		3.085	0.127	1.135	4.131	〈 0.001
정적 요인	본범관련사항	1.076	0.283	1.327	10.009	〈 0.001
	과거범죄관련사항	3.303	0.532	1.703	20.517	〈 0.001
	도주 또는 위반	0.495	0.052	1.053	2.352	〈 0.050

N = 9,929

[표 3-59] REPI 신입심사 정적 하위 요인별 생존분석 (각 요인 하나씩 투입 시)

모형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위험비	z	p
1	사회인구학적 요인	0.479	0.249	1.283	8.537	〈 0.001
2	본범관련사항	1.076	0.498	1.646	20.871	〈 0.001
3	과거범죄관련사항	3.303	0.681	1.976	33.369	〈 0.001
4	도주 또는 위반	0.495	0.313	1.368	15.192	〈 0.001

N = 9,929

사. REPI 신입심사 문항별 생존분석

신입심사를 구성하는 23 문항을 모두 생존분석에 투입한 결과 총 14개 문항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3-60〉 참고), 해당 14개 문항으로만 재분석한 결과는 〈표 3-61〉과 같다. 두 분석에서 모두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점수'의 계수는 음수로 추정되었다.

[표 3-60] REPI 신입심사 문항별 생존분석 (모든 문항 투입 시)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위험비	z	p
성별점수	0.286	0.103	1.108	2.753	〈 0.010
죄명점수	0.770	0.247	1.280	8.935	〈 0.001
피해자관계점수	0.497	0.250	1.284	8.276	〈 0.001
범죄시정신상태점수	0.431	-0.014	0.986	-0.488	= 0.626
본건및과거징벌점수	0.862	0.110	1.116	4.833	〈 0.001
이전범죄전체형기점수	0.930	0.079	1.082	2.557	〈 0.050
동일유사죄명 경력횟수점수	0.825	0.274	1.315	7.963	〈 0.001
최초형확정연령대점수	0.728	0.087	1.091	2.740	〈 0.010
재범기간점수	0.062	-0.010	0.990	0.000	= 1.000
이전범죄출소연령대점수	0.968	0.093	1.098	3.078	〈 0.010
집행유예 취소실효횟수점수	0.495	0.050	1.051	2.187	〈 0.050
동거횟수점수	0.028	-0.260	0.771	-0.004	= 0.997
학창시절처벌경험점수	0.432	0.070	1.073	2.569	〈 0.050
범죄시직업점수	0.276	2.526	12.507	0.021	= 0.983
입소전경제상태점수	0.056	-0.563	0.570	-0.007	= 0.995
입소전거주상태점수	0.043	-0.383	0.682	-0.004	= 0.997
정신병원치료경력점수	0.304	0.028	1.028	1.150	= 0.250
학력점수	0.096	-1.100	0.333	-0.012	= 0.990
출소후재범환경점수	0.739	0.117	1.124	4.055	〈 0.001
공권력태도점수	0.925	0.029	1.030	0.939	= 0.348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점수	1.040	-0.116	0.890	-3.765	〈 0.001
비행성향점수	1.194	0.093	1.098	2.977	〈 0.010
포기성향점수	1.103	0.073	1.075	2.633	〈 0.010

N = 9,929

[표 3-61] REPI 신입심사 문항별 생존분석 (모든 문항 투입 시)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위험비	z	p
성별점수	0.286	0.102	1.107	2.730	〈 0.010
죄명점수	0.770	0.249	1.283	9.096	〈 0.001
피해자관계점수	0.497	0.248	1.282	8.301	〈 0.001
본건및과거징벌점수	0.862	0.119	1.126	5.493	〈 0.001
이전범죄전체형기점수	0.930	0.076	1.079	2.482	〈 0.050
동일유사죄명 경력횟수점수	0.825	0.276	1.317	8.018	〈 0.001
최초형확정연령대점수	0.728	0.087	1.091	2.735	〈 0.010
이전범죄출소연령대점수	0.968	0.095	1.100	3.156	〈 0.010
집행유예 취소실효횟수점수	0.495	0.048	1.049	2.124	〈 0.050
학창시절처벌경험점수	0.432	0.072	1.074	2.619	〈 0.010
출소후재범환경점수	0.739	0.120	1.128	4.185	〈 0.001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점수	1.040	−0.113	0.893	−3.869	〈 0.001
비행성향점수	1.194	0.096	1.101	3.055	〈 0.010
포기성향점수	1.103	0.076	1.079	2.765	〈 0.010

N = 9,929

〈표 3-62〉는 신입 심사 문항을 개별적으로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이전 분석에서 유의하였던 14개 문항과 '정신병원치료경력점수', '공권력태도점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2] REPI 신입심사 문항별 생존분석 (각 문항 하나씩 투입 시)

모형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위험비	z	p
1	성별점수	0.286	0.204	1.227	6.013	〈 0.001
2	죄명점수	0.770	0.412	1.509	18.669	〈 0.001
3	피해자관계점수	0.497	0.417	1.517	14.706	〈 0.001
4	범죄시정신상태점수	0.431	0.028	1.029	1.106	= 0.269
5	본건및과거 징벌점수	0.862	0.417	1.518	23.210	〈 0.001
6	이전범죄 전체형기점수	0.930	0.533	1.703	28.292	〈 0.001
7	동일유사죄명 경력횟수점수	0.825	0.681	1.976	28.414	〈 0.001
8	최초형확정 연령대점수	0.728	0.455	1.577	19.686	〈 0.001
9	재범기간점수	0.062	-0.649	0.523	-0.021	= 0.983
10	이전범죄 출소연령대점수	0.968	0.407	1.503	20.062	〈 0.001
11	집행유예 취소실효횟수점수	0.495	0.313	1.368	15.192	〈 0.001
12	동거횟수점수	0.028	-0.243	0.784	-0.018	= 0.986
13	학창시절 처벌경험점수	0.432	0.349	1.418	15.771	〈 0.001
14	범죄시직업점수	0.276	2.553	12.843	0.026	= 0.980
15	입소전경제상태점수	0.056	-0.558	0.572	-0.028	= 0.978
16	입소전거주상태점수	0.043	-0.384	0.681	-0.019	= 0.984
17	정신병원 치료경력점수	0.304	0.122	1.130	5.396	〈 0.001
18	학력점수	0.096	-1.157	0.314	-0.023	= 0.982
19	출소후 재범환경점수	0.739	0.500	1.649	18.468	〈 0.001
20	공권력태도점수	0.925	0.330	1.391	11.905	〈 0.001
21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점수	1.040	0.202	1.224	7.948	〈 0.001
22	비행성향점수	1.194	0.398	1.489	16.769	〈 0.001
23	포기성향점수	1.103	0.412	1.510	17.582	〈 0.001

N = 9,929

아. REPI 재심사 하위항목별 생존분석

REPI 재심사를 구성하는 6개 하위 항목을 동시 투입한 생존분석 결과는 〈표 3-63〉에, 개별적으로 투입한 결과는 〈표 3-64〉에 제시하였다. 두 분석 모두에서 경비처우점수'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3-63] REPI 재심사 하위항목별 생존분석 (모든 문항 투입 시)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승산비	z	p
경비처우점수	0.574	0.372	1.450	2.944	〈 0.01
교정처우성과점수	0.690	0.033	1.033	0.257	= 0.797
형집행기간점수	0.000				
교정성적점수	1.221	0.059	1.061	0.496	= 0.620
징벌관련점수	1.062	0.011	1.011	0.092	= 0.927
벌금미납추가형점수	0.665	0.099	1.104	1.119	= 0.263

N = 1,911

[표 3-64] REPI 재심사 하위항목별 생존분석 (각 문항 하나씩 투입 시)

모형	변수	표준편차	회귀계수	위험비	z	p
1	경비처우점수	0.574	0.419	1.521	4.065	〈 0.001
2	교정처우성과점수	0.690	0.121	1.128	0.988	= 0.323
3	형집행기간점수	0.000				
4	교정성적점수	1.221	0.228	1.256	2.153	〈 0.05
5	징벌관련점수	1.062	0.235	1.265	2.514	〈 0.05
6	벌금미납추가형점수	0.665	0.158	1.171	1.857	= 0.063

N = 1,911

7. 결론 및 제언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비 처우급 분류 지표와 교정재범 예측지표(REPI)는 재범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러 분석 결과, 두 지표를 구성하는 영역과 항목들은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대부분 점수가 높을수록 재범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만, 몇몇 변수들의 경우, 특히 심리 평가 관련 변수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재범 가능성이 더 낮을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평가 의도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이다. 따라서, 해당 항목의 점수가 수집된 과정, 점수의 신뢰도와 타당도 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당 점수의 예측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심리 평가 점수는 궁극적으로 분류 및 재범 예측 지표의 재범 예측 타당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제2절 | 실무적 판단을 통한 분류지표 검증

1. 조사개요

분류지표의 실행 및 운영과정에서 실무자가 느끼는 문제점과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통계적으로 경비처우급지표와 교정재범예측지표의 타당성을 확인한 결과를 실무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교정본부 실무자 및 외부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분류지표의 운영에 대한 지적과 재범으로 분류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한 통계적 결과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자 한다.

교정본부 실무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법무부 분류심사과 '지표개선 TF'와 정기적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표개선 TF'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분류지표의 개선을 위해 구성된 팀으로 각 교도소 분류심사과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표개선 TF'의 의견이 전체 분류심사과 실무자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가정하였다. 경비처우급지표와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운영상 문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2021년 6월 16일, 7월 7일 총 2회에 걸쳐 실무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법무부 소속 사무관 1인 및 교관 1인과 교정청 등에 소속되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감 2인 및 교위 2인과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통계분석 결과에 대한 실무자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2021년 12월 2일, 법무부 소속 사무관 1인 및 교관 1인과 교정청 소속 교감 2인 및 교위 2인에게 타당성 검증 결과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2. 분류심사 실무자 의견조사

가.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의 문제점

먼저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의 사용과 운영과정에서 느끼는 문제점에 대한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의 문제점은 크게 과거 범죄력의 비중이 지나친 점, 동적요인의 내용타당도가 낮은 점, 획일화된 재심사지표를 사용하고 있는 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해석되는 점, 경비등급과 처우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이었다.

[표 3-65] 경비처우등급의 문제점

쟁점	내용
과거 범죄력의 지나친 비중	• 과거범죄관련 사항에 대한 점수배정이 커 낮은 경비등급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거 범죄력이 있는 수형자들의 점수가 과대 추정되며, 이들의 낮은 시설수용상의 위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문항이 부재함
동적요인의 낮은 내용타당도	• 동적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이 실제 측정하려는 내용을 측정하지 못하는 문제 • 주관적 판단 시 업무 담당 직원들의 부담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동적요인을 정적요인화 함
재심사지표의 획일화	• 동적요인을 신입심사 시에만 측정하고 재심사 판단항목에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재심사 시에는 수형자들의 수형생활을 기준으로 처우성과와 태도로 측정함 • 소득점수로 구성되어있는 재심사지표가 교정의 효과를 모두 담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	• 재범예측지표로 해석되는 문제
경비등급과 처우의 혼재	• 현재의 등급은 수용관리 뿐 아니라 처우와 관련한 작업이나 관리, 교육 등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지 못함. • 시설은 경비등급으로 설치되어있으나 모든 등급의 수형자가 한 시설에 수용되고 있음

1) 과거 범죄력의 지나친 비중

실무자는 경비처우급 분류지표가 과거 범죄력에 많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점이 지나치게 처벌적이라고 지적한다.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는 교도소 내의 경비 및 처우 수준을 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사되는데 과연 과거 범죄 관련 사항이 이들의 도주 등의 위험성과 수형생활 내의 처우를 결정하는데 유의한 도움이 되는지와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전체 점수의 35%를 차지할 만큼의 유의함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 범죄력은 이론적으로는 분류지표에 포함되는 것이 옳다. 따라서, 과거 범죄력을 구성하는 문항의 재범예측력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교차 확인하여 중복되는 문항을 줄이고 반드시 필요한 문항만을 가려내어 비중을 줄이는 것이 대안적으로 요구된다.

2) 동적요인의 낮은 내용타당도

다음으로 동적요인 중 문제행동가능성점수, 개선가능성점수가 실제 측정하려는 내용을 측정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즉, 동적 요인의 내용타당도가 낮다는

것이다. 동적요인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관찰 시간과 평가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신입심사를 실시하는 직원은 임상적인 훈련을 받은 임상심리사만이 아니며, 일정기간동안 평가 방법에 대한 훈련을 받은 교정직원 전체이다.[19] 문제행동가능성과 개선가능성 항목은 각각 수용생활 중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과 수형자의 범죄성향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는 항목이었다. 그러나 주관적인 평가에 대한 교정관의 부담으로 정형화된 몇 가지 기준에 부합하면 동적요인을 낮음, 보통, 높음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변화하였다. 예를 들어, 개선가능성 항목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는 수용횟수와 현재 및 과거 수용생활 중 징벌사항이 포함된다. 이 기준은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의 다른 항목과 내용이 중복되고(범법행위건수, 교정시설 총 수용기간, 미결시 태도, 과거수용 중 징벌 관련 등), 수용횟수와 과거 수용생활 중 징벌사항이 과연 수형자의 개선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만약 초범인 수형자의 경우에는 과거 수용기록이 없으므로 낮은 점수(개선가능성 높음)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즉, 폭력적인 성향이 강하며, 판결에 대한 불만이 많아 범죄성향의 진전도가 낮은 수형자라도 현행 지표로는 초범이라면 교정시설 내에서의 개선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될 것이다. 이처럼 수형자의 태도와 위험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이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적 요인들에 대해 내용 타당도가 높은 평가기준을 다시 세우거나, 동적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문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3) 재심사지표의 획일화

소득점수로 구성되어있는 재심사지표가 교정의 효과를 모두 담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하였다.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해서 교정기관은 심리치료나 직업훈련, 교육 등 다양한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재심사지표는 재사회화를

---

19) 전문적으로 분류심사를 실시할 전문가가 부재하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분류심사지표 도입 초기에는 분류심사 업무를 위한 전문가를 채용하여 수형자를 심사하였으나 조직의 변화로 현재에는 모든 교정직원이 분류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분류심사 직무교육으로 직원을 양성하며, 법무연수원에서 1년에 한번(약 1주일) 교육 후 투입하고 있다. 문제는 주관적 판단을 요구하는 동적요인들을 평가함에 있어 전문가가 아닌 일반 내부직원들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동적요인을 평가하는 항목이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매뉴얼화되어 동적요인의 기능이 사라지는 문제가 새로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적요인의 기능을 되살린다면 과연 분류심사는 누가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록이나, 참여태도, 참여효과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오직 학위나 자격증, 수상과 같은 기록을 교정처우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더불어 그 밖의 평가항목도 잔여 형 집행기간이나 교정성적, 문제행동 가능성(도주 및 자살 시도나 직원과 수형자에 대한 폭행·협박 여부 등), 징벌관련 사항 등만을 고려하고 있어 수형자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동적요인이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다.

4)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

실무자들은 경비처우급 분류지표가 개발목적에 부합되게 해석되지 못하고 있는 인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형생활을 위한 경비등급과 수형자의 처우등급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를 교정재범예측지표와 함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고 예측하는 지표로 통용되어 해석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5) 경비등급과 처우의 혼재

마지막으로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는 과거 경비급 분류지표와 처우급 분류지표로 분리되어있던 두 지표를 심사시간의 절약 등을 위해 통합하게 되면서 하나의 등급으로 경비와 처우 수준을 판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각 교도소는 하나의 경비등급을 가지고 해당 등급에 해당하는 경비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 시설에 경비처우등급 S1부터 S4가 모두 수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래 각 급의 시설에 각 급의 수형자만을 수용하려 하였으나 특정 프로그램이나 교육 이수, 시설 수의 부족 등의 문제로 현재 모든 등급이 혼재된 채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주교도소는 S2시설이지만 집중인성교육을 실시하는 지정시설이다. 이에 집중인성교육을 받아야 하는 수형자들은 등급에 상관없이 해당 시설로 이송을 하게 되므로 모든 등급의 수형자가 섞여 수용되게 된다. 교육을 마친 후에 본 교도소로 돌아가도록 관리되고 있지만, 교육기간 및 수형자 이송 등 여러 가지 쟁점에 의해 짧게는 한 달에서 길면 1년 반까지 등급에 맞지 않는 시설에서 기거하며 형기의 일정 기간을 보내게 된다.

교정시설 내의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에 따라 수용자가 필요에 따라 이송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사실상 시설 간 경비수준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용자가 어느 시설에 수용되던 분류지표를 통해 경비처우수준을 정확히 지정하여 특정 시설 내에서 분류하고, 통제와 처우의 수준을 등급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나. 교정재범예측지표의 문제점

〈표 3-66〉은 실무자 및 외부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취합한 교정재범예측지표의 문제점과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에서 교정재범예측지표의 개선안을 위해 서울지방교정청 소속기관의 실무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쟁점별로 재구성한 것이다. 교정재범예측지표는 앞서 언급한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와 동일한 문제점(개발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 과거 범죄력의 지나친 비중)과 그 외에 미래에 대한 무리한 예측, 인권침해 및 차별적 요소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표 3-66] 교정재범예측지표의 문제점

쟁점	내용
1. 과거 범죄력의 지나친 비중	- 최초 형 확정 연령대, 이전범죄 출소연령대, 학창시절 처벌 경험 등 과거 범죄기록에 치중되어 있으며, 재사회화에 관련한 요인이 미흡함
2. 피해자에 대한 불합리한 평가	- 피해자가 없는 범죄나 피해자가 있으나 아는 사람일 경우에 모두 0점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3. 학창시절 처벌경험의 형평성	- 학창시절 처벌경험 문항에서 처벌 종류에 관계없이 처벌경험의 유무로 판단하는 것은 다수 처벌 경험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음 - 범죄에 대한 처벌로 학창시절 처벌경험을 국한할 경우, 범죄경력에 대한 다른 문항 점수와 중복 산출되어 10대 범죄자에 대한 위험성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될 수 있음.
4. 미래에 대한 무리한 예측 (가점 적용범위의 과도함)	- 신입심사 시점에서 출소 후 재범환경 변수를 통해 재범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임 - 범죄시 주취상태 등 범죄 당시의 정신 상태를 출소 후 재범예측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5. 교정심리검사 결과 반영의 적합성	- 정직하게 심리검사에 임한 수형자보다 가식적으로 검사에 임한 수형자가 더 좋은 REPI등급을 받는 경향 - T점수 구간이 지나치게 좁게 설정되어 있으며, 허위수치 반영이 미흡함 - 비행성향, 포기성향 등을 평가한 교정심리검사 결과로 출소 후 재범을 예측하여 미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 - 심리전문가의 직업윤리 문제와 상충되어 정신/심리적 문제를 치유하고 돕는 것에 국한되어야하나 사회통제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비판 제기

쟁점	내용
6. 인권침해 및 차별적 요소	- 성별을 재범 지표로 삼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향후 재범예측지표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시 지표의 차별성이 문제될 우려 제기 - 동거는 현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석방시 보호관계 있음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해당 항목 삭제 고려 - 재소자들은 학력이나 경제사정 등에 대한 문항이 인권침해를 유발한다고 문제를 제기함
7. 사회경제적 지위의 반복평가	- 학력, 입소전 직업, 입소전 경제상태 및 입소전 거주상태 등 비슷한 사회경제적 개념을 반복적으로 측정함
8. 수용생활 전반을 통한 생활태도 및 처우성과 반영 미흡	- 재심사지표에서 수용생활태도, 상벌유무, 교육 및 작업성과 등과 같은 교정성적을 미흡하게 반영하고 있음(소득점수로 반영)
9.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	- 재범위험성 예측 및 처우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CO-REPI가 개발되었으나 현재 가석방 검토 시에만 활용되고 있음 - 위험성 평가(경비처우급 결정) 및 처우프로그램 활용에 미흡
10. 평가자 의견 반영의 어려움	- 대부분의 항목이 정적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평가자 의견 등 동적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재심사지표에는 동적요인이 부재함 - 적은 수의 동적요인도 매뉴얼화 되어있어 정적요인처럼 점수가 부여되고 있는 상황임 - 평가자 외 보안과 직원들이 수형자와 함께 지내면서 발견하게 되는 동적요인들을 신입심사 시에는 반영하기 어려움
11. 자기보고식 문항의 낮은 신뢰도	- 수형자의 진술로 평가하므로 허위보고의 가능성이 높음

자료: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2021.4.)

1) 과거 범죄력의 지나친 비중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와 동일하게, 교정재범예측지표도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문항이 과거 범죄기록에 치중되어 재범위험성을 평가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최초 형확정 연령대, 이전범죄 출소연령대, 학창시절 처벌 경험 등 전체 23문항 중 6문항이 과거 범죄기록에 치중되어 있는 반면, 재사회화와 관련한 내용을 측정하는 문항은 한정적이다. 앞서 소개한 LS/CMI와 PATTERN의 경우에는 위험성과 동시에 욕구를 함께 측정하여 수형자의 재사회화 가능성을 평가한다. 전과기록이 재범을 강력하게 예측하는 점은 주지하고 있으나 해당 지표가 가석방 심사에 활용되고 있는 만큼, 수형자의 재범기록의 비중을 축소하고 이들의 수용생활동안의 개선정도나 재사회화 가능성을 측정하는 동적 요인을 추가하는 편이 더 유용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2) 피해자에 대한 불합리한 평가

피해자에 대한 문항의 평가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현재 교정재범 예측지표의 피해자 문항은 피해자가 아는 사람이거나 피해자가 없는 등 해당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일 경우 1점을 부여한다. 실무자들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와 피해자가 있는 범죄(아는 사이)가 동일 선상에서 0점을 부여받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사실, 해외의 재범위험성 도구들을 보면 범죄자의 재범위험성에 대한 판단에서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 비친족 범죄가 더 위험요인이며, 동일범죄에서 해당 피해자가 많을 경우 가중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친족여부나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해서 좀 더 세부적인 범주를 만들 필요는 있어 보인다.

3) 학창시절 처벌경험의 형평성

학창시절 처벌경험 문항은 처벌 종류에 관계없이 처벌경험의 유무로 점수를 산정하고 있다. 실무자들은 1회 처벌자와 다수 처벌 경험자를 구분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부 실무자들은 처벌의 종류를 소년보호사건이나 형사처분에 국한하거나 처벌경험의 유무를 점수화하기보다는 처벌 횟수를 사용하여 점수화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일부 실무자들은 처벌의 종류를 소년보호사건이나 형사처벌에 국한할 경우에는 '최초 형확정 연령대'나 '본건 및 과거 징벌횟수' 등의 과거 범죄 경력과 중복되어 평가되어 10대 범죄자에 대한 위험성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미성년범죄자의 재범율은 성인범죄자의 재범율에 비해 안정적으로 높게 조사되므로(Britt, 2019; Benda, Corwyn, & Toombs, 2001) 10대 청소년의 재범위험성은 민감하게 측정되어야 할 영역이다. 따라서 해당 문항을 단순한 처벌경험에 국한하기 보다는 범죄의 진전도를 평가하는 등 문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실무자들은 제안한다.

4) 미래에 대한 무리한 예측(가점 적용범위의 과도함)

다음으로는 수형자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운 신입심사 시점에서 미래(재범)를 예측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지표는 입소 후 한 달 이내에 신입심사

를 실시하여 수형자의 출소 후 재범가능성을 판단한다. 문제는 재범위험성을 측정하는 문항 중 입소 전 경제 및 거주상태를 측정하거나 출소 후 재범환경을 확인하는 문항이 있다는 점이다. 비교적 짧은 형기를 사는 수형자의 경우에는 입소 전과 출소 후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통해 재범을 예측할 수 있겠으나 3년 이상의 형기를 사는 수형자의 경우에는 입소 시 예상하는 출소 후 환경으로 재범을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범죄시 음주, 약물복용, 화학물질 흡입 등의 상태였거나 정신질환과 같은 이유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였는지를 파악하여 출소 후 재범위험성을 예측하는 '범죄시 정신상태' 문항도 출소 후 재범을 예측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다. 실무자들은 범행 당시 정신상태의 정상 혹은 비정상을 측정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범죄와 상관이 높은 정신질환이나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등의 중독 증상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편이 더 효과적으로 재범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가점을 부여하는 적용범위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정신병원 치료경력(필요성)문항의 경우, 정신병력과 무관한 장애(예를 들어, 수면장애나 간질 등)로 인해 치료를 받은 수형자도 해당 문항에서 가점을 얻고 있다. 따라서 가벼운 우울이나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치료받은 경우에는 가점 기준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단순한 치료경력이나 필요성보다는 재범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진단명과 복용약물을 기준으로 재범을 예측하도록 문항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음주수준과 정신건강상태는 재범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김지선, 정슬기, 2015)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경우 정신질환자의 범죄가능성은 현저하게 감소하므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과 재범률은 일반인과 차이가 없거나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윤오, 2020; 서동우, 2003; 황성동, 1993). 따라서 일반적인 정신병원 치료경력까지 가점 범주에 포함하는 현재의 점수체계가 과도하다는 실무자의 지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5) 인권침해 및 차별적 요소

실무자와 인권운동가 사이에서 교정재범예측지표에 대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지적 중 하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대한 타당성으로, 성별이나 동거횟수, 학력, 경제사

정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인권침해 및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문항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을 재범 지표로 삼는 것은 남녀차별의 소지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인권운동가의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성별은 안정적으로 재범위험성을 예측하는 문항으로(Nagel & Hagan, 1983; Collins, 2010) 만약 성별을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여성 수형자의 재범위험성이 과잉 추정되는 역차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문항을 삭제하고, 남녀 수형자의 교정재범예측 등급 범위를 다르게 지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동거횟수 문항이 현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동거와 같은 가족관계는 가석방이나 출소 후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현재의 문항은 동거횟수가 많을수록 재범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평가하는 등 폭넓은 가족관계과 사회적관계망을 적용하지 못한 문항으로 보고되었다. 앞서 소개한 LS/CMI에서도 동거는 재범을 감소시키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으며, 미국판 성범죄 위험성 평가도구인 Static-99(Hanson & Thornton, 1999)에서도 친밀한 파트너와 장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측정하고 있으므로 실무진의 의견은 합리적이다. 마지막으로 수형자들은 학력이나 경제사정 등에 대한 문항이 인권침해를 유발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항은 통계적 검증력과 이론적 배경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요소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밀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6) 사회경제적 지위의 반복평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반복적으로 평가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교정재범예측지표는 학력, 입소전 직업, 입소전 경제상태, 입소전 거주상태 등 비슷한 사회경제적 개념을 반복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항에 대해 재소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소전 환경조건'과 같은 단일 문항으로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기반으로 유발되는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한 실무자도 있다.

7) 교정심리검사 결과 반영의 적합성

다음으로 일부 실무자들은 교정심리검사 결과를 교정재범예측지표에 반영하는 것

이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교정재범예측지표는 교정심리검사의 비행/포기성향을 포함한다. 그러나 해당 검사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므로 정직하게 심리검사에 임한 수형자보다 가식적으로 검사에 임한 수형자가 더 좋은 교정재범예측점수를 받는 경향이 있다. 또한 비행/포기성향의 경우 다른 영역과 다르게 T점수 구간이 지나치게 좁게 설정되어 있으며, 허위수치 반영이 미흡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 밖에 교정심리검사는 수형자의 정신/심리적 문제를 파악하여 해당 문제를 치료하고 재사회화를 돕는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므로 해당 검사 결과의 일부로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가석방 심사에 사용하는 등 사회통제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현 실정은 검사도구의 목적과 심리전문가의 직업윤리를 훼손한다는 비판과 교정심리검사 결과로 출소 후 재범을 예측하여 미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서 가급적 심리검사는 동적요인(범죄자의 범죄유발욕구)을 파악하고, 재사회화프로그램으로 인한 변화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8) 수용생활 전반을 통한 생활태도 및 처우성과 반영의 미흡(재심사지표)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재심사지표는 경비처우급 재심사지표와 매우 유사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앞서 언급한 경비처우급 재심사지표의 문제점이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실무자들은 언급한다. 즉, 수용생활태도, 교육 및 작업성과 등과 같은 교정성적과 수용생활 전반을 통한 생활태도의 변화는 미흡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교정재범예측지표는 재범위험성과 재사회화 가능성을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보다 더욱 민감하고 예민하게 측정해야하는 지표임에도 경비처우급 재심사지표와 매우 유사한 항목으로 수형자의 변화를 측정한다는 점을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9) 개발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

먼저 실무가들은 교정재범예측지표가 개발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한다. 2011년 당시 재범위험성 예측 및 처우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CO-REPI가 개발되었으나 현재에는 가석방 검토 시에만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험성 평가(경비

처우급 결정) 및 처우프로그램 활용에 미흡하므로 해당 지표의 사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10) 평가자 의견 반영의 어려움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와 동일하게 교정재범예측지표도 평가자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지표라는 지적도 있다. 대부분의 항목이 정적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평가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적으며, 재심사지표에는 동적요인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신입심사에 존재하는 적은 수의 동적요인도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매뉴얼이 마련되어있어 동적요인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실 평가자 외 보안과 직원들이 수형자와 함께 지내면서 발견하게 되는 동적요인들은 신입심사 시에는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평가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동적요인이 필요하며, 특히 재심사 시 동적요인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11) 자기보고식 문항의 낮은 신뢰도

마지막으로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자기보고식 응답을 통한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사회인구학적인 문항 대부분과 학창시절처벌경험과 같은 문항은 수형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수형자가 각 문항에 대한 대답을 거짓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으며, 심지어는 수형자들 사이에서 낮은 분류지표 점수를 받는 방법까지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실무자들은 언급한다.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의 지표를 객관적인 자료(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등)로 평가할 수 있는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를 제외한 교정재범예측지표, 교정심리검사, 생활환경조사서 등과 같은 지표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의 타당화 결과에 대한 실무자 의견수렴

다음으로 두 분류지표가 재범을 예측하는데 타당한 도구인지를 검증한 통계분석 결과에 대해 각 항목 및 문항을 중심으로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표 3-67〉 참조). 먼저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의 타당도 검증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였다.

[표 3-67] 경비처우등급의 타당화 검증 결과에 대한 의견

항목	내용
1. 초중범죄중범죄유무 문항	측정하려는 내용이 다른 항목(교정시설 총 수용기간)과 일부 일치하여 해당항목의 검증력이 통계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예상됨.
2. 전체형기 문항	본 조사에서 전체 형기가 10년 이상인 고득점자(8점: 10년~20년 미만, 10점: 20년 이상)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불안정한 통계결과가 산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범죄유형에 따라 낮은 형기를 받지만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형자가 있음. 재범은 잘 예측하지 못할지라도 수형자의 처우에서는 유의한 항목이므로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음
3. 개선가능성, 문제행동가능성 문항	- 두 변수는 주관적 평가가 필수적인 부분이나 주관적 평가에 대한 직원의 두려움으로 분류지표 실행 이후에 계속적으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됨 - 과거에는 폭력성이 없고 수감태도가 좋아 높은 등급의 경비처우등급이 적합한 수형자가 범죄전력이 많다면, 낮은 경비처우등급을 받게 될 가능성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개선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적도 있음 - 모든 표본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된 것이 아닌 시계열상 혼재된 평가방식으로 평가된 만큼, 측정도구의 오염으로 인해 개선가능성이 높을수록 재범위험성이 높아지는 타당도 검증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 개선가능성을 입소 초기에 예측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으므로 재심사지표로 이동하는 방안을 제안함
4. 위험성 및 개선도 평가 분류영역	- 개선가능성점수의 낮은 내용타당도로 인해 위험성 및 개선도 평가 영역 전체의 신뢰도가 의심됨 - 동적 요인을 신입심사 단계에서 평가하는 것이 불안정한 통계적 검증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적 요인은 재심사지표로 이동하고 신입심사에서는 정적 요인만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임 - 동적요인을 축소하여 수형자의 현재 위험성과 보안등급/구금의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하고, 재사회화 가능성이나 개인적인 변화 정도는 교정재범예측지표가 측정하도록 두 지표를 이원화하는 방법 제안
5. 도주 또는 위반 분류영역	- 경비등급을 고려할 때 중요한 변수이나, 해당하는 사례가 많지 않음 - 해당 문항들을 위험성 평가 항목의 하위항목으로 평가하는 등의 수정방향을 제안 - '집유실효등점수'의 경우에는 경비처우등급이 판정된 이후에도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하향등급조정이 이뤄지므로 문항 삭제도 고려할만 함

1) 초중범죄중범죄유무 문항

초중범죄·중범죄유무점수의 경우, 측정하려는 내용이 교용시설 총 수용기간 항목과 일부 일치하여 초중범죄·중범죄유무 항목의 검증력이 통계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만약 과거 초중범죄나 중범죄가 1회 이상 있을 경우 교정시설 총 수용기간은 필연적으로 길 것이며,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교정시설 총

수용기간 점수는 재범예측력이 매우 높으므로 두 변수를 동시투입한 분석에서 초중범죄·중범죄유무점수의 검증력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2) 전체형기 문항

전체형기 점수의 경우, 각 문항을 하나씩 투입하여 재범예측력을 분석한 결과 점수가 높아질수록(형기가 길어질수록) 재범하지 않는 양상을 유의하게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실무가는 본 분석에 전체 형기가 10년 이상인 고득점자(8점: 10년~20년 미만, 10점: 20년 이상)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6점에 해당하는 전체형기 5~10년 미만의 수형자도 퇴소한지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 통계적으로 해당 항목이 재범을 부적으로 예측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경비처우급분류지표는 2011년, 교정재범예측지표는 2012년부터 현재의 지표로 사용되었으므로 본 통계적 검증에서는 장기수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재범 고위험자로 예측되는 표본이 부재하여 전체형기가 재범을 부적으로 예측하는 통계결과가 산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생존분석에서는 전체형기점수가 높을수록 유의하게 재범을 더 빠르게 하는 양상을 보였으므로 고득점자가 상대적으로 재범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재범률이 산정되지 못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른 의견으로 고득점자가 부재한 표본에서 전체형기는 대체로 낮지만 재범위험성은 높은 수형자 유형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예를 들어, 사기나 절도, 마약범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 유형으로 알려져 있으나(Durose, Cooper, & Snyder, 2014; 강호성, 2010) 이들은 대체로 전체형기점수에서 1점(1년 미만)이나 2점(1~3년 미만)을 받는다. 전체형기 점수가 재범을 예측하지 못하는 본 타당화 검증 결과가 실무자가 예측하는 것처럼 표본 특성에 따른 결과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범죄유형을 통제한 후에 전체 형기와 재범간의 관계를 예측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수형자의 전체형기가 증가할수록 재범을 적게 하는 결과가 나타났음에도 실무자들은 해당 항목이 특정 수형자의 경비처우급 판정에 유의하므로 삭제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조언하였다. 예를 들면, 초범이면서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의 사례에서 전체형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경비처우급 신입심사는 과거 범

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이들의 위험성에 적합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전체형기와 범죄 심각성 항목 외에는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초범이지만 죄질이 나쁜 수용자의 범죄 심각성을 고려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전체 형기를 산입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다.

3) 개선가능성, 문제행동가능성 문항

다음으로 동적요인 중 문제행동가능성 점수가 모든 문항 투입 시 유의하게 재범을 예측하지 못하며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단독 투입 시엔 유의하게 정적으로 재범을 예측하는 등 불안정한 재범 예측력을 보였으며, 개선가능성 점수는 강하게 재범을 부적으로 예측한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실무자들은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항목을 평가해야하지만, 주관적 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두려움으로 객관적인 기준으로 동적요인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지표도입 이후에 마련되었음을 앞서 언급하였다(〈표 3-67〉 참조).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는 수형자 평가 시 기대하는 등급이 나오지 않는 경우 대체로 개선가능성 점수를 수형자에게 유리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범죄전력이 많아 전반적인 점수가 높은 수형자가 태도가 좋고 폭력성이 없는 등 S4등급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이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개선가능성 점수를 1점으로 평가해 수형자의 등급을 조정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계열상 동일한 내용을 측정하지 않는 등 혼재된 평가방식으로 인해 문제행동가능성과 개선가능성 점수에 대한 분석결과가 안정적으로 도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4) 위험성 및 개선도 평가 분류영역

위험성 및 개선도 평가 영역이 재범을 반대 방향으로 예측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개선가능성 점수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선가능성점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험성 및 개선도 평가 영역 전체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만큼 동적 요인을 신입심사 단계에서 평가하는 것이 불안정한 통계적 검증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실무자들은 주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동적 요인은 재심사지표로 이동하고 신입심사에서는 정적 요인만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수형자의 개선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변화 정도를 측정할 기준변수가 필요하므로 신입심사 시에도 동적요인으로 수형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필요하다. 따라서 신입심사의 동적요인 항목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고, 수형자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재심사심사 시 동일한 항목으로 반복 평가하는 편이 적합할 것이다.

다른 의견으로는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는 수형자의 현재 위험성과 보안등급/구금의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하고(정적요인에 집중하여 구성), 교정재범예측지표는 수형자의 재사회화 가능성이나 개인적인 변화정도는 측정하도록 구성하는(동적요인에 집중하여 구성) 등 두 분류지표를 이원화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5) 도주 또는 위반 분류영역

도주 또는 위반 분류영역의 도주/자살시도점수와 집유실효등점수(보호관찰위반, 집행유예실효, 가석방취소·실효 등)는 1점 외의 점수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재범예측력이 낮게 나왔을 것으로 해석하였다. 실제로 1만 명 중 도주자는 약 10명 정도이며 경찰단계 등 모두 포함하여도 40-50명의 수준이라고 언급하였다. 도주 또는 위반은 경비등급을 고려할 때 중요한 변수이나 항목을 절약해야 한다면 위험성 및 개선도 평가 분류영역의 하위항목으로 평가하는 등의 수정방향이 있을 수 있겠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경비처우등급이 판정된 이후에도 보호관찰위반, 집행유예 실효, 가석방취소·실효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정기재심사가 실시되고, 경비처우등급이 한 단계 하향 조정되므로 집유실효등 항목을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신입심사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고려할만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라. 교정재범예측지표의 타당화 결과에 대한 실무자 의견수렴

다음으로 교정재범예측지표 신입점수의 재범 예측력에 대한 실무자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쟁점은 동거횟수, 범죄시 직업, 입소 전 경제상태, 입소 전 거주상태, 학력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이 각 문항을 하나씩 투입한 경우에도 재범을 예측하지 못한 검증결과와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 문항이 모든 문항 투입 시 재범을 부적으로 예측한 현상이다.

[표 3-68] 교정재범예측지표의 타당화 검증 결과에 대한 의견

문항	내용
사회인구학적 변수	- 자기보고식 응답,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내용타당도가 낮은 문항으로 인해 재범예측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 - 질문의 형식을 바꿔서 측정 내용에 타당한 형태로 재구성하거나, 생활환경조사로만 활용하는 방법 제안
특정요인별재범가능성 문항	- 재범율이 높은 특정 범죄성향을 과거 범죄 및 비행기록으로 평가하는 문항이므로, 예측력이 높은 과거범죄관련 문항으로 인해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 문항의 검증력이 불안정한 것으로 예상

1) 사회인구학적 요인

먼저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성별, 동거횟수, 직업, 거주상태, 정신병원치료경력, 학력이며, 이 중 성별변수만이 재범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자들은 재범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진 성별을 제외한 다른 변수가 재범을 예측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① 수형자의 자기보고식 응답, ② 변화한 시대상, ③ 낮은 내용타당성으로 그 원인을 추론하였다.

먼저 교정재범예측지표는 경비처우급 지표와 달리 수형자의 자기보고가 중요한 문항이 많이 분포해있으며, 이러한 문항의 대부분이 사회인구학적 영역에 포함되어있다. 예를 들어 경제상태 문항은 주관적 경제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수형자는 자신의 입소 전 경제 상태를 매우 넉넉함부터 매우 어려움까지 다섯 가지 범주 중 한 가지로 보고한다. 문제는 수형자의 대부분이 높은 REPI등급을 받길 원하며, 이들은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속여 대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형자의 진술에 기반을 두어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수형자의 거짓진술로 인해 재범을 예측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교정재범예측지표가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여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재범예측력이 낮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앞서 교정재범예측지표의 문제점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거는 사회적 지지체계로 재범을 억제하는 요소로 통용되지만, 현재 교정재범예측지표에서는 동거횟수가 많은 수형자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재범유발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학력의 경우에도 2007년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중등교육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중졸이하와 고등학교 이상으로만 구분하는 학력

문항은 변별력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무자들과 본 연구진은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여 퇴보된 문항을 내용타당도를 높인 질문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예를 들어, 동거는 가족관계에 대한 문항으로 재구성하고, 학력은 교육경험으로 수정하여 활용한다면 사회인구학적 요인의 재범예측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 밖에 정신병원 치료경력(필요성) 문항도 '정신질환 등 문제' 항목으로 문항명을 수정하고, 정신상태를 단순하게 비정상/정상으로 구분하는 현 평가방법에서 충동성이나 폭력성 등과 같은 범죄성향이나 치료 및 교육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낮은 성격특징을 심리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한다면 정신적 문제가 범죄로 이어지는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내용타당도와 재범예측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한다. 본 연구진은 교정재범예측지표의 문제점에서 언급한 것처럼 입소 시에 출소 후 생활환경에 대해 평가하는 것의 실효성이 낮은 만큼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개별처우계획 및 사례관리를 위한 생활환경조사에서 활용하고 교정재범위험성지표는 수형자의 변화가능성이나 재사회화 의지 및 노력 등에 집중하여 측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 특정요인별재범가능성 문항

다음으로 교정재범예측지표의 타당화 검증에서 실무자의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동적 요인인 '특정 요인별 재범가능성 점수'가 모든 변수 투입 시에는 재범을 부적으로 예측(점수가 높을수록 재범하지 않음)하였으나 단독으로 투입할 경우 재범을 정적으로 예측하여, 재범을 일관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점이다.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 문항은 재범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범죄성향인 약물·유해화학 등을 한정하여 해당 범죄성향이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실무자들은 해당 문항의 재범예측력이 약하다면 특정 범죄성향이 있는 수형자는 다른 문항에서 이미 높은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예를 들어, 마약흡입 등의 범죄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면 과거범죄관련 문항에서 이미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며,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 문항보다 재범예측력이 높은 전과관련 문항들로 인해 해당 문항의 예측력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해당 문항은 특정 요인과 관련한 범죄경력이나 비행경력과 같은 자료를 기준

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즉, 특정 요인에 대한 범죄성향이 있음에도 초범인 수형자는 특정 요인별 재범가능성 점수가 필연적으로 낮게 평가된다. 내용타당도를 높여 재범율이 높은 특정범죄성향을 확인하고, 재범예측력을 안정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과거 범죄 및 비행 기록으로 특정 범죄의 성향을 판단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

3. 소결

전반적으로 실무자들이 지적한 두 분류지표의 문제 항목 및 문항이 통계적 타당성 검증에서도 재범예측력이 유의하지 않거나, 검증력이 약하거나 혹은 재범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및 의견을 정리하면 ① 동적요인을 주관적으로 평가해야하는 교정관의 부담으로 현재의 동적요인은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등 동적요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며, 평가방법이 시간에 따라 변경되어 시계열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오류로 인해 개선가능성과 같은 동적요인이 재범을 부적으로 예측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문항의 측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평가기준을 다시 세우는 등 내용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② 신입심사 시 수형자의 태도나 개선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변화정도를 측정해야하는 재심사지표에는 경비처우급과 교정재범예측지표 모두 동적요인이 부재하다. 이에 재심사지표에도 동적요인을 삽입할 것을 제안하며, 재심사지표에 삽입되어야할 동적요인은 프로그램 및 교육 참여 성실도, 변화정도 등 인지 및 태도의 변화와 재사회화를 위한 의지 및 노력이다. 신입심사지표에도 재심사 시 변화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 항목을 추가적으로 삽입하여 교정의 효과를 측정해야할 것이다. ④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이 재범예측력이 낮은 이유는 자기보고식 평가방식에 의해 수형자의 허위응답으로 해당 요인의 내용이 오염되었을 가능성,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항 및 내용으로 변별력을 잃었을 가능성 등으로 추정된다. ⑤ 과거 범죄 기록으로 재범을 예측하거나 경비등급을 강화하는 것은 지나치게 처벌적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분류지표 개선방안

윤 정 숙

제4장

분류지표 개선방안

제1절 | 주요결과 정리

1. 지표의 재범예측 타당도

가. 경비처우등급지표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재범예측타당도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경비처우등급지표는 등급과 총점 모두 재범을 타당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등급보다는 총점의 재범예측이 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최종 등급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S1급과 S2급의 재범 예측 변별력은 없었으나, S3급이나 S4급은 S1보다 재범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4급은 S1급에 비해 재범 위험성(승산)이 2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처우지표 총점의 경우 신입심사 점수, 재심사 점수 모두 재범을 예측하나, 신입심사 점수가 재심사 점수보다 재범 예측력이 나았으며, 신입점수의 경우 1 표준편차 상승시(9.07점 증가시) 2.24배 정도 재범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생존분석을 활용하여 지표의 재범까지 기간 예측력을 확인했을 때에도, 등급과 총점은 재범까지의 기간을 타당하게 예측하였다. S1급에 비해 S3급과 S4급은 시간이 지날수록 재범에 대한 누적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심사지표를 사용한 경비처우등급의 영역별 예측력을 보면, 본 범죄관련사항이나, 과거 범죄 관련사항, 도주 또는 위반영역은 재범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험성 및 개선도 평가영역은 단독으로 투입할 때 음의 방향으로 재범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역의 점수가 높아질 때 오히려 재범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각 영역을 구성하는 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개선이 시급한 위험성 및 개선도 평가는 CO-REPI 동적평가점수, 문제행동가능성점수, 개선가능성 점수 이렇게 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문제를 보이는 항목은 문제행동가능성과 개선가능성 점수였다. '문제행동가능성'의 경우 회귀분석에서 단독으로 투입 시에는 정적 방향으로 예측하였으나, 동시 투입시 부적 방향으로 예측의 방향성이 바뀌기도 하는 등 불안정성을 보여주었고, '개선가능성'은 단독으로 투입한 회귀분석에서도 부적 방향으로 예측하고 있어 문제가 가장 많은 문항으로 분석되었다.

경비처우등급 지표의 영역 중 본 범죄관련 사항에서는 전체형기점수와 흉기사용점수가 재범예측방향이 음의 방향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과거범죄 관련 사항에서는 초중범죄/중범죄 유무점수가 단독 투입 시 재범을 예측하였으나, 변수 간의 상관성을 통제한 이후의 설명력을 보았을 때에는 재범 예측 방향이 바뀌는 걸로 나오면서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면, 재범(재입소)을 종속변수로 상정하여 경비처우등급지표를 구성하는 16개 항목의 재범예측력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첫째, 변수간의 상관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재범을 유의하게 예측한 변수는 본 범죄관련 사항에서는 범죄동기, 범죄심각성과 재범기간점수 3항목, 과거 범죄관련사항에서는 최초경찰입건연령점수, 교정시설총수용기간점수, 과거수용중징벌점수 3항목이었다. 동적요인을 평가하는 위험성 및 개선도 평가와 도주 또는 위반 영역의 구성변수들은 재범을 유의하게 예측하지는 못했다. 둘째, 변수간의 상관성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 재범을 정적 방향으로 예측하였으나, 상관성을 통제한 이후 예측력을 상실한 변수는 미결태도점수, 범법행위건수, 초중범죄중범죄유무점수, REPI동적평가점수, 집행유예실효등점수였다. 셋째, 단독투입시에도 예측방향과 예측력에 문제가 있었던 변수는 흉기사용점수, 전체형기점수, 개선가능성점수, 도주자살시도점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지표에서 활용가능한 항목들을 선정해야할 것으로 추론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교차타당도(cross-validation)가 검증되었다는 전제하에, 첫 번째 나열된 변수들은 활용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에 나열된 변수들은 일정 정도 활용가능하나 평가방식을

재고하여야하며, 세 번째 나열된 변수들은 재범예측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므로 사용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재심사지표의 경우, 현행 지표에 사용되는 문항 중 재범가능성점수(REPI) 문항만이 재범여부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행동가능성은 음의 방향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정처우성과점수, 형집행기간점수, 교정성적점수, 문제행동가능성점수, 징벌관련점수, 개별처우고려점수 어느 것도 재범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각 문항의 구성개념이나, 평가방식 등을 재고하고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 역시, 등급과 총점 모두 재범을 타당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등급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R2급은 R1급에 비해 3배 정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았으며, R3급은 8배, R4급은 20배, R5급은 40배 정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심사 등급으로 재범을 예측하였을 때, 1급과 2급의 재범예측력이 차이가 나지 않았고, 나머지 등급은 1급에 비해 재범예측 위험성이 모두 높았다. 교정재범예측지표 총점의 경우, 경비처우지표와 마찬가지로, 신입심사점수가 재심사 점수보다 예측력이 높았으며, 신입심사의 경우 1 표준편차 상승 시(총점이 6.368점 증가시) 재범위험성이 2.44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생존분석을 활용하여 지표의 재범까지 기간 예측력을 확인했을 때에도, 등급과 총점은 재범까지의 기간을 타당하게 예측하였다. R1급에 비해 나머지 등급은 시간이 지날수록 재범에 대한 누적 위험이 높아지는 것(생존 확률은 낮아짐)으로 나타났다.

지표는 크게 정적요인과 동적요인으로 구성되는데, 두 영역 모두 상호 영역을 통제한 이후에도 재범을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승산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동적요인(1.12)에 비해 정적요인(2.31)이 재범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REPI는 전체 23개 문항 중 5개 문항을 제외한 18개의 문항이 정적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적 요인을 사회인구학적 요인(성별, 동거횟수, 직업, 경제상태, 거주상태, 정신병원치료경력, 학력), 본범관련사항(죄명, 피해자관계, 범죄시정신상태, 재범기간), 과거범죄관련사항(징벌, 전체형기, 동일유사죄명경력, 최초형확정

연령대, 이전범죄출소연령대, 학창시절처벌경험), 집행유예취소/실효(단독항목)의 4개 영역으로 나눠 살펴보면, 4개 영역 모두 단독으로도, 상호간의 상관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재범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역시, 과거범죄관련사항이 이 중 가장 재범예측력이 높고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온다.

신입심사 지표를 대상으로 구성 항목을 하나씩 분석해 보면, 먼저 재범예측력이 가장 낮은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은 단독으로 투입할 때 성별과 정신병원치료경력을 제외하고 동거횟수, 범죄시직업, 입소전경제상태, 거주상태, 학력 모두 재범을 예측하지 않았다. 변수간의 상관성을 통제한 이후의 설명력을 확인해 보는 분석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유지되었고, 정신병원치료경력은 설명력을 잃었으며 성별만이 재범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성일 경우 재범 위험성 높아짐). 이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하는 항목들이 교정재범예측지표에 사용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범관련사항을 구성하는 4개의 변수 중, 죄명점수와 피해자관계점수는 재범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 범죄시 정신상태와 재범기간은 재범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다. 즉, 범죄시 정신상태가 주취상태 등 비정상이라 하더라고 출소 후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없다. 재범기간이 짧은 경우 위험점수가 올라가는데, 경비처우등급에서 재범기간이 유의하게 예측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와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항목의 평가 방식이 상이한데서 오는 결과일 것으로 추론된다.

과거범죄를 구성하는 6개의 변수는, 단독으로 투입했을 때와 한꺼번에 투입했을 때 모두 재범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와 항목의 설명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즉, 수용생활중 징벌횟수, 이전범죄의 전체형기, 동종범죄경력, 이전범죄 출소연령대, 학창시절(18세이하) 처벌경험(형사입건, 보호처분, 퇴학, 정학, 징계조치에 의한 전학 등)의 유무는 재범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독항목으로 구성된 집행유예 취소/실효회수는 재범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소/실효횟수가 많을수록 재범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단, 이전범죄 전체형기와 집행유예 취소/실효횟수 점수는 최종 모델에서 영향력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동적요인에 해당하는 5개의 변수를 살펴보면, 개별 변수의 재범 예측에 대한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변수간의 상관성을 통제한 이후 설명력

을 보면, 공권력에 대한 태도점수는 재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 점수는 음의 방향으로 재범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가장 시급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출소후 재범환경점수, 비행성향점수, 포기성향점수는 최종 모델에서도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 결과를 재정리해보면, 교정재범예측지표를 구성하는 23개의 문항 중, 재범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추론되는 항목들은 정적요인 항목 중, 과거범죄관련 요인 5개 항목(본건및과거징벌, 동일유사죄명경력, 최초형확정연령대, 이전범죄출소연령대, 학창시절처벌경험)과 본범죄관련 요인 2개 항목(피해자관계, 죄명),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 성별이었고, 동적요인을 구성하는 5개의 항목 중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 항목과 '공권력에 대한 태도'를 제외한 3개 항목(출소후 재범환경, 비행성향점수, 포기성향점수)은 재범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REPI 재심사지표의 재범여부 예측력 분석에서는 문항의 상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했을 때는, 경비처우점수. 교정성적점수, 징벌관련점수, 벌금미납추가형점수가 재범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교정처우성과점수는 재범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문항의 상관성을 통제한 이후, 경비처우점수를 제외하고 모든 변수가 재범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재심사지표가 가석방을 결정하는데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심사 지표의 재범예측에 대한 예측력이 안정적이지 못한 점이 우려된다. 각 문항의 구성개념이나 평가 방식 등을 재정립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2. 실무자 의견

분류지표의 운영에 관하여 본 연구의 착수단계에서 취합된 교정본부 실무자 및 외부 전문가의 지적, 그리고 본 연구에서 수행된 분류지표의 재범예측에 대한 통계적 검증결과 대한 실무자 의견 등을 취합해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분류지표 항목에 관하여 통계적 검증 이전에 지적되었던 쟁점들을 확인해보면, 실증조사결과와 배치되는 의견들도 있고 실증조사결과를 확인시켜 주는 의견들도 상존하였다. 우선 외부 전문가들의 지적 중 대표적으로 수형자의 과거 범죄력이나

비행/포기성향 등 과거이력/성향에 기반한 점수로 재범을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거나 지나치게 처벌적이라는 지적은 실증조사 결과와 다소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비처우급지표나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재범 예측 타당도에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 변수는 수형자의 과거 범죄력이었다. 선술하였듯이, 재범 예측 인자로서 활용되는 과거 범죄력은 반사회적 행동에 해당되는 정적 위험요인으로 해외의 연구에서도 대부분 재범을 타당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외부전문가들이 과거범죄력이나 과거성향에 관한 심리검사 점수로 재범을 예측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교정재범예측지표가 가석방 심사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석방은 교정시설 내에서의 재범위험의 감소에 중점을 두어 판단하는 만큼, 정적 위험요인에 치중해서 평가를 하면 수용생활의 개선 및 재사회화를 통한 재범 위험의 감소부분을 지표에 반영하지 못한다.

주지할 것은 수형자의 재범위험성이라는 것이 정적인 특성과 동적인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RNR 원칙에서도 개별 수형자의 재범위험성이 정적 위험요인과 동적 위험요인으로 평가되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거 범죄력과 같은 정적 위험요인은 단순히 범죄 이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범죄적 성향(동적 위험요인)이 발현된 행동의 결과물로서 형벌의 위하력이 잘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표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력에 대한 변수는 이론적, 통계적으로도 분류지표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관련하여 제기된 외부 의견에 대해 이론적인 틀과 과학적 결과로 설명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동거, 경제상태, 주거상태, 정신상태 등 수형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수 역시, 인권적,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지적받아왔다. 이론적 검토를 빌리자면, 사회인구학적 변수자체가 범죄의 유발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동거나 가족관계, 학력은 범죄의 외부억제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 범죄의 발현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 동거는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역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문제로 확인되었다. 주거상태나 정신상태, 재정상태는 재범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온다.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 동거와 같이 재범과 관련이 있지만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항목은 가족관계로 폭넓게 구성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력 역시 교육경험으

로 재구성하여 질문 방식을 달리한다면 활용의 여지가 있다. 한편, 재정상태나 정신상태, 주거상태 등은 재범예측력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 따라서, 재정상태, 주거상태, 정신상태는 가석방심사와 같은 수용자의 이익/불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에는 합산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면, 이러할 경우 외부전문가의 인권차별에 대한 지적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은 교정 재범예측지표에 편입하지 않더라도 해당 개념이 수용자의 생활양식을 이해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분류심사표에 반응요인(개인요인)으로 구성하여 사례관리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해당 변수에 대해 개념을 재정립하고 질문을 재구성하되, 수형자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정기관 내에서의 생활상까지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재구성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상당수가 동적 요인으로 재탄생할 수 있으며, 변화상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재범을 예측하는 것으로 검증된 성별의 경우, 인권적 지적을 피해가기 위해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지표를 구분하는 것도 방법으로 생각된다. 단, 본 연구에서는 여성 수형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지표 구성을 위해 추후 추가적 분석이 요구된다.

한편,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재사회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교정기관 내에서의 재사회화 프로그램의 성실한 참여 등은 지표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심리치료나 직업훈련, 교육 등 각종 사회복귀프로그램의 참여와 이를 통한 변화가 지표에 반영되어야함을 주창하는 바, 관련 전문가들의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현행 재심사 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교정처우성과 항목들은 주로 자격증, 수상경력, 시험합격 등 성취부분만을 평가하고 있고, 수형자가 사회복귀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어떠한 부분이 변화했는지를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항목들의 재고가 요구된다.

그 밖에 경비처우급의 통계 검증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개선가능성 항목은 현장의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고, 항목에 대한 이해가 동일하지 않으며, 제도의 시행에 따라 항목의 평가방식을 바꿔 시계열적 일관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 바,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개선가능성으로 무엇을 평가하고자 하였는지를 다시 복기하여 그 개념을 보다 타당하게 정립하고 질문의 방식, 평가의 방식을

재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본 연구의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현재의 분류지표가 동적요인을 충분히 조사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 실무가 및 외부전문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분류지표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동적요인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그 개념을 보다 타당하게 정립하고 평가 방식을 정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사실 현재 지표가 측정하는 동적요인의 항목들도 대체로 불안정한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령 경비처우지표의 문제행동가능성이나 개선가능성, 교정심리검사의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 공권력에 대한 태도가 대표적 예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대체로 항목의 명칭 자체가 추상적이고 범위가 넓으며 무엇을 측정하고자 하는지 겉보기에도 잘 이해되지 않는 등, 안면타당도가 높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과거의 분류지표에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 바,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제2절 | 분류지표 항목 개선방안

1. 위험성과 욕구(위험요인)의 평가

가. 위험성과 위험요인의 상호작용

분류심사 혹은 분류검사에서 동적 요인을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련 이론(RNR 이론)을 상기시켜본다면, 범죄유발적 욕구(범죄유발요인)를 평가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범죄유발요인이 합산되어 행동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이 범죄이고,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위험성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위험요인의 합산이라고 보면 된다. 위험성은 정적 위험요인과 동적 위험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결과적 행동을 나타내는 정적 위험요인은 태도나 정서/인지와 관련되어 있는 동적 위험요인보다 예측력이 높게 나타난다.

이처럼 특정 정적 위험요인이 결과적 행동이기도 하면서 다시 미래 범죄의 예측인자가 되기도 하는 순환구조는 이 두 가지 위험요인들의 깊은 상관성과 상호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정적 위험요인 즉, 범죄경력이나 초범 연령, 학창시절 처벌경력 등은 변화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동적 위험요인은 내면적, 심리적 요인으로 '동적'이라는 용어가 지칭하듯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교정처우 프로그램의 목표 영역이 되기도 한다. 분류지표의 재심사 때 사용하는 교정처우성과나 교정성적 혹은 소득점수(소행점수와 작업점수)가 동적요인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정처우 중 학과교육이나 직업훈련처럼 범죄유발요인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나, 학교생활이나 고용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시 잠재적으로 범죄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학과교육과 직업훈련의 향상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각종 인성교육이나 심리치료처럼 핵심적 범죄유발요인로 간주되는 반사회적 태도, 성격, 대인관계 등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처우프로그램도 있다. 따라서, 분류지표에서 처우프로그램의 성과를 일정정도 반영할 수 있는 동적 요인들을 배치하는 것은 범죄유발요인의 진단과 평가 그리고 교정처우를 통한 변화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수형자의 개선의지와 노력, 태도나 생활상의 변화 등을 가늠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수형자는 태도나 생활상의 변화를 어느 정도 가장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이들을 타당하게 평가하는 것은 정밀한 작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행 동적요인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항목들, 가령 출소후 재범환경, 공권력에 대한 태도,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 경비처우급의 문제행동가능성, 개선가능성, 그리고 재심사지표의 교정처우성과, 교정성적, 문제행동가능성 중 상당수는 구성 개념 자체가 엄밀한 의미에서 동적요인으로 볼 수 없으며, 변화 가능한 범죄유발요인을 평가한다기보다는 변화가 가능하지 않은 위험요인, 혹은 비범죄유발요인, 혹은 성취(achievement)만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나. 범죄유발요인: 핵심요인과 잠재요인으로의 분류

그렇다면, 과연 수형자의 범죄유발요인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이에 대해 앞서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지표들은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LS/CMI의 개발자이자,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RNR모델의 주창자인 Andrews 등은 범죄자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범죄자의 재범요인이 대체로 “Big 8”요인으로 정리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 중 “Big 4”는 반사회적 인지, 반사회적 동료(대인관계), 반사회적 행동경력, 반사회적 성격 유형으로 정리될 수 있으며 이 4가지 요인이 재범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설명한다(Gendreau, Little, & Goggin, 1996, Andrews, Bonta, Wormith, 2004에서 재인용). 나머지 4가지 요인은 가족/결혼, 학교/직장, 여가활동, 약물 남용으로 이 영역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들을 유의해야한다고 주장한다(Andrews 외, 2004). LS/CMI의 일반적 위험/욕구 요인(General Risk/Need Factors)은 바로 이러한 Big 8의 영역들을 평가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지하듯, 이 요인들은 정적 위험요인과 동적 위험요인 둘 다를 포괄하고 있으며, 본 연구진은 Big4를 핵심적 범죄유발요인으로 나머지 4개는 잠재유발요인으로 간주하려고 한다.

미국의 PATTERN은 주로 위험성평가를 통해 정적 위험요인을 평가하며 동적 위험요인은 욕구평가를 통해 따로 실시한다. 욕구평가는 심리서비스과나 교육과에서 주로 실시한다. HCR-20의 경우 자체 도구 내에 이력척도(정적요인)와 구별되는 임상 척도와 위험관리 척도를 영역별로 배치하여 정적/동적 위험 요인들을 모두 포섭하고 있다. 전반적인 문제 전력을 평가하는 이력척도 10개 문항(주로 정적위험요인) 이외, 임상척

도는 주요 정신장애 증상이나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기능정도, 치료 혹은 관리 감독에 대한 반응정도를 측정하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험관리 척도는 전문적 서비스와 계획, 거주환경, 개인적 지지, 치료 혹은 관리감독 반응, 스트레스 혹은 대처 등 미래문제를 측정하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개의 지표 역시, 핵심범죄유발요인과 잠재유발요인을 평가하고 있으며 척도마다 포함되는 항목이 다소 차이가 있다. PATTERN은 사실상 RNR이론의 창시자인 Andrews 와 Bonta의 모델에 영향을 받은 것이며, HCR-20는 심리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것이라 범죄학적 요인보다 심리적/임상적 요인에 대한 비중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경비와 처우의 개념 통합

한편, 경비처우지표의 경비와 처우가 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분류심사관들의 혼란이 있어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비처우등급지표나 재범예측지표에서 칭하는 '처우'가 이론적, 학술적 자료에서 논의되는 '처우'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기인된다. 분류지표에서 말하는 처우가 수용자들이 교정시설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가령, 전화사용, 접견횟수, 경비의 완화 등으로 이해되면서 낮은 등급(보안수준이 낮은 등급)에서는 높은 처우를 받고, 높은 등급에서는 낮은 처우를 받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때 처우는 교정시설에서 주는 혜택(credit, favor)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분류지표가 포괄해야할 처우(treatment)가 아니다. 분류지표의 모델이 되는 RNR이론에서 말하는 처우는 수용자의 욕구에 기반한 처우(treatment)를 말하는 것이다.

수용자의 욕구에 기반한 처우를 이해하면 왜 해외의 선진교정시설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수용자가 처우 수준이 높은지를 알 수 있다. 이들은 낮은 등급을 받은 수용자보다 더 많은 범죄유발적 욕구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높은 수준의 처우적 개입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S1보다 S3, S4 등급을 받은 수용자가 범죄유발적 욕구를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개입해야하는 처우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다.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수용자가 각종 교화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프로그램 등의 개입 필요성이 높고, 이와 같은 자원의 투입이 이뤄져야 실제로 재범위험성의 수준이 감소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해 둘 때, 현재의 경비처우등급지표는 시설을 분류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분류하는 것에 사용됨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높은 경비처우등급을 받은 사람은 그 위험성으로 인해 시설 상의 낮은 혜택을 받는 것이지만, 처우프로그램은 높은 수준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일정 정도의 질적 변화가 담보될 때, 낮은 등급의 경비시설로 옮기게 되는 것이다. 교정재범예측지표 역시 같은 논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분류지표는 모든 수형자의 현재 위험수준을 나타내는 표식(marker)으로 활용되는데 문제가 없으며, 교정시설의 목표는 표식에 따라 높은 등급을 받은 고위험 수용자를 높은 수준으로 통제하면서도, 사회복귀 및 재사회화를 위해 높은 수준의 처우프로그램을 집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비등급과 처우등급을 분리하지 않아도 되며,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RNR 원리의 기반이 되는 메타분석에 따르면 고위험군 수용자의 재범감소효과가 저위험군보다 크기 때문에(예: Andrews & Bonta, 1998; Gendreau & Goggin, 1996, 1997) 더욱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라. 분류지표의 평가 영역 I: 범죄유발요인

분류지표에서 말하는 처우의 의미를 환기시키고 해외의 연구와 본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분류심사단계에서 경비처우수준과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분류지표로는 다음과 같은 영역들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범죄유발요인을 핵심적 범죄유발요인과 잠재적 범죄유발요인으로 나누었고, 평가방식을 면담기반과 검사기반으로 분류하였으며, 위험요인에 동적요인과 정적요인이 모두 포섭되도록 하였다.

핵심범죄유발요인은 Andrews 외의 저자가 주창한 Big 8 중, 범죄유발과 가장 관련이 있는 Big 4, 즉 반사회적 행동경력, 반사회적 인지, 반사회적 성격, 반사회적 동료(대인관계)를 다루도록 한다. 반사회적 행동경력은 1)전과 및 비행전력(현 분류지표의 과거범죄 문항 중 일부 사용 가능)에 해당하는 범죄 횟수와 초범 연령, 수용전력, 수용 중 징벌이력, 학창시절 처벌이력, 집행유예취소/실효횟수 등과 2)범행심각성(현 분류지표의 본 범죄문항 중 일부 사용 가능)을 측정하도록 한다. 이 때 범행심각성은 주로, 본 범죄의 폭력성을 측정하는 문항들, 가령, 본 범죄에 폭력범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본 범의 형량에 산입된 범죄의 수를 측정할 것을 제안한다.

반사회적 인지는 범죄에 대한 태도, 준법의식, 자신의 형량에 대한 태도, 교도관이나 치료에 대한 협조수준 등을 측정하여 범죄친화적인(procriminal)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반사회적 성격은 적대감, 분노, 공격성, 과다, 충동성, 감정적 무딤 등 반사회적 성격장애나 사이코패시(반사회적 성격장애의 중증 버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반사회적 동료(대인관계)에서는 주로, 범죄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지인이나 친척, 가족 등의 여부와 사회적 고립여부 등을 확인하는 문항들로 구성한다.

핵심범죄유발요인의 평가는 일차적으로 교정시설에서 수집된 각종 자료(범죄경력, 판결문, 판결전조사서 등)를 확인하고 면담질문을 상세하게 구성하여 평가할 것을 권장한다. 반사회적 행동경력은 대체로 범죄이력과 본 범행의 심각성으로 구성되므로 정적 위험요인이지만, 평가시점에 따라(여죄가 밝혀졌거나, 수용중 징벌이력이 생긴 경우 등) 동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반사회적 인지, 성격, 동료 등의 문항들 역시 변화가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므로 재심사시 점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주지한다.

잠재적 범죄유발요인은 가족/결혼관계, 고용 및 학력, 여가시간, 알코올/마약문제를 평가하도록 한다. 먼저, 가족/결혼관계는 결혼이력이나 상태뿐만 아니라, 측정시점 시 부모/자식 간이나, 배우자간 관계 등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수준을 평가하도록 한다. 이 때 범죄적 성향이 있는 가족 등도 평가한다면, 가족 내의 위험요인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 및 학력부분에서는 직업의 유무뿐만 아니라, 직업의 안정성, 만족도도 평가하며, 학력의 경우 고등교육 이수, 학교생활에서의 만족도, 학창시절 처벌경험(형사/보호처분이 아닌 경우 포함)등도 파악하여 이 영역에서의 위험요인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진단하도록 한다. 여가시간은 입소전이나 평가시점에 여가활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친사회적 여가활동이나 조직적 활동, 시간의 유효한 활용 등을 가늠하도록 한다. 이 때 형기가 특정기간(예: 2년 이상인 경우, 교도소 내의 대인관계, 직업활동, 교육활동 등을 평가하여 함께 활용하도록 하면, 정적 요인이 아닌 동적 요인으로 기능하게 된다. 알코올/마약문제/정신질환문제의 경우, 해당문제가 존부부터, 심각성, 치료경력, 범행과의 연관, 현재 상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도록 질문을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모든 잠재적 범죄유발요인은 핵심 범죄유발요인과 마찬가지로 기록을 철저히 검토하고, 심층 면담을 시행하여 평가할 것을 권장한다.

평가방식은 위험요인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점수체계를 만들어 부여하되 가중치를 줄 때는 자의적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 가중치를 주지 않을 때는 예/아니오나, 리커트척도 방식으로 일관적으로 평가할 것을 권장한다. 각 영역의 점수합산과, 전체 합산 점수 등을 산출하여 등급을 분류하도록 하며, 등급산정방식 역시 통계적 검증이 필요하다.

[표 4-1] 분류지표에 사용될 수 있는 범죄유발요인

섹션	설명	비고
1) 핵심 범죄유발 요인 -기록/면담기반	1. 반사회적 행동경력(범죄 횟수, 초범 연령, 범행 심각성, 수용 중 징벌이력, 집행유예실효 등) 2. 반사회적 인지(범죄에 대한 태도, 준법의식, 자신의 형량에 대한 태도, 교도관이나 치료에 대한 협조 수준(compliance) 등) 3. 반사회적 성격: 적대감, 분노, 공격성 과다, 충동성, 감정적 무딤, 피상적 매력, 사이코패시 성향 등 4. 반사회적 동료(대인관계): 사회적 고립, 범죄경력의 친구/지인 등	반사회적 행동경력 제외, 모두 동적요인 (평가시점에 따라 반사회적 행동경력도 점수 변화 가능)
2) 잠재적 범죄유발 요인: 사회인구학적 특징 및 생활양식 -기록/면담기반	1. 가족/결혼관계: 관계에 대한 만족 수준, 범죄이력이 있는 가족 2. 고용 및 학력: 직업 유무, 직업 안정성, 고등교육이수, 학창시절 처벌경험, 직업과 학교생활에서의 만족도 등 3. 여가시간: 입소전/평가시 여가활동에 대한 평가 4. 알코올/마약문제/정신질환문제: 잦은 약물복용 및 치료경력 등	대개 정적이나 평가시점에 따라 상태 변화가능하며, 형기에 따라 교도소내의 대인관계나 직업 등 평가
3) 잠재적 범죄유발 요인: 심리적 태도 -검사기반	1. 인지적 왜곡: 범죄를 지지하는 태도 2. 정서적 문제: 분노관리능력 부족, 적대감, 정서적 무딤/냉담함, 외로움, 친밀감 부족 등 3. 대인관계적 문제: 낮은 자존감, 협박적/통제적 성향, 사회적 스킬 부족, 의사소통능력 부족 등 4. 생활양식의 문제: 문제해결/자기관리 기술 부족, 부적절한 성활동, 스트레스시 대처방식 등	동적 요인

마. 분류지표의 평가 영역 II: 개인요인과 수용요인

한편, 수용상의 이익/불이익과 관련이 있는 분류지표로는 적절치 않지만 사례관리를 위해 수용상의 이슈나 수용자의 개인 요인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주로 비범죄유발요인과 RNR원칙상의 반응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요인은 특히 특정 시설 내에서의 사동이나 구역지정 등에 필요할 수도 있고(특히 정신질환

문제나 건강문제), 특정한 프로그램의 배치를 위한 사전정보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를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수용요인은 주로 수용상의 이슈들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범죄유발요인을 위주로 한 분류지표상의 평가결과에 기관 내에서의 특수한 이슈나 사정 등으로 인해 경비처우등급이나 가석방등급에 행정상의 재량이 필요한 경우를 상정해 놓았다. 가령, 과거 수용이력에서 보여지는 수용상의 이슈, 도주전력이나 징벌이력에서 보여지는 수용상의 이슈, 기타 각종 교도소내 처우프로그램의 이수실적 등으로 보여지는 수용상의 이슈를 고려하여 평정의 목적에 따라 행정기관의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간주해도 좋다.

개인요인과 수용요인은 기록조사와 면담을 기반으로 하고, 예/아니오 방식으로 평가하여 사례관리에 활용하도록 한다. 개인요인과 수용요인의 고려를 통한 범죄유발요인의 감소 등은 이미 앞서 제시하였으며, 개인요인과 수용요인 자체는 등급이 산출되지 않으므로 이익/불이익과 관련이 없음을 다시한번 주지한다. 이들은 처우프로그램의 배치, 사동배치, 구역배치 등 처우의 형태 결정과 사례 관리를 위해 주로 사용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논의와 해외의 지표, 그리고 본 연구에서 수렴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영역이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개인요인과 수용요인으로 사료된다.

[표 4-2] 분류심사/검사에 사용될 수 있는 비범죄유발요인과 반응요인

섹션	설명	비고
1) 개인요인	1. 정신과적 진단: 입소시 혹은 평가 시점시 주요정신질환, 성격장애 진단 등, 자살시도 평가 2. 금전문제: 입소시 재정적 상황/평가 시점시 재정적 상황 3. 거주문제: 입소시 거주상황/평가 시점시 거주계획 4. 건강문제: 신체질병 5. 학습문제: 학습장애, 학습능력, 낮은 지능 6. 문화적 이슈: 다문화가정, 인종이슈 7. 폭력피해(트라우마): 왕따, 가정폭력, 학교폭력피해 등 8. 자녀양육문제	반응요인 (동적 요인)
2) 수용요인	1. 과거수용이력 2. 징벌이력 3. 도주전력 4. 교육프로그램 수료 5. 직업훈련프로그램 수료 6. 기타 재사회화프로그램 수료 7. 출소/가석방에의 장벽	정적/동적 요인

2. 경비처우지표와 교정재범예측지표에의 적용

가. 경비처우지표: 핵심범죄유발요인 평가

이와 같은 영역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두 개의 지표에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먼저, 수용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비처우등급지표의 경우 핵심범죄유발요인의 평가결과를 위주로 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행 경비처우등급지표의 항목 중, 주로 재범을 잘 예측했던 것이 범죄의 과거력과 범행의 심각성 같은 정적 위험 요인이었음을 고려할 때, 경비등급을 범죄자의 흉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표식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반사회적 행동경력은 반드시 필요한 지표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경비처우등급지표가 경비수준(보안등급)뿐 아니라, 처우의 수준까지를 결정하는데 이용하고자 하며, 수용자별로 경비처우수준(보안등급)의 변화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할 때, 핵심범죄유발요인이 평가하는 동적 위험요인, 즉 반사회적인지, 반사회적 성격, 반사회적 동료, 알코올/마약문제까지 범위를 넓혀 평가하는 것이 지표의 취지와 맞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지표에서 경비등급(보안등급)과 처우등급을 분리해내고자 할 경우, 보안등급은 핵심범죄유발요인의 제 1영역인 반사회적 행동경력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3개의 영역을 처우등급에 활용해도 좋다. 단. 이 경우 보안등급은 수용자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 결국 핵심범죄유발요인이 평가하는 4개 영역에 변화가 있는 경우, 경비처우등급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제한다.

나. 교정재범예측지표: 핵심/잠재적 범죄유발요인 평가

교정재범예측지표의 경우, 핵심범죄유발요인과 잠재적 범죄유발요인을 모두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여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제안해 본다. 가석방심사에 처우성과 등이 반영되어야하는 점을 고려할 때 동적요인들이 증가될 필요가 있다. 핵심범죄유발요인은 경비처우등급지표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잠재적 범죄유발요인은 대체로 재범의 예측력이 핵심범죄유발요인보다는 떨어지지만 범죄유발과 관련이

있는 영역이다.

이중, 첫 번째 영역은 주로 사회인구학적 특징(가족, 결혼관계, 고용 및 학력) 및 생활양식과 관련이 있고, 두 번째 영역은 심리적 태도와 관련이 있다. 종래의 지표에서는 주로 입소전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평가시점에 따라 상태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개선된 지표에서는 질문을 새롭게 구성하여 평가 시점에 따라 변화된 상태를 새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령, 결혼관계에서의 만족도는 수용 중 평가시점에 따라 변화가 가능한 항목이며, 교육 역시 수용기관 내에서 자격증이나 졸업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도록 한다. 심리적 태도는 대체로 어떠한 범죄유형이든 범죄자의 행동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4대 영역으로 구성하여 평가시점에 따른 상태가 반영되도록 문항을 구성하거나, 기존의 심리척도를 이용하는 방식을 구상해 볼 수 있겠다.

[표 4-3] 분류지표 개선(안)

섹션	설명	분류지표에의 활용
1) 핵심 범죄유발 요인 -기록/면담기반	1. 반사회적 행동경력(범죄 횟수, 초범 연령, 범행 심각성 등) 2. 반사회적 인지(범죄에 대한 태도, 준법의식, 자신의 형량에 대한 태도, 교도관이나 치료에 대한 협조수준(compliance) 등) 3. 반사회적 성격: 적대감, 분노, 공격성 과다, 충동성, 감정적 무딤, 피상적 매력, 사이코패시 성향 등 4. 반사회적 동료: 사회적 고립, 범죄경력의 친구/지인 등	• 경비처우등급지표에 활용 •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제 1영역에 활용
2) 잠재적 범죄유발 요인: 사회인구학적 특징 및 생활양식 -기록/면담기반	1. 가족/결혼관계: 관계에 대한 만족 수준, 범죄이력이 있는 가족 2. 고용 및 학력: 직업 유뮤, 직업 안정성, 고등교육이수, 학창시절 처벌경험, 직업과 학교생활에서의 만족도 등 3. 여가시간: 입소전/평가시 여가활동에 대한 평가 4. 알코올/마약문제/정신질환문제: 잦은 약물복용 및 치료경력 등	•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제 2영역에 활용
3) 잠재적 범죄유발 요인: 심리적 태도 -심리검사기반	1. 인지적 왜곡: 범죄를 지지하는 태도 2. 정서적 문제: 분노관리능력 부족, 적대감, 정서적 무딤/냉담함, 외로움, 친밀감 부족 등 3. 대인관계적 문제: 낮은 자존감, 협박적/통제적 성향, 사회적 스킬 부족, 의사소통능력 부족 등 4. 문제해결/자기관리 기술 부족: 부적절한 성활동, 스트레스시 대처방식 등	•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제 3영역에 활용

다. 통합지표로의 연계

분류지표는 어떠한 목적에서 사용되든 완성된 1개의 통합지표에서 출발하되, 그 목적에 따라 평가영역을 축소 혹은 확대해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가령, 경비처우지표는 핵심범죄유발요인만 평가하고 교정재범예측지표는 핵심범죄유발요인과 잠재범죄유발요인 모두를 평가한다. 이렇게 할 경우, 현행 지표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문제점, 즉 두 지표의 중복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요인들이 동적인 속성을 갖는 걸로 질문을 구성한다면 사실상 신입심사지표와 재심사지표를 따로 구성할 필요가 없으며, 1개의 통합지표로 심사목적을 명시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통합지표에서는 심사 구분표를 작성하여 해당 심사가 신입심사, 재심사, 가석방심사, 출소평가 등,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고 관리하도록 하면 된다.

또한 통합 분류지표에서는 평가의 흐름에 따라 개인요인과 수용요인을 평가하여 목적에 활용하도록 한다. 개인요인과 수용요인으로 대표되는 비범죄유발요인과 반응요인들은 범죄(재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분류심사시 평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은 경비처우등급지표나 교정재범예측지표에는 산입되지 않지만,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항목이고, 지표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이다. 사례관리상, 모든 수용자는 전산상의 데이터만으로도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야한다. 또한 개인요인과 수용요인은 특정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를 위해 어떠한 처우적 고려를 해야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도 있겠다. 교정기관에서는 정신질환, 신체건강, 다문화, 자녀양육, 학습 문제 등, 수용자의 개인특성에 따라 이를 반영한 처우프로그램으로의 연결이 가능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수용요인의 경우 교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등급조정을 가능케 하는 영역으로써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분류심사나 검사의 결과에서 도출된 등급이라할 지라도 교정시설 내의 각종 이슈에 따라 도주전력이나, 징벌전력, 각종 재사회화프로그램 이수 경력 등을 등급조정의 인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경비처우등급지표가 핵심범죄유발요인의 결과에 따라 범죄자의 경비처우수준을 분리해내고, 교정재범예측지표가 잠재적 범죄유발요인까지 모두 평가하

여 변화량을 반영한 범죄자의 재범위험성 진단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가장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다. 질문의 구성, 평정의 방식과 점수체계, 등급산출을 위한 메트릭스, 등급조정의 방식 등은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분류지표의 사용과 관련한 모든 기술적 지원이나 상세사항 등을 적시한 사용 매뉴얼 역시 후속연구를 통해 점차적으로 완성해야할 것이다. 모든 지표는 개발과 타당화 작업을 기본으로 하고, 현장에서의 적용과 문제점 등을 반영한 상세항목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지표 개발기간에 여유를 두고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가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강호성. (2010).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성인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K-PRAI) 개발을 중심으로, 보호관찰, 10(1), 7-53.

김권현, 유동주, 김형준, 김청택. (2015). 설문지의 길이가 응답의 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 16(1), 1-48.

김동현. (2017). 재범예측을 활용한 고위험 범죄자 처우의 과학화 방안. 2017년 한국교정학회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 학술대회.

김선태. (2016). 수형자 분류심사를 통한 합리적 처우방안에 관한 고찰. 교정연구, 26(4), 203-232.

김지선, 정슬기. (2015). 보호관찰대상자의 정신건강 및 음주 관련 요인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3(3), 35-57.

박혜림. (2020). 교화 및 재사회화를 위한 수형자의 재범위험성 평가에 대한 재고찰-미국 연방수형자의 교화 및 재사회화 법률을 중심으로. 법학논집, 24(3), 201-222.

법무부. (2011). 법무부 내부자료.

법무부. (2021). 2021 교정통계연보.

법무부. (2021). 법무부 내부자료.

서동우. (2003).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생산적 삶을 위한 치료보호대책, 보건복지포럼, 2003(8), 77-87.

서종한, 조병철, 김희송, 김경일. (2018). 전문가판단모델 (SPJ) 기반 폭력위험성평가 (HCR-20) 버전 3 타당화 연구: 재범예측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형사정책연구, 29(1), 309-366.

유병철. (2017). 교정시설의 특성과 경비등급제도 개선방안. 교정연구, 27(1), 27-53.

윤정숙, Raymand A. K. (2013).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 방안 (II)-교정시설 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이민식, 김혜선. (2009). LSI-R 을 이용한 성별 · 범죄유형별 재범유발요인. 형사정책연구, 157-187.

이윤호, 이수정, 공정식. (2000). 분류처우론. 동현출판사.

조윤오. (2020). 신체· 정신질환과 재범 발생과의 관계: 전자감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회과학연구, 27(1), 49-68.

최혁재. (2000). 반사회적 인격장애(3). 약학정보원 팜리뷰.

황성동. (1993). 정신질환과 범죄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정신질환자들과 일반인들과의 범죄율 비교분석, 한국사회복지학, 21, 221-242.

2. 국외문헌

Andrews, D. A., & Bonta, J. (1995). The Level of Service Inventory—Revised: User's manual. NY: Multi-Health Systems.

Andrews, D. A., & Bonta, J. (1998). The psychology of criminal.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38(3), 362-363.

Andrews, D. A., Bonta, J. L., & Wormith, J. S. (2004). User's manual for the Level of Service/Case Management Inventory (LS/CMI): An offender management system. Toronto, Ontario, Canada: Multi-Health Systems.

Beech, A. R., & Fisher, D. D. (2002). The rehabilitation of child sex offenders. Australian Psychologist, 37(3), 206-214.

Benda, B. B., Corwyn, R. F., & Toombs, N. J. (2001). Recidivism among adolescent serious offenders: Prediction of entry into the correctional system for adult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8(5), 588-613.

Bonta, J (1999). Approaches to offender risk assessment: static vs dynamic. Research summary, 4(2), 1-2.

Britt, C. L. (2019). Age and crime. The Oxford handbook of developmental and life-course criminology, 13-33.

Blanchard, A. J. E., & Douglas, K. S. (2011). The Historical-Clinical-Risk Management-Version 3: The inclusion of idiographic relevance ratings

in violence risk assessment. In Post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y Law Society, Miami, FL.

Collins, R. E. (2010). The effect of gender on violent and nonviolent recidivism: A meta-analysi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8(4), 675-684.

Cox, D. R. (1972). Regression models and life-table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B (Methodological), 34(2), 187-202.

Cox, D. R. (1975). Partial likelihood. Biometrika, 62(2), 269-276.

de Vries Robbé, M., & de Vogel, V. (2010). Pilot study of HCR-20 (Version 3). Unpublished data analyses. Van der Hoeven Kliniek, Utrecht, The Netherlands.

Douglas, K. S., Hart, S. D., Webster, C. D., & Belfrage, H. (2013). HCR-20V3: Assessing risk for violence: User guide. Mental Health, Law, and Policy Institute, Simon Fraser University.

Doyle, M., Shaw, J., & Coid, J. (2013). Validation of risk assessments in medium secure services (VORAMSS): Preliminary HCR-20 (Version 3) analyses. Unpublished data analyses. University of Manchester, UK, and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UK.

Durose, M. R., Cooper, A. D., & Snyder, H. N. (2014). Recidivism of prisoners released in 30 states in 2005: Patterns from 2005 to 2010 (Vol. 28).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Garland, R. J., & Dougher, M. J. (1991). Motivational intervention in the treatment of sex offenders. Motivational interviewing: Preparing people to change addictive behavior, 303-313.

Gendreau, P., Little, T., & Goggin, C. (1996). A meta-analysis of the predictors of adult offender recidivism: What works!. Criminology, 34(4), 575-608.

Girard, L. (1999). The Level of Service Inventory-Ontario Revision: Risk/need assessment and recidivism. University of Ottawa (Canada).

Girard, L., & Wormith, J. S. (2004).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Level of Service Inventory-Ontario Revision on general and violent recidivism among

various offender group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1(2), 150-181.

Hanson, R. K. & Thornton, D. 1999. Static-99: Improving actuarial risk assessments for sex offenders. User Report 99-02. Ottawa: Department of the Solicitor General of Canada.

Hanson, R. K., & Morton-Bourgon, K. E. (2009). The accuracy of recidivism risk assessments for sexual offenders: a meta-analysis of 118 prediction studies. Psychological assessment, 21(1), 1.

Harris, A. J. R., & Hanson, R. K. (2010). Clinical, actuarial and dynamic risk assessment of sexual offenders: Why do things keep changing?. Journal of Sexual Aggression, 16(3), 296-310.

Hollin, C. R. (2002). Risk-needs assessment and allocation to offender programmes. Offender rehabilitation and treatment: Effective programmes and policies to reduce re-offending, 309-332.

Kleinbaum, D. G., & Klein, M. (2012). Introduction to survival analysis. In Survival Analysis (pp. 1-54). Springer: New York.

Martin, S., Zabala, C., Del-Monte, J., Graziani, P., Aizpurua, E., Barry, T. J., & Ricarte, J. (2019). Examin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impulsivity, aggression, and recidivism for prisoners with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49, 101314.

Nagel, I. H., & Hagan, J. (1983). Gender and crime: Offense patterns and criminal court sanctions. Crime and justice, 4, 91-144.

Ogloff, J. R., & Daffern, M. (2006). The dynamic appraisal of situational aggression: an instrument to assess risk for imminent aggression in psychiatric inpatients.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24(6), 799-813.

Rettenberger, M., Matthes, A., Schilling, F., & Eher, R. (2011). Die Validität dynamisch-veränderbarer Risikofaktoren bei der Vorhersage einschlägiger Rückfälle pädosexueller Straftäter. Forensische Psychiatrie, Psychologie, Kriminologie, 5(1), 45-53.

Rowe, R. C. (1999). The prediction of recidivism in a parole sample: An examination of two versions of the Level of Service Inventory.

Unpublished report. Ottowa, Canada: Carleton University.

Shepherd, S. M., Campbell, R. E., & Ogloff, J. R. (2018). Psychopathy,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and reconviction in an Australian sample of forensic pati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62(3), 609-628.

Swets, J. A. (1988). Measuring the accuracy of diagnostic systems. Science, 240(4857), 1285-1293.

Tierney, D. W., & McCabe, M. P. (2002). Motivation for behavior change among sex offenders: A review of the literatur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2(1), 113-129.

3. 웹페이지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0/97489216/1 2021.10.

http://www.cathrights.or.kr/bbs/view.html?idxno=22840 2021.10.

https://www.bop.gov/inmates/fsa/docs/male_pattern_form.pdf 2021.10.

Abstract

Improving Security Treatment Level Classification Index and Correctional Recidivism Prediction Index

Yoon, Jeongsook·Seong, Yoori·Lee, Taehun

Classification review is carried out to decide and establish the confinement facility and the plan of individual treatment of sentenced inmates, and thus to help their successful return to society through proper living under confinement. In Korea, there are two types of classification index, one is Security Treatment Level Classification Index and the other is Correctional Recidivism Prediction Index (CO-REPI). The Security Treatment Level Classification Index was developed in order to determine the level of treatment for inmates, including confinement facility and safe guard level, education, and living condition, based on the inmates' risk of escape or absconding from the facility, etc. This index is used to attain the goals such as to separate high risk inmates from others, and provide a differential treatment to those who are predicted to be rehabilitated relatively easily or to have greater possibility of improvement (Kim Dong-hyun, 2017). On the other hand, the CO-REPI was developed to distinguish different risk levels of inmates based on the tested elements of prediction about their readmission to the confinement facility and to use the results in the classification review for new inmates, reclassification/reassessment, and application for release on parole and has been enforced since March 1, 2012 (Ministry of Justice, internal source, 2011)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check the validity of the current classification

indexes, Security Treatment Level Classification Index and CO-REPI, and to diagnose the issues, if any, to improve them. For such objectives, we first examined the indexes' background of development and purpose of use, method of development and component items, as well as the classification index used in England and the USA at the correctional stage. To verify the statistic validity of the indexes, we reviewed the predictability of total score or individual score in each section and the contribution of each item to prediction of recidivism, and thus identified inadequate items. Further, we made a recommendation to improve the classification indexes related to determination of confinement security level or parole review, through consultation and discussion with experts and the TFs of relevant authorities, and by collecting opinions of the frontline officers at the correctional facility classification division.

The theoretical model adopted in the study is the Risk, Need, Responsivity model ("RNR model"), which explains the risk and risk factors that prisoners present, focusing on the treatment of criminals (Andrews, Bonta, 1998). Here, risk refers to the level of recidivism of admitted inmates, and the risk factors refer to the factors related to recidivism more concretely. Risk assessment is a process that determines the level of recidivism risk by using the risk factors, and if a proper tool that is acknowledged internationally is used, the level of recidivism can be assessed and be assigned to specific levels. Such assignment allows the classification officers to decide the level of management and control over and the intensity of treatment programs (such as the period of the program) for subject inmates. Risk can be assessed as either static or dynamic factors. Generally, static factors which represent the consequences of an action shows higher prediction about recidivism than dynamic factors which are related to emotion or perception. Needs are distinguished between the needs that are and that are not likely to trigger a crime. Although the needs that are likely to trigger a crime is the totality of risk level of a criminal, and of dynamic attribute, the

change of needs is not always related to recidivism. Risk can be interpreted as the total sum of risk factors because a crime is an consequential act from the aggregation of all risk-triggers of crime and the possibility of commit a crime is the risk. Responsivity is an influential element which either the person in charge of a treatment program or the inmates who are subject to the treatment program have.

The current classification indexes have been criticized as the items are mostly quantitative and composed of static factors, and therefore they pose a difficulty to assess the change of risk of inmates (Bonta, 1999), as well as to reflect the psychological assessors' opinion who interview, observe, and evaluate the inmates. Moreover, the re-evaluation of the two indexes are mostly composed of scores, without including the dynamic factors which measure the changes, if any, caused by their living in correctional facility. Other issues include that the re-evaluation index of the two indexes is consisted of almost the same content, that there are still some remnants of the progressive treatment system in the re-evaluation index, and that the system is operated heavily based on the result of administrative report, rather than the risk of inmates themselves. Some even question if classification review requires two indexes, Security Treatment Level and CO-REPI, at all. The most serious issue in using those indexes is that never has been a validity test conducted up until now, its tenth anniversary of being applied in the field.

From this context, the current study has obtained cooperation of the Correctional Service and, for verifying the validity of the current classification indexes, applied the CO-REPI to the cases of the inmates, among those who were admitted to confinement facility and then released between 2012 and 2021, who were not re-admitted to the facility or did not commit a crime again on or before July 31, 2021, and thus extracted the initial admission and re-admission information material of those released inmates. The number of sample inmates

that met the first data extraction criteria were 96,077. Of those, the second random sampling was conducted based on the type of release (expiration of prison term, or parole), sex, age, history of admission, type of crime, and term of imprisonment, according to the Korea Correctional Service Statistics 2020. The number of sample inmates were 9,929, of which repeat offenders were 1,592 (16.0%).

The study reviewed whether the two indexes properly determine the risk (recidivism) level of prisoners, and has found out that they both predict recidivism, properly. To verify the validity of each question item, we further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by putting all items simultaneously, as well as analyzed each item by putting each item, individually. Under the premises that cross-validation is satisfied, the researchers reviewed the results of two analyses, and interpreted that ① after control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the items that predict recidivism meaningfully are highly valuable, ② the items which predict recidivism in a static direction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is not controlled but lose prediction when the relationship is controlled are somewhat valuable but the assessment method should be improved, and ③ the items that have troubles in predicted direction and prediction itself even when they are put in individually should be reconsidered of its usage as they seem to have no relevance to recidivism prediction.

As for the Security Treatment Level classification index, S3 or S4 level appeared to have higher prediction than S1. Especially, S4 showed twenty-two times higher in recidivism risk(odds) than S1, and therefore its treatment level was confirmed to be valid. Of the sixteen items that compose the Security Treatment Level classification index, the items that predicted recidivism meaningfully even after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were controlled include motivation of crime, seriousness of crime, recidivism period score, initial age score when charged by the police, the total period score of being confined in the facility, and

punishment score in the past confinement. In the meantime, the variables that constitute risk assessment for dynamic factors and improvement assessment, as well as escape or violation failed to predict recidivism meaningfully. The items which predicted recidivism in a static direction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are not controlled but loses prediction after the relationship were controlled include pretrial attitude score, number of criminal committment, score of committment of less than serious or serious crimes, REPI dynamic assessment score, and probation effectiveness score. The items that showed some issues in prediction direction and prediction itself when putting individually to the assessment include usage of weapon score, total imprisonment period score, possibility of improvement score, and attempt score to escape or suicide. However, as for re-evaluation index, only the REPI question items, of those used in the current indexes, were found to predict recidivism, and all the other items, such as correction treatment performance score, score of imprisonment period as sentence execution, correction performance score, score of possibility to cause troubles, score related to punishment, and consideration score for individual treatment, failed to predict recidivism in a meaningful way. Therefore, the team has concluded that it is necessary to re-review the Security Treatment re-evaluation index, each item's construct idea and assessment method and to improve and reinforce the reliability and validation of those items.

Based on the final ratings, in the CO-REPI it has been found that R2 is three times, R3 is eight times, R4 is twenty times, R5 is forty times higher in risk of recidivism than R1. As for the total score of CO-REPI, the initial evaluation score has higher prediction than re-evaluation score. In initial evaluation, when the standard deviation was raised by one point (that is, the total score is raised by 6.368 points), the recidivism risk was increased by 2.44 times. Of the twenty-three variables that constitute the CO-REPI, those which predicted recidivism meaningfully even after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were controlled include

sex, name of crime, relationship to the victim, punishment of the current and previous, if any, crime, frequency of the same or similar crime committed, age at the time when the initial sentence was confirmed, age when the subject was released concerning previous crime, experience of punishment during the school years, recidivism environment after being released, tendency to wrongdoing, and tendency to renouncement score. The variables which predicted recidivism in a static direction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were not controlled, but lost prediction or revealed prediction direction after the relationship were controlled include the total imprisonment period of previous crime, number of probation cancelled in effect, history of receiving mental hospital treatment, attitude toward authority, and possibility score of recidivism by specific factors. Lastly, the variables which showed some issues in prediction direction and prediction itself when put individually include the mental state at the time of committing crime, recidivism period, number of times living with partners, occupation at the time of committing crime, economic and habitation states, respectively, before being admitted to the confinement facility, and education score. As for the re-evaluation index, just as the Security Treatment Level index, only the security treatment scores predicted recidivism meaningfully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were controlled. Correction performance, punishment related items, and failure to pay fine or assignment of additional fine were meaningful only when put individually, and the correctional treatment performance score did not predict recidivism even when put in individually.

Furthermore, this study conducted the survival analysis to see if the Security Treatment Level classification index and CO-REPI would predict the recidivism period. Survival analysis considers the time that a target inmate takes until he or she recommits a crime, and shows whether each rating, item, and variable would affect that time. The rating and total score of the two indexes predict the time until recidivism reasonably. In both indexes, compared to S1 and R1,

all the other ratings appeared to have higher aggregated risk toward recidivism (meaning, the crime committing interval becomes shorter) as time passed.

With all these results putting together, this study could conclude that in both indexes, static factors predict recidivism better than dynamic factors, and especially factors related to previous commitment of crime have highest prediction in all. As for the CO-REPI, socio-demographic factors predict recidivism most poorly, and thus the application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to recidivism prediction, except sexes, should be reconsidered.

Because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results of testing the statistic validity of the indexes, this study also reviewed the issues that the frontline workers have in the course of their enforcement of the classification index and the areas that appeared to require improvement based on the validity test results, by means of consultation with the field workers at the Correctional Service and external experts. First, concerning the issues that the frontline workers have in their using and operating the Security Treatment Level classification index, they have pointed out that history of previous crime is given a lot of weight, that the content validation of dynamic factors is low, that standardized re-evaluation index is being used and used inadequately for the objectives, and that the security level and treatment are used in a mixed condition. As for the items that require improvement, from the result of testing the validity some concern has been raised out that the serious and less than serious crime committment item might produce an unstable statistic result because the sampling of this research does not include the high-scorers whose total imprisonment period is at least ten years, and the item's statistic result might be only produced because of prisoners who have higher risk of recidivism despite shorter period of imprisonment sentence depending on criminality and type of crime. Nevertheless, this study argues that although the relevant item does not predict recidivism well, they need be maintained as they are useful items for the treatment of inmates. Further, this

study maintains that the items concerning possibility of improvement and troublesome action require subjective evaluation, but because the enforcers are afraid of the risk of subjectivity, an objective evaluation standard has been prepared regularly after the enforcement of classification indexes. Since the dynamic factors of the Security Treatment Level classification index are evaluated not by the same standard but by a method mixed in time line, the possibility should be considered that recidivism was not predicted in a meaningful direction due to contamination of measuring tools. Also, this study has suggested that since it is possible that evaluating the dynamic factors at the stage of new inmates evaluation has resulted in unstable statics verification, it would be more reasonable that the dynamic factors be moved to re-evaluation index and at the stage of new inmates' evaluation only static factors be evaluated. However, in order to measure the degree of change, a standard point is required and thus dynamic factors should be included, too, at the stage of new inmates' evaluation. This study has also suggested a dual-system in which we reduce the dynamic factors and organize them as item to assess the current risk and security level/degree of confinement, while the possibility of rehabilitation or personal change should be left to CO-REPI for measurement. The study comments that in considering the security level, escape or violation classification area does not have important variables or sample cases and thus would not have produced a meaningful result, and suggests to move the relevant items to the assessment standards of other items. It also points out that in case of 'score of probation in effect', if a case occurs even after the security treatment level is determined, the treatment level is adjusted to be a lower level, and therefore elimination of the item should be also considered.

The opinions about the CO-REPI were widely collected through the interviews with the frontline officers of Correctional Service and external experts, and their view on the issues concerning the use and operation of the index, as well as

the survey conducted over the staff in charge of the improvement of the CO-REPI at the Classification Center of the Korea Correctional Service, Seoul District. In thi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use and operation of the CO-REPI has some other issues, such as unreasonable prediction for the future, human right violation and other discriminative elements, in addition to the same issues as the Security Treatment Level classification index (unfit use to the objectives, and too much weight on the criminal history). To summarize the opinions of the frontline staff about the prediction of recidivism, the verification results which did not predict recidivism even when each item related to socio-demographic factors, such as the number of times living with partners, occupation at the time of committing crime, economic and habitation states, respectively, before being admitted to the confinement facility, and education, was put separately, might not reflect the reality adequately because the item are graded based on the inmates' voluntary reporting response, and are not able to reflect the change of time especially in living with partner- score or education score. Also, according to their view, the recidivism prediction is not meaningful because of the low content validation questions. As for the phenomenon that predict recidivism negatively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items of recidivism possibility by specific factor are inserted into all questions, the interviewees and experts believe that because those are the questions to evaluate the tendency of specific crime of high recidivism rate based on criminal history and criminal records of inmates, their verification ability would be unstable for specific factors to recommit a crime.

In addition, the frontline workers and experts have pointed out, persistently, that the two current classification indexes do not fully investigate the dynamic factors. Since the dynamic factors of the current classification indexes are found to be insufficient to predict recidivism, this study urges that the concept of the dynamic factors to be measured through the classification indexes be established

more reasonably, and the evaluation method be refined further. Another problem is the low face validity, meaning that as for the items which show unstable explanations, such as possibility of troublesome action or of improvement in the Security Treatment index, recidivism risk by specific factors in the correction psychology test, and attitude toward authority, the titles of the items themselves are generally abstract, their application scope is too wide, and their measurement targets are not easily apparent. It is worth reconsidering if the use and employment of such items up to the present is theoretically reasonable.

To suggest a method to improve, this study attempts, first, to apply the RNR principle to the Korean classification indexes. Static risk factors, such as inmates' criminal history and the age at the time of his or her first commitment of crime, and criminal punishment record during one's school years cannot be changed. Nevertheless, dynamic risk factors which are one's own internal and psychological factors can be changed in content, and therefore they sometimes become the target area of the correctional treatment programs. It is likely that the majority of the items which are classified, in the current classification index, as dynamic factors (such as recidivism environment after being released, risk of recidivism by specific factors, risk of wrongdoing at the security treatment level, possibility of improvement, correctional treatment performance of the re-evaluation index, correction result, and possibility to commit trouble action) cannot be regarded as a dynamic factor strictly, in terms of their construct idea itself, and they rather assess the risk factors which cannot be changed, or non-crime trigger factors or achievement, than assess crime-trigger factors which can be changed.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to reorganize the current dynamic factors in order to use the dynamic factors for their proper objectives.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RNR principle and verifying the statistic validity of the indexes, the research team of this study, having gathered and put all the opinions and views of the frontline workers and external experts together, would

like to make the following suggestion for improvement of the indexes. First, the classification indexes should be started from a one completely integrated index, regardless of the specific purpose, and then its assessment area be either reduced or expanded depending on the purpose. In the case that the two indexes are integrated. the problem of overlapping areas, which has been criticized continuously, can be solved. Also, if the questions are composed mostly of factors of dynamic nature, it will be more efficient as there is no need to organize new inmates evaluation index and re-evaluation index, separately. At each assessment, we also suggest that, an evaluation table should be prepared and the assessing officers specify in the table the type of evaluation, such as new inmates evaluation or re-evaluation, evaluation in parole decision, and assessment of release, etc. and manage the index values, consecutively.

Crime trigger factors used in the classification indexes are summarized as Big 8 factors, and can be categorized into the key crime trigger factor (anti-social awareness, anti-social peers, anti-social action history, and anti-social personality type) and the potential crime trigger factor (family/marriage, school/workplace, hobby, and drug abuse)(Andrews, Bonta, Wormith, 2004). The integrated classification index that this study suggests can be consisted of, primarily, the key crime trigger factor, the potential crime trigger facto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living pattern) and the potential crime trigger factor: Psychological attitude. First, the key crime trigger factors evaluate anti-social action history, a static factor, that measures the number of crime commitment, age at the time of first committing a crime, and the seriousness of the crime, all of which are relevant to criminal history, as well as anti-social awareness (attitude toward crime, law-abiding attitude, and attitude toward penalty, etc.), anti-social personality (hostility, impulsiveness, aggressiveness, emotional apathy, and psychopathic tendency, etc.), and anti-social peers (social isolation, friends/acquaintances with criminal history), which are dynamic factors,

at the same time. This study further suggests that under the premises that the security treatment standard (security level) can be changed depending on inmates, the confinement level of inmates be determined based on the key crime trigger factors that are measured. If a relevant authority tries to separate the security level and treatment level, the security level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anti-social action history of the key trigger factor, while anti-social awareness, personality, and peers could be adopted to decide the treatment level.

As for the CO-REPI, this study suggests to form three areas by organizing both the key and the potential crime trigger factors as evaluation items. Considering that the treatment performance should be reflected in the evaluation of parole decision, it is necessary that we increase the dynamic factors. The first area should use the same key trigger factors that are used in distinguishing the security treatment level, and the second area should measur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living pattern, such as family/marriage, employment and education, leisure time, alcohol/drug abuse/mental disorder. The third area is related to the psychological state of inmates. Here, the psychological state could be composed of four sectors which best predict the action of an offender, regardless of the type of crime he or she has committed, (cognitive distortion, emotional probl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issues, lack of problem-solving/ self-management technique), and then the question items would be either organized to reflect the inmate's state at the time of evaluation or constructed by using the existing psychological scale. The second and the third potential crime trigger factors are consisted of static elements in recidivism prediction and relevant to crime induction, although the degree of induction is lower than that the key trigger factors. With the existing index, it was impossible to measure the change of state at each time of evaluation because the questions were mostly concerning inmate'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before being admitted to confinement facility. On the other hand, if the questions are organized newly

with the upgraded index, the changes depending on the time of evaluation can be measured and reflected to assessment.

In conclusion, the key argument this study would like to make is to separate the security treatment levels of inmates based on the key crime trigger factors (Security Treatment Level classification index), to include the potential crime trigger factors in evaluation as well, and thus to apply any changes discovered in the process to the risk of recidivism assessment of target inmates (Co-REPI). A further study would be required to organize and improve the questions, standard method to rating and score system, matrix for calculating the ratings, and method to adjust the ratings. A user manual that provides technical support and details in relation to the use and adoption of the classification indexes should be completed, gradually, as well through follow-up researches.

부록

1.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신입심사)

분류 영역	항 목	범 주			
본 범 관 련 사 항 (43)	흉 기 사 용	미사용 ①	미소지 사용 ③	소지 사용 ⑤	
	범 죄 동 기	과 실 ①	우발·격정 ②	고 의 ③	
	범죄 심각성	경범죄 ②	보통범죄 ⑤	중범죄 ⑧	초중범죄 ⑩
	전 체 형 기	1년미만 ①	1~3년미만 ②	3~5년미만 ④	
		5~10년미만⑥	10년~20년미만 ⑧	20년이상(무기포함)⑩	
	미결시 태도 (형확정 후 분류심사 전까지, 직입소자 포함)	양 호 ① (신청작업 등)	보 통 ③	불 량 ⑤ (경고, 금치외 처분)	매우 불량 ⑩ (금치 1회이상)
	재 범 기 간	이전범죄 없음①	5년이상 ②	1~5년미만 ③	
		6월~1년미만 ④	-	6월미만 ⑤	
과 거 범 죄 관 련 사 항 (35)	범법행위건수	이전범죄 없음 ①	1 ~ 2회 ②	3 ~ 4회 ③	
		5 ~ 6회 ⑤	7 ~ 9회 ⑧	10회이상 ⑩	
	최 초 경 찰 입 건 연 령 (범죄·수사경력자료 근거)	[남자] 25세이상 ①	19세이상~ 25세미만 ②	15세이상~ 19세미만 ③	15세미만 ⑤
		[여자] 36세이상 ①	26세이상~ 36세미만 ②	19세이상~ 26세미만 ③	19세미만 ⑤
	교 정 시 설 총 수용기간	수용경력 없음①	1년미만 ③	1~4년미만 ⑤	
		4~7년미만 ⑦	-	7년이상 ⑩	
	과거수용 중 징벌관련 (교정행정전산조회 가능 범위)	징벌없음 ①	경 고 ②	경고·금치외처분③	
		금치 1회 ④	-	금치 2회 이상 ⑤	
	초중범죄·중범죄 유무 (범죄심각성 분류기준에 의함)	없 음 ①	1회 ③	2회 이상 ⑤	
위험성 및 개선도 평 가 (12)	CO-REPI 동적평가점수	평균 3.6점 이상①	평균 2.6~3.5점 ②	평균 2.5점 이하④	
	문제행동가능성 (교정심리검사 등 참고)	낮 음 ①	보 통 ②	높 음 ④	
	개 선 가 능 성	높 음 ①	보 통 ②	낮 음 ④	
도 주 또 는 위 반 (10)	도주 또는 자살시도 (본건 또는 전과 포함)	없 음 ①	관찰 요망 ③	있 음 ⑤	
	보호관찰위반,집행유예 실효,가석방취소·실효 등 (본건 또는 전과 포함)	없 음 ①	1회 ③	2회 이상 ⑤	

*출처: 법무부예규 제1252호 분류처우 업무지침, 별지 제2호

2.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재심사)

평가항목	평가점수					고려사항 예시	정기재심사			
	1점	2점	3점	4점	5점		1/3	1/2	2/3	5/6
재 범 가 능 성	REPI -1	REPI -2	REPI -3	REPI -4	REPI -5	‣ 교정재범예측지표 평가 등급 적용				
교정처우 성 과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	‣ 정기재심사 기간 중 취득한 자격, 수상경력, 시험합격 등				
형 집 행 기 간	형기 5/6 경과	형기 2/3 경과	형기 1/2 경과	형기 1/3 경과	-	‣ 재심사 기준일 당시 형집행 기간				
교정성적	9점 이상	8점	7점	6점	5점 이하	‣ 재심사 평정기간 동안의 평정 소득점수 기준				
문제행동 가 능 성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 수용중 도주 · 자살(자해)시도 ‣ 직원, 수용자에 대한 폭행·협박				
징벌관련 사 항	징벌 없음	경고	경고· 금치외 처분	금치 1회	금치 2회 이상	‣ 정기재심사 기간 동안의 징벌처분				
개별처우 고려요소	상당한 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비고려 대상	‣ 정신·신체질환 또는 장애, 여성, 외국인, 노인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 교정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현 경비처우급		총 점				

조정 기준	적정성 고려 사항	총 점	개선가능성
‣ 개선가능성 "높음"의 경우 경비처우급 상향 조정 가능 ‣ 개선가능성 "보통"의 경우 현 경비처우급 유지하거나 분류처우위원회 의결로써 상향 결정할 수 있음 ‣ 개선가능성 "낮음"의 경우 경비처우급 하향 조정 가능 ※ 위 조정 기준을 준수하되 최종적인 판단은 분류처우위원회에서 결정	① 교정처우성과 ‣ 평가방법의 처우성과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해당점수를 부여하고, 2개항목이 상충될 경우 수형자에게 유리한 점수 부여 ② 교정성적 ‣ 최소 2개월간의 평정소득점수를 말함 ③ 문제행동 가능성 ‣ 징벌이 실효된 경우라도 위험성(문제행동 가능성) 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님을 고려 ③ 징벌관련 사항 ‣ 직원에 대한 폭행·협박은 "매우 높음"으로 평가 ‣ 실효된 징벌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④ 도주(시도)한 경우 중(重)경비처우급으로 지정(이송) ⑤ 개별처우 고려요소 ‣ 평가방법의 개별처우 고려요소를 참고하여 해당점수를 부여하고, 2개항목이 상충될 경우 수형자에게 유리한 점수 부여	13점 이하	매우 높음
		14~18점	높 음
		19~25점	보 통
		26~29점	낮 음
		30점 이상	매우 낮음
		조정된 경비처우급	
		1/3재심사	
		1/2재심사	
		2/3재심사	
		5/6재심사	

3. 교정재범예측지표(신입심사)

수용기관		수용자번호		성 명	
생년월일(나이)		현재죄명		범죄(수용)횟수	
기결입소일		형명형기		형기종료일	

번호	문 항	0	1	2	3
1	성별	여 자	남 자		
2	죄명	기타범죄	절도,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마약류,성폭력	환각물질흡입
3	피해자	아는 사람/해당없음	모르는 사람		
4	범죄 시 정신상태	정 상	음주,약물복용, 마약류투약등 비정상		
5	본건 및 과거 징벌횟수	없 음	1회	2회	3회이상
6	이전범죄 전체 형기	없음~3년미만	3년~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7	동일·유사죄명 경력횟수	0회	1회	2회이상	
8	최초 형확정 연령대 (본범포함)	30대이상	20대	10대	
9	재범기간	없음, 3년이상	6월~3년미만	6월미만	
10	이전범죄 출소연령대	없음,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이상
11	집행유예 취소/실효횟수	0회	1회	2회이상	
12	동거횟수	0~ 1회	2회	3회이상	
13	학창시절(18세이하) 처벌경험	없 음	있 음		
14	범죄시 직업	일용근로자 외의 직업	일용근로자	무 직	
15	입소전 경제상태	①~④번	⑤매우어려움		
16	입소전 거주상태	그 외 거주지	주택외 시설	노숙, 보호시설	
17	정신병원 치료경력 (필요성)	없 음	있 음		
18	학력	고등학교 이상	중졸이하		
19	출소 후 재범환경	3.8~5점	3.1~3.7점	2.4~3점	0~2.3점
20	공권력에 대한 태도	3.6~5점	3.2~3.5점	2.8~3.1점	0~2.7점
21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	3.8~5점	3.3~3.7점	2.8~3.2점	0~2.7점
22	교정심리검사 비행성향	45점이하	46~47점	48~52점	53점이상
23	교정심리검사 포기성향	41점이하	42~44점	45~51점	52점이상

신입심사	20 . . .	총 점		재수용위험등급	REPI -
부정기심사	20 . . .	총 점		재수용위험등급	REPI -
부정기심사	20 . . .	총 점		재수용위험등급	REPI -

4. 교정재범예측지표(재심사)

평가항목	평 가 점 수				고려사항 예시
	1점	2점	3점	4점	
경 비 처 우 급	S1급	S2급	S3급	S4급	‣ 심사시 경비처우급
교정처우 성 과	매우 높음	높음	보통	처우성과 없음	‣ 매우높음 : 학사고시이상 학위취득, 기사이상 자격취득, 전국대회 입상, 교정작품 전시회 입상 ‣ 높음 : 전문학사, 산업기사, 지방대회 입상, 집중인성교육 이수, 심화교육 이수(합산 200시간 이상) 등 ‣ 보통 : 기능사, 한자검정능력취득, 칭찬수형자 등 기관내 표창수상, 각종 정보화 자격, 외국어 전문과정 수료
형 집 행 기 간	형기 5/6 경과	형기 2/3 경과	-	-	‣ 무기형 또는 20년 초과자의 20년시점과 이후 매 3년 시점은 형기 5/6경과로 평가
교정성적	8점 이상 (7점 이상)	7점 (6점 이상)	6점 (5점이상)	5점이하 (4점이상)	‣ 심사시 평정 소득점수 기준 ‣ 5/6를 경과한 무기형 또는 20년 초과자의 경우에는 ( )점수 적용
징벌관련 사 항	징벌 없음	경고	경고· 금치외 처분	금치 1회 이상	‣ 심사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 징벌 유무
미납 벌금 여부(또는 추가형)	없음	벌금 5백만원 미만	벌금 1천만원 미만	벌금 1천만원 이상 (추가형 있음)	‣ 합산한 벌금액수 기준 ‣ 예정된 추가형 또는 집행유예실효 ‣ 미납된 벌금 등 고려

총 점	9점 이하	10~12점	13~15점	16점 이상
재범가능성	낮 음	보 통	높 음	매우 높음
평가시기	총 점	조정된 REPI등급	평가일	평가자(직급/성명)
2/3심사	점	REPI-	. . .	
추가심사	점	REPI-	. . .	
추가심사	점	REPI-	. . .	
추가심사	점	REPI-	. . .	

[조정기준]
‣ 재범가능성 “낮음”, “보통”의 경우 REPI등급 상향 조정 가능
‣ 재범가능성 “높음”, “매우 높음”의 경우 REPI등급 현등급 유지 가능
※ 위 조정 기준을 준수하되 최종적인 판단은 분류처우위원회에서 결정
[작성대상] : 제74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작성

연구총서 21-AB-01

수형자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및 교정재범예측지표 개선방안 연구

발　　행 | 2021년 12월
발 행 처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 행 인 | 하 태 훈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　　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j.re.kr
정　　가 | 7,000원
인　　쇄 | 세일포커스(주) 02)2272-9274
I S B N | 979-11-91565-39-3　93330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제 및 복제를 금함.